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임원명단

(2011. 7 - 2013. 6)

◆ 회 장

박태영(대구대 교수)

◆ 부 회 장

김성천(중앙대 교수)

최현숙(상지대 교수)

배윤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이 사

감정기(경남대 교수)

김경희(서울여대 교수)

김광빈(동명아동복지센터장)

김대원(대전대 교수)

김범수(GDI 다문화연구원장)

김숙경(초당대 교수)

김승용(백석대 교수)

김진이(백석대 교수)

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김한양(대구사이버대 교수)

김헌진(청주대 교수)

남현주(가천대 교수)

류만희(상지대 교수)

모선희(공주대 교수)

문영희(서울기독대 교수)

박영준(대구대 교수)

박용순(성결대 교수)

박윤영(성결대 교수)

박정란(인제대 교수)

박창우(관동대 교수)

배진희(예수대 교수)

서혜석(예수대 교수)

성명옥(선문대 교수)

손광훈(경성대 교수)

손덕순(용인송담대 교수)

손정일(대구미래대 교수)

송인옥(대구사이버대 교수)

신현석(경남정보대 교수)

양혜진(대전대 교수)

엄기욱(군산대 교수)

오정수(충남대 교수)

유용식(세명대 교수)

이경은(경북대 교수)

이근홍(협성대 교수)

이병록(건양대 교수)

이봉재(서울신학대 교수)

이서영(서울사이버대 교수)

이석형(영남신학대 교수)

이윤화(목원대 교수)

이재모(영남대 교수)

이재완(공주대 교수)

이재희(경북외국어대 교수)

이채식(우송정보대 교수)

장영인(한라대 교수)

전영록(제주관광대 교수)

정명숙(백석예술대 교수)

정무성(승실대 교수)

정성일(안동과학대 교수)

정종우(성공회대 교수)

정중화(삼육대 교수)

제미순(거제대 교수)

조미경(광주대 교수)

조영진(경상북도의회 전문위원)

조추용(꽃동네대 교수)

지은구(계명대 교수)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최선화(신라대 교수)

최유미(부산디지털대 교수)

최종혁(강남대 교수)

최태자(코리아토탈케어서비스대표)

함철호(광주대 교수)

홍연숙(제주한라대 교수)

* 가나다 순

◆ 감 사

남진열(제주대 교수)

조성숙(계명대 교수)

◆ 고 문

김영모
최일섭
송정부

이영철
표갑수
전광현

◆ 분과위원

(총무분과)

박영준(대구대 교수)
류애정(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전문위원)
배진희(예수대 교수)

이채식(우송정보대 교수)
전영록(제주관광대 교수)
최유미(부산디지털대 교수)

(편집분과)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김헌진(청주대 교수)
박창우(관동대 교수)

서혜석(예수대 교수)
이봉재(서울신학대 교수)
이서영(서울사이버대 교수)

(학술분과)

이재완(공주대 교수)
남현주(가천대 교수)
송인욱(대구사이버대 교수)
안혜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엄기욱(군산대 교수)
전선영(용인대 교수)
정종우(성공회대 교수)

(정책분과)

김승용(백석대 교수)
김상곤(안산대 교수)
김숙경(초당대 교수)

박진필(신당복지관 관장)
양혜진(대전대 교수)
이경은(경북대 교수)

(국제협력분과)

최태자(코리아토탈케어서비스대표)
김주일(서울시립대 교수)
유성호(선문대 교수)

이원식(금강대 교수)
조미경(광주대 교수)

(산학협동분과)

황용규(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영규(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배기효(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필우(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방철호(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상도(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장광수(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원영(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주선(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창기(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수진(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종선(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시채(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진우(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승창(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동한(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사무국장

김동화(경북행복재단)

(밑줄 친 부분은 분과위원장임)

일 정

-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10:00 - 10일(토) 12:00
- 장 소 : 유성호텔(대전)

[2012년 11월 9일]

10:00 - 12:00 자유주제 논문발표

(장소 : 2층 프린스홀)

사 회 : 류만희(상지대학교 교수)

▶ 발표 1 필리핀의 코피노 아동지원에 대한 실천사례연구

- 코피노 어린이 재단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희주(한림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연구원)

주경희(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초빙 교수)

우수명(대림대 사회복지과 조교수)

토론자 : 박석란(성정종합사회복지관장)

▶ 발표 2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 고찰

-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체계 분석 -

발표자 : 김현진(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최인덕(공주대 교수)

▶ 발표 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창기(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발표 4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에 비추어본 지역사회조직의 네트워킹

발표자 : 김용성(삼육대 영미어문학부 교수)

정종화(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박영(충북도립대 교수)

13:00 - 13:50 등록 및 개회식

(장소 : 8층 스타볼룸)

사 회 : 박영준(총무분과위원장 / 대구대 교수)

개회사 : 박태영(학회장, 대구대 교수)

축 사 : 강도태(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김인식(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13:50 - 14:20 기조강연 : 지역사회복지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 회 : 박영준(총무분과위원장 / 대구대 교수)

발표자 : 강도태(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14:20 - 18:00 제1부.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1 (14:20-15:40)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안

좌 장 : 김대원(대전대 교수)

발표자 : 함철호(광주대 교수), 박태영(대구대 교수), 류만희(상지대 교수)

토 론 : 박정휴(경기 부천시 무한돌봄팀장), 박종철(경북행복재단 팀장)

○ 휴 식 (15:40-16:00)

▶ 주제 2 (16:00-18:00)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개발 및 사례

좌 장 : 전영록(제주관광대 교수)

■ 발표 1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김종건(동서대 교수)

■ 발표 2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개발

이재완(공주대 교수), 김승용(백석대 교수)

■ 발표 3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1(도시형)

김미자(서울 성동구청 계장)

■ 발표 4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군부형)

이강미(충북 증평군 주민복지실)

토 론 : 강병민(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장), 강대선(위덕대 교수)

18:00 - 20:00 제2부. 리셉션

(장소 : 3층 코스모스)

[2012년 11월 10일]

9:00 - 11:30 제3부.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포지엄 (장소 : 1층 다모아홀)

▶ 주제 3 (14:20-15:40) 한일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코디네이터 : 전광현(서울신학대 교수)

심포지스터 : 박태영(대구대 교수)

송준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和气康太(와케 야스다, 日本地域福祉学会事務局長·明治学院大学)

藤井博志(후지이 히로시, 日本地域福祉学会理事·神戸学院大学)

11:30 - 11:50 종합토론

○ 폐 회 (15:50-12:00)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Contents

기조강연

지역사회복지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발 표 : 강도태(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1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안

발 표 : 함철호(광주대), 박태영(대구대), 류만희(상지대) 7

토 론 : 박정휴(경기 부천시 무한돌봄팀) 45

박종철(경북행복재단) 51

주제2.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및 사례

발표 1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김종건(동서대) 55

발표 2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개발

이재완(공주대), 김승용(백석대) 87

발표 3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1(도시형)

김미자(서울 성동구청) 147

발표 4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군부형)

이강미(충북 증평군 주민복지실) 155

토 론 : 강병민(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 185

강대선(위덕대) 189

주제3.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포지엄 : 한일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심포지엄 : 박태영(대구대) 191

송준헌(보건복지부 지역복지) 207

和氣康太(와케 야스다, 日本地域福祉学会事務局長·明治学院大学) 219

藤井博志(후지이 히로시, 日本地域福祉学会理事·神戸学院大学) 245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 자유주제 』

- ▶ 발표 1 필리핀의 코피노 아동지원에 대한 실천사례연구
- 코피노 어린이 재단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희주(한림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259
주경희(한신대), 우수명(대림대)
토 론 : 박석란(성정종합사회복지관)
- ▶ 발표 2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 고찰
-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체계 분석 -
발 표 : 김현진(청주대) 263
토 론 : 최인덕(공주대)
- ▶ 발표 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발 표 : 김창기(한국교통대) 267
토 론 :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
- ▶ 발표 4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에 비추어본 지역사회조직의 네트워킹
발 표 : 김용성(삼육대), 정종화(삼육대) 271
토 론 : 박 영(충북도립대)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기조강연

지역사회복지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 강도태



지역사회복지 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2012. 11.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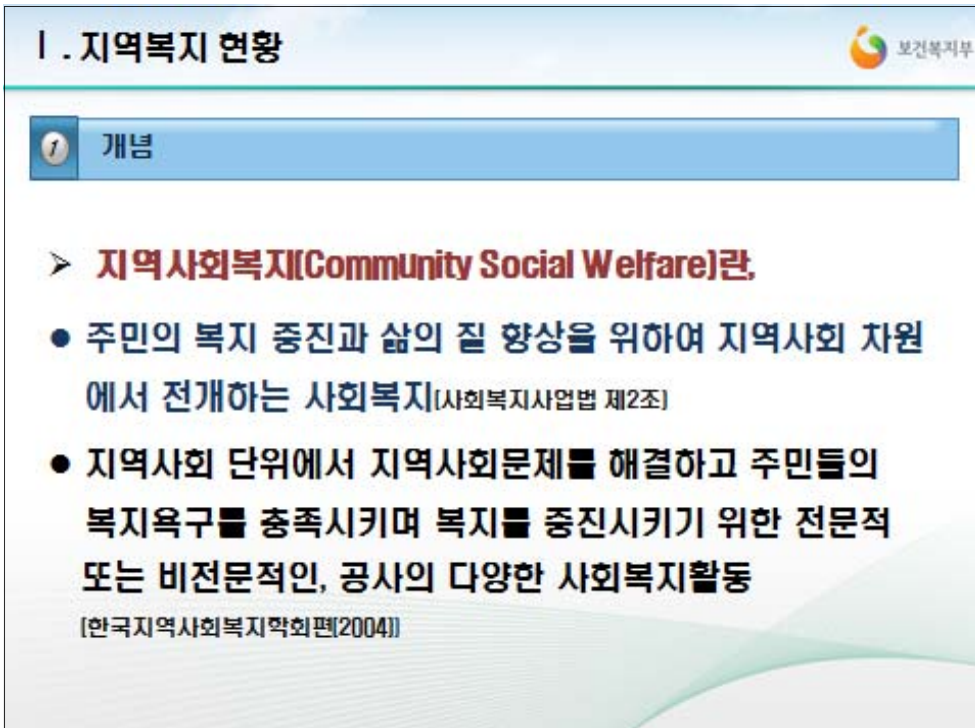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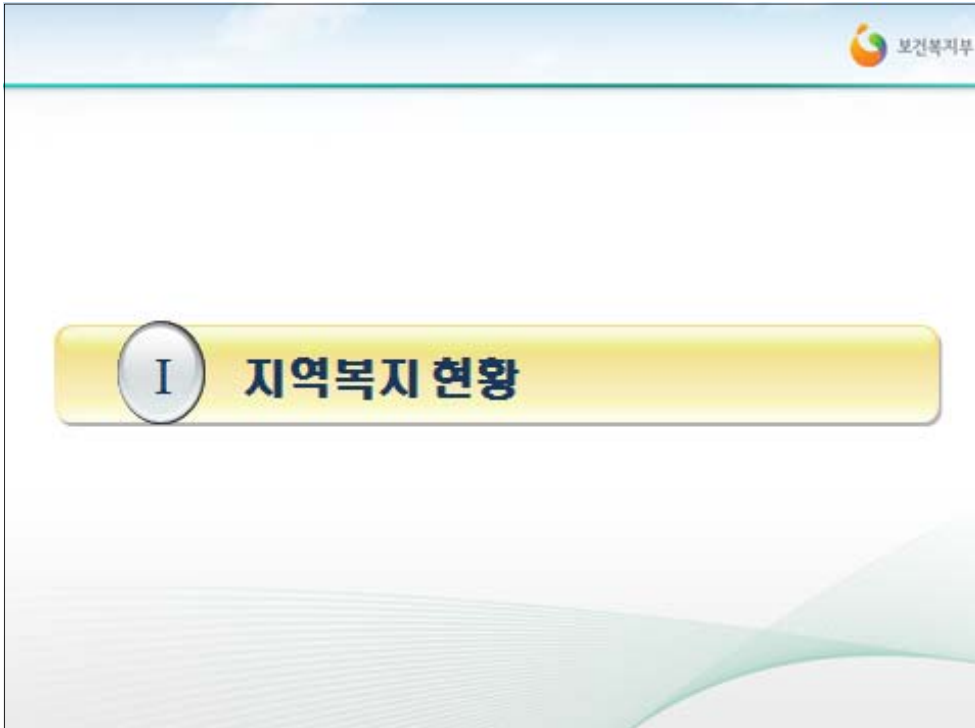
Contents




I 지역복지 현황

II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III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I . 지역복지 현황



2 지역복지의 필요성

다원화된 복지욕구 확대

- 사회취약계층 중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 가족의 양육 및 보호기능에 대한 사회화 요구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관한 복지인식 성장


-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부각**


지역단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개발 요구

- 물적, 인적 복지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요구
- 생활권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복지자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맞춤형 지역복지의 활성화

I . 지역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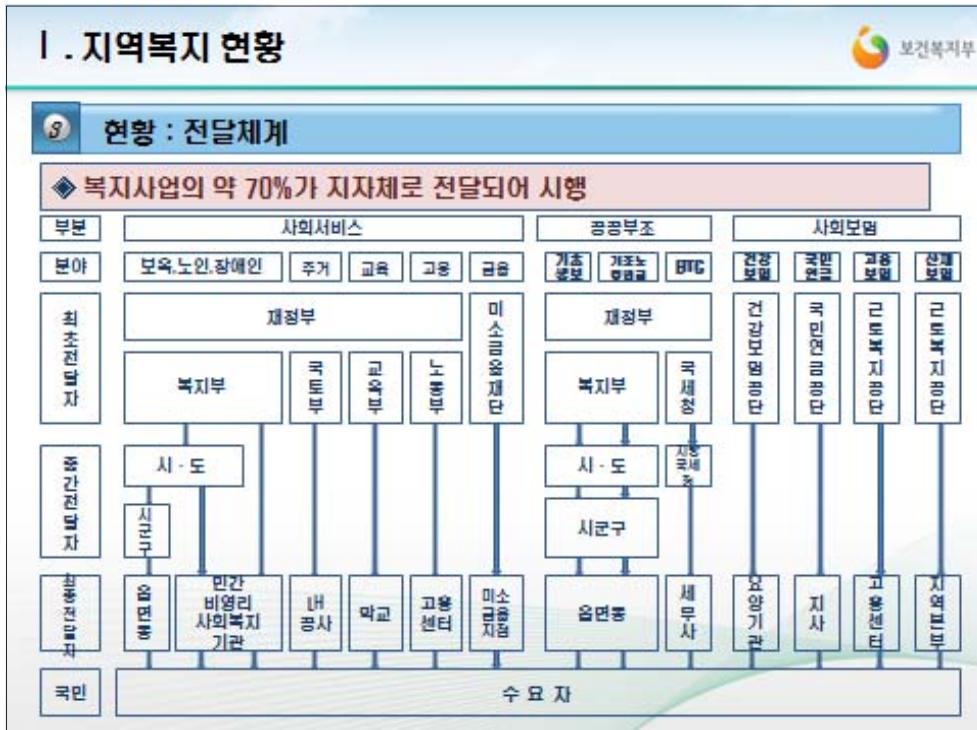
지역복지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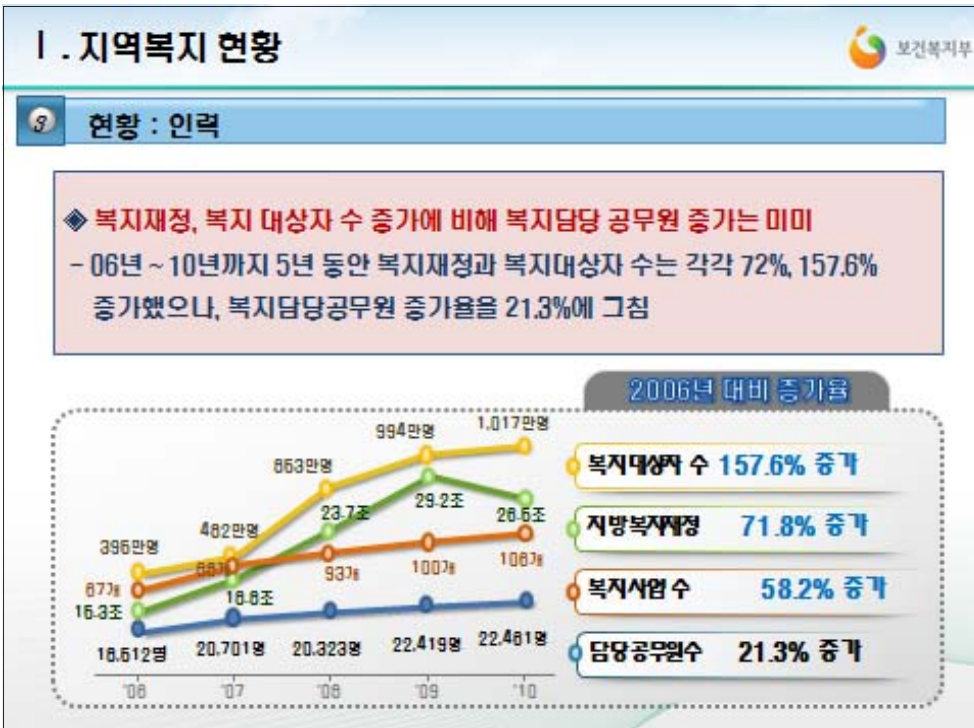
지역복지 추진현황

- 전달 체계
의망복지자원단 운영 등
동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시스템
사회복지동합관리망 구축 및
전부처 복지사업 연계
- 계획 및 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재정
지자체 복지예산 및
비중의 지속 증가

추진 체계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참여





I. 지역복지 현황 보건복지부

현황 : 복지재정

◆ **지자체의 복지예산 및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

- 12년 지자체 총 예산(151조) 중 복지예산(33조) 비중은 약 21.8%
- 복지예산 증가율은 8.8%로 총 예산 증가율(4.9%) 상회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지자체 예산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4.9%
지자체 복지예산	235,609	260,696	287,592	304,714	329,982	8.8%
비중	18.9%	19.0%	20.6%	21.6%	21.8%	-

• 출처 : 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안전부)
 • 기준 : 순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I. 지역복지 현황 보건복지부

현황: 시스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자산조사 업무 경감 및 재정효율화 실현
- 상담사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자원 파악, 상담 및 서비스 수혜이력 관리, 욕구조사의 체계화 지원 가능
-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업무 재정립

I . 지역복지 현황



9 현황 : 계획 및 평가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사회복지사업법, 03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중(11-14년)

◆ 12년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 지자체 복지사업 종합평가, 창의적 전달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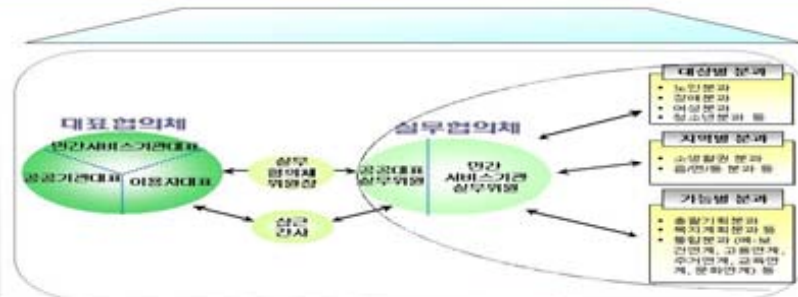
I . 지역복지 현황



9 현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역내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서비스 연계/협력
- 230개 시군구에서 대표협의체 회원 4,410명 / 실무협의체위원 4,749명/ 실무분과 16,304명 활동중(간사:144명)



II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II .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II.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2. 민관협력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인 참여 도모
- 협의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복지관련 위원회를 협의체 산하조직으로 재편방안 검토 추진



1. •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외에 법정위원회의 중요사항 심의

2. • 조직 : 법적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를 산하기구로 설치 운영, 사무국 신설, 사무국에 국고지원 근거 마련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 • 연계범위 : 보건복지 외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

II.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 '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총 7천명 확충

- [읍면동] 복지직공무원의 현행 1.6명→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상담의 내실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시군구] 사례관리 활성화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4.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 현재 국회 지방재정특위 등에서 지자체 복지재정의 전반적 개선방안 논의 중

II.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5 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을 구축하여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맞춤형 서비스·급여 적정성 강화
 - 자격·수급이력 DB, 업무처리지원시스템 등 1단계 시스템 6개동(12.8월)
 - 향후 16개 부처 총 296종 모든 복지사업 연계 추진(13.2월)



III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

통합성
중앙정부 및 시도
사업고려,
지역차원에서 통합성
(integration) 있는
실행계획 수립

참여성
주민복지의식 증진
상호신뢰 확대
복지에 대한 자발적
인식 증대

협력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에서 통합,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분석


- 복지욕구 조사대상 가구

계	5백명	1천명	2천명	3천명	4천명	5천명
232	23	87	93	19	4	6
- 의견수렴 : 139개 지역공청회, 93개 지역 공고
- 계획수립 : 연구용역 191개*, 자체수립 41개
 * 소속재단 1, 대학교 88, 민간연구소 91, 협의체 또는 협의회 6
- 연구용역 비용 분포

계	2천만원	2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1억원	2억원 이상
191	41	63	78	8	1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결과, 시도는 경기도, 시군구는 안산시, 남양주시, 익산시, 부산 영도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시상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9 검토과제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복지 정책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계획으로 위상정립 필요
 - 지역사업 중심의 계획, 시도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전환 등 검토
 - *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6-12월)**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과제



9 검토과제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단위 통합계획 수립

- 지역단위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의 중장기적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27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 명시
 -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사회보장 관련 계획 수립


<현 행>

지역복지계획

지역보건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농어촌보건복지계획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15 」

감사합니다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1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안 /

함철호, 박태영, 류만희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탐색 :

조사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안

함철호(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태영(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2006년에 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전국 234개 시군구와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배포하였고, 시군구와 시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에 근거해 2006년 10월 경에 시군구 계획이 완성되어 시도로 제출되었으며, 시도는 이것들을 취합하여 수정권고를 했고, 그 결과들 토대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해서 2007년 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07년 6월말 경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용역(「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립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비롯한 민간과 공공 연구기관들이 약 70%의 시군구 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첨언하면, 사회복지사업법 7조 2에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해당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립하게되어 있으나, 당시만 해도(아마도 지금까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할 수 있다.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시군구의 계획안을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자체의 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6년도 시도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보자면, 대개는 시군구의 계획수립과 마찬가지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공립연구기관이 6곳, 대학이 5곳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이 실행계획으로서 실효성이 있다고는 회자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수립할 때만 열심이고, 인쇄되나오면,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더 많이 들린다.

2010년 6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은 『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년 - 2014년)』 수립을 완료해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조정하고 조합해서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4개년 계획을 근거로 향후 2014년까지 지역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고, 실행해 가야 한다.

문제는 『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실효성이 『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보다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는 답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본다.

그런 응답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부집행기관에 불과했던 지방정부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지방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의 역할수행을 하루아침에 위임받게 된 것에 대한 부적응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의도가 지역차원의 의식이나 역량 등과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 단위의 복지정책으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군구와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외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연구’로는 현장의 데이터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어보인다. 현장의 데이터를 제시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메뉴얼, 평가 메뉴얼 등의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땅위에 길이 있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의 민간과 공공의 협력 네트워크다. 민간은 시군구 단위의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들 모두이고(이들은 대부분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엄청난 수다), 공공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들이다. 이들의 경험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민간 종사자들의 생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들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다.

2. 자료수집 방법

- 1) 설문조사
- 2) FGI(초점집단면접)
- 3) 심층면접.
- 4) 문헌조사.

3. 자료분석방법

- 1) 다양한 통계분석
- 2) 질적 자료분석

III. 조사결과

I.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4)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비 고	
성 별	남	108	44.3		
	여	136	55.7		
연 령	20대	7	2.9	mean 42.48 SD 7.264	
	30대	66	27.0		
	40대	125	51.2		
	50대	44	18.0		
	60대 이상	2	0.8		
학 력	고졸	7	2.9		
	전문대졸(대학중퇴)	16	6.6		
	대학 졸	120	49.2		
	대학원 졸(대학원 재학 포함)	101	41.4		
사회복지 기관 경력	3년 미만	32	13.1	mean 124.86개월 SD 77.216개월	
	3년-6년 미만	48	19.7		
	6년-9년 미만	34	13.9		
	9년 이상	130	53.3		
신분	공무원	5급 - 9급	99	5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63	25.7	
	민간종사자	민간기관 실무자	57	23.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55.7%)이 남성(44.3%)보다 조금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48세(SD 7.264)로 40대(51.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27.0%), 50대(18.0%), 20대(2.9%), 60대 이상(0.8%)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4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졸업(41.4%)로, 전문대 졸업(6.6), 고졸(2.9%) 순이었다. 응답자의 사회복지기관 평균 근무 경력은 124.86개월(SD 77.216)로 9년 이상(5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년-6년 미만(19.7%), 6년~9년 미만(13.9%), 3년 미만(13.1%) 순이었다. 신분은 공무원이 50.9%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25.7%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의 민간종사자가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II.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효성, 관심도, 그리고 수립을 위한 협의체 활동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표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전체 (실행도+효과성)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전체 (실행도+효과성)	1※	4※	2.81	0.399
지역사회복지계획_실행도	1	4	2.89	0.466
지역사회복지계획_효과성	1	4	2.68	0.478

※ 이하의 [표]에서 '1'은 전혀 아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4'는 매우 그렇다. 매우 바람직하다 등의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표 2>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_실효성 전체(실행도+효과성)' 평균은 2.81(표준편차 0.399), '지역사회복지계획_실행도' 평균은 2.89(표준편차 0.466), '지역사회복지계획_효과성' 평균은 2.68(표준편차 0.478)로 나타났다.

이 통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설문지에서 “우리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다”, “우리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계획』은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다”, “우리 시군구의 『사업별 사업기반 조성계획』은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다”, “우리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다”, “우리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해 강한 부정엔 1점, 부

정엔 2점, 긍정엔 3점, 강한 긍정엔 4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의 '실행도'는 평균 2.89점,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의 효과성은 2.68점, 두가지를 합친 실효성 점수는 2.81로 나타났다. 요컨대,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은 평균이상의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향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상치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조사방법에서 찾고자 한다. 본 설문지는 복지부의 공문형식으로 발송되고 회수되는 가운데 왜곡되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왜곡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저도 잠깐 많음을 드리면, 저희 ○○시는 1기 2기 다 자체수입을 했었어요. 1기 계획은 사실은 처음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 현장에 복지관 관장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원을 뽑아서 나눠서 했었어요. 교수님 세분, 현장에 실무자 세분. 이렇게 여섯분 정도가 했는데 계획 막들고 나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면 끌어먹을 때 받침으로 쓰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중소도시 간사, 협의체 FGI)

이러한 실무자의 의견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세간의 통념일 수 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표 3>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의 무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빈도가 높고,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사업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위다.

<표 3>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효성 없는 이유

	빈도(명)	응답(%)
자치단체장의 무관심	11	12.0
상사(국, 과장)의 무관심	13	14.1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	7	7.6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므로	33	35.9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사업이 많아서	28	30.4
합 계	92	100

이러한 응답에 대해 인터뷰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관심->“군수님들이 아직도 토건국가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 복지에 관심이 없시유 -----”(○○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예산관련해서 ->“저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부서별로 회의를 하면 12개 본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10개 그때는 9개 였는데 거의 회의를 60,70회 거치면서 만만이 같이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나중에 실무 부서 쪽에다가 건토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한참 진행되던 것들이 중지되고 삭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를 하고 조정 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역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물론 어렵겠지만, 실현가능할지 아녜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젠게 전혀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서에서 오신 예산 담당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다 말씀으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반영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민간기관 측에서는 굉장히 실망하는 것이 저희하고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회의가 필요했겠냐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이행률이 높아지면 그런 일이 없으텐데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은 이행대로 이러다보니까””(○○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다.

3기 때는 우리가 연구단을 꾸렸을 때 연구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예산배정 되지 않으면 어차피 버리는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번에는. 아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한번 모아가시고 평가를 해보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 추가시키면 예산에도 증가율이 가감이 되잖아요, ----- 그래서 저희는 3기 때는 시행 가능한 계획으로만 다 잡아서 계획을 세웠더니 좋은 건 뭐냐, 사장이 바뀌어도 그걸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그 사업계획 가지고 다음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양쪽을 다 해보니까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한다면 시행 가능한 계획으로 세워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지역복지계획이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다음의 진술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우리시는 ○○대학교 교수님하고 연구원 2명과 같이 욕구조사 분석을 하고 욕구조사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 분야별로 우리지역의 여섯 명의 시설장, 복지관장등을 위촉하여 공동연구진으로 하여 그분들이 집필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했는데요. 그 저희가 공청회도 2번을 했고, 수원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해주십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공에서는 이것은 예산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협의체에서 담당자가 조정을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그 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 반영하는 부분을 전부 총괄을 해서 조정을 해주셔서 거의 반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자르지는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를 유치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예로 아동분야에서 스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계부서에서는 자른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면서 점차적으로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성만 가지면, 반영을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를 늘려야 되는 장애인 분과 쪽이 있었는데 그것도 문자 유치 쪽으로 시장님이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방향성만 가지고 가야한다.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이러한 태도들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변화되어야 함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남양주시 등과 같이 자치단체장, 담당국·과장이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양해야 하며(일반사업·보편사업이 아닌 지역사업·핵심사업 중심의), 예산 수반이 안되는 사업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많이 담아내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관심도

<표 4>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관련자의 관심도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시행계획	2	4	2.98	0.584
지역사회복지계획_관심도	2	4	2.98	0.596
연차별 시행계획_관심도	2	4	2.98	0.583

“우리 시·군·구의 자치단체장·국장·과장·담당자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에 관심이 있다”라는 진술에 긍정(4점) 혹은 부정(1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4> 에서와 같이 2.98점이라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FGI참석자들이나 사례연구를 위한 인터뷰이들의 태도와 상반되고 있다.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담당계장들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내면, “스팬 메일쥬 보내지 말라”는 응답이 온다. 제가 볼 때는 시군구 담당자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심 없습니다”.(대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담당자)

“제가 실무자일 때 연차별계획을 수립을 매년해야 하잖아요.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야별 계획수립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연차별 성과라고 계획서를 하는데 거기도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일이 바쁘니까 마지못해서 서류를 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무성의하게 제가 연차별계획을 두 번 정도 받아본 기억이 있어서 계획 수립할 때마다 아쉬운 감이 계속 나요”.(대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표 4>과 같은 응답을 지지하는 공무원도 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라.

“저희는 ----- 라장님이 최근에 바뀌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라장님이라고 2007년부터 거의 5년을 하셨고, 담당 국장님께서도 5년째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 생각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본래가 10개 본래가 있는데 월 1회 모임을 갖고, 실무협의체가 2달에 1번씩, 대표협의체가 연 4회 회의를 합니다. ○○○시는 복지자원이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협의체에 대한 일에 항상 참여하고, -----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복지계획에 대한 논의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담당공무원들도 저희국·라장님들이 대담한 열정파입니다”.(○○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역사회복지계획_수립 경위 (n=244)

	빈도(명)	퍼센트(%)
외부 연구기관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만 심의	41	16.8
외부 연구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수립	116	47.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 수립	69	28.3
담당공무원이 자체 수립	15	6.1
모르겠다	3	1.2

약 절반의 응답자들은 “외부 연구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 수립했다”는 응답이 28.3%로 두 번째로 많다.

<표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 (n=244)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계획) (수립+평가)	1	4	2.75	0.549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계획)_수립	1	4	2.86	0.634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계획)_평가	1	4	2.50	0.54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평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술문에 동의정도를 알아보았다.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민과 관이 함께 하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실무협의체 활동에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실무분과 활동에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계획(안)’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서로 논의·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보건영역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를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평가했다”, “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를 시군구청 담당자가 평가하고 민간기관 담당자들은 추후 승인만 했다”, “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를 평가할 때 보건소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등과 같은 진술에 대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5점을 주었는데, 수립(2.86점)보다 평가(2.50)점수가 낮다.

요컨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평가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통이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n=244)

연차별 시행계획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1	4	2.70	0.597
연차별 시행계획_수립	1	4	2.76	0.740
연차별 시행계획_시행	1	4	2.82	0.692
연차별 시행계획_평가	1	4	2.53	0.507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고 같은 진술문에 동의정도를 설문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실무협의체 활동에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실무분과 활동에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지역사회복지 연차

별시행계획 수립시 '계획(안)'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서로 논의·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보건영역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의 실행결과를 민간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평가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의 실행결과를 시군구청 담당자가 평가하고 민간기관 담당자들은 추후 승인만 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결과를 평가할 때 보건소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등과 같은 진술에 대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0점을 주었는데, 수립(2.76)과 시행(2.82점)보다 평가(2.53)점수가 낮아, 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 활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있다.

요컨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통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연차별 같은 건 거의 공무원들이 세워요”(중소도시 협의체 간사)

그런데, 통계를 지지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국으로 운영되며, 직원이 4이 되는 지역의 공무원임은 감안해야만 한다.

“협의체를 마련가지고 실무본래가 협의체를 월 1회 이상 해요. 실무본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자주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는 6번, 대표협의체는 4번 이렇게 분기별로 구조는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연차별, 2기 계획도 마련가지고 실무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먼저 실무본래에서 본래가 12개에서 각 부문별 장애인 전달체계 여러 가지가있잖아요. 장애인본래에서는 장애인 부분을 하고 청소년본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전달체계나 통행서비스는 구조를 조금 바꾸기도 해요. 거기서 각 미션이라던가 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이상적으로 확인은 다 했어요. 그래서 실무본래에서 논의한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왔다갔다 피드백을 거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협력이 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도 교수님과 전체비전을 만들고 조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무협의체로 넘어가고 대표협의체를 거치고 하는데 연차별 계획도 마련가지고요. 평가를 계속 상반기 7월 중간 평가, 1월에 총괄평가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담담당자)

“(우리 시에서는 아동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팀장들이) 실무본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저희는 2기 복지계획 수립할거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데요. 또 그 계획에 추가될 거 넣고 빼고 하여 연차별 계획도 각 본래별로 논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본래자 본들이 최근에 한 6명인가 7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냈는데 본래장들이 바뀌면 연속성이 없을까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라고해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먼과 공 모두 모아 놓고, 다시 설

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사업별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닌가를 이전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 보고 전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본과장들이 모니터링하고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대표협의체에 보고도 하고”.(중소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전 담당자)

III.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매뉴얼

“귀하는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과 관련한 다음 『안내서』를 이해하는데 어떠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내서』에 대해서는 76.3%의 응답자가, 평가 『안내서』에 대해서는 80.6%가 어려웠다는 응답을 했다.

<표 8>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매뉴얼 이해·난이도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매뉴얼 이해도	1	4	2.12	0.536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결과평가 안내서에 대한 어려움 정도				
수립 안내서	매우 어려웠다	17	7.0	
	어려웠다	169	69.3	
	쉬웠다	55	22.5	
	매우 쉬웠다	3	1.2	
평가 안내서	매우 어려웠다	31	12.7	
	어려웠다	168	68.9	
	쉬웠다	43	17.6	
	매우 쉬웠다	2	0.8	

<표 9>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상의 수행내용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상의 수행내용	1	3	2.08	0.436
기 수립검토단계	1	3	2.08	0.527
해당부서별 시행계획안 수립 및 확보	1	3	2.02	0.467
시행계획안 검토	1	4	2.06	0.519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1	4	2.22	0.523

<표 10> (기 수립 검토단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상의 수행내용 (n=244)

		빈도(명)	퍼센트(%)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목표 점검	매우 어려웠다	27	11.1
	어려웠다	168	68.9
	쉬웠다	49	20.1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검토	매우 어려웠다	31	12.7
	어려웠다	166	68.0
	쉬웠다	47	19.3

<표 1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내용_필요성 정도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내용_필요성정도	1	4	3.15	0.484

<표 1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내용_필요성 정도 (n=244)

		빈도(명)	퍼센트(%)
기 수립 계획 검토	전혀 필요없다	2	0.8
	필요없다	15	6.1
	필요하다	169	69.3
	매우 필요하다	58	23.8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전혀 필요없다	3	1.2
	필요없다	14	5.7
	필요하다	176	72.1
	매우 필요하다	51	20.9
부문별 시행계획	필요없다	14	5.7
	필요하다	167	68.4
	매우 필요하다	63	25.8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전혀 필요없다	6	2.5
	필요없다	30	12.3
	필요하다	143	58.6
	매우 필요하다	65	26.6
자체 평가계획	전혀 필요없다	2	0.8
	필요없다	26	10.7
	필요하다	145	59.4
	매우 필요하다	71	29.1

<표 13> 연차별 (부문별) 시행계획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차별 (부문별) 시행계획	1	4	3.15	0.484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	4	3.04	0.540
세부사업내역	1	4	3.14	0.511
성과측정	2	4	2.95	0.503

<표 14> 연차별 (부문별) 시행계획_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n=244)

		빈도(명)	퍼센트(%)
추진배경	전혀 필요없다	6	2.5
	필요없다	37	15.2
	필요하다	161	66.0
	매우 필요하다	40	16.4
사업목적	전혀 필요없다	1	0.4
	필요없다	17	7.0
	필요하다	179	73.4
	매우 필요하다	47	19.3

<표 15> '2011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및 평가안내서' 평가지표의 변별력 여부 (n=244)

	빈도(명)	퍼센트(%)
전혀 아니다	25	10.2
아니다	96	39.3
그렇다	122	50.0
매우 그렇다	1	0.4

<표 16>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 적절한 자체평가 담당자 (n=244)

	빈도(명)	퍼센트(%)
담당공무원	17	7.0
담당공무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05	84.0
담당공무원+학계인사	11	4.5
담당공무원을 배제한 타 부서 공무원	6	2.5
타부서 공무원+외부인사	5	2.0

<표 17>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적절한 평가시기 (n=244)

	빈도(명)	퍼센트(%)
해당년도 사업마무리한 후 익년 1월 말	36	14.8
해당년도 사업마무리한 후 익년 2월 말	108	44.3
해당년도 사업마무리한 후 익년 3월 말	63	25.8
해당년도 사업마무리한 후 익년 4월 말	37	15.2

<표 18>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분야_필요성 정도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분야_필요성 정도 (전체)	2	4	3.06	0.433
시행계획 총괄	1	4	3.02	0.515
일반사업	1	4	2.96	0.550
핵심사업	2	4	3.15	0.483

<표 19>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분야_시행계획 총괄 (n=244)

		빈도(명)	퍼센트(%)
사업목적	전혀 필요없다	5	2.0
	필요없다	24	9.8
	필요하다	187	76.6
	매우 필요하다	28	11.5
사업내용	전혀 필요없다	5	2.0
	필요없다	13	5.3
	필요하다	195	79.9
	매우 필요하다	31	12.7
참여와 협력	전혀 필요없다	6	2.5
	필요없다	23	9.4
	필요하다	164	67.2
	매우 필요하다	51	20.9

<표 20>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분야_일반사업 (n=244)

		빈도(명)	퍼센트(%)
추진체계	전혀 필요없다	5	2.0
	필요없다	52	21.3
	필요하다	159	65.2
	매우 필요하다	28	11.5
추진과정	전혀 필요없다	5	2.0
	필요없다	40	16.4
	필요하다	160	65.6
	매우 필요하다	39	16.0
사업목표 달성정도	전혀 필요없다	5	2.0
	필요없다	26	10.7
	필요하다	168	68.9
	매우 필요하다	45	18.4
예산집행실적	전혀 필요없다	4	1.6
	필요없다	29	11.9
	필요하다	173	70.9
	매우 필요하다	38	15.6

<표 21>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분야_핵심사업 (n=244)

		빈도(명)	퍼센트(%)
추진체계	전혀 필요없다	2	0.8
	필요없다	21	8.6
	필요하다	173	70.9
	매우 필요하다	48	19.7
추진과정	전혀 필요없다	1	0.4
	필요없다	18	7.4
	필요하다	170	69.7
	매우 필요하다	55	22.5
사업목표 달성정도	필요없다	15	6.1
	필요하다	173	70.9
	매우 필요하다	56	23.0
예산집행실적	필요없다	16	6.6
	필요하다	167	68.4
	매우 필요하다	61	25.0
참여와 협력	전혀 필요없다	2	0.8
	필요없다	22	9.0
	필요하다	150	61.5
	매우 필요하다	70	28.7

<표 22> 2011년도 평가기준의 적정 조정률 (n=2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행계획 총괄(%)	10	50	34.30	8.791
일반사업(%)	10	60	24.64	8.679
지역사업(%)	20	100	42.54	11.336

IV.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장기 발전 방향: 응답자들의 태도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태도

“현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조정하여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 23>과 같은 응답을 하고 있다. 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인 반면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8.8%이다.

<표 23> 지역사회복지계획 현행방식 적절성 여부 (n=244)

	빈도(명)	퍼센트(%)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23	9.4
개선이 필요하다	31	12.7
적절하다	177	72.5
매우 적절하다	13	5.3

이와 관련되는 질문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주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러한 기능에 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행대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지원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표 24>와 같이 85.2%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응답태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야만 한다. 두 가지의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시켜보아야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두 번째, 지역복지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체인 도도부현은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이 지역복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지역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平野隆之, 2012).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볼 때,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원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4>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에 대한 견해 (n=244)

	빈도(명)	퍼센트(%)
매우 바람직하다	32	13.1
바람직하다	176	72.1
바람직하지 않다	31	12.7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5	2.0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기

“현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주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당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겹쳐서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계획이 수정 또는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표 25>와 같이 응답했다. 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38.1%) 적절하다는 응답자가(61.8%) 훨씬 많다.

<표 2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주기의 적절성 (n=244)

	빈도(명)	퍼센트(%)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39	16.0
개선이 필요하다	54	22.1
적절하다	146	59.8
매우 적절하다	5	2.0

3.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의 적절성과 개선방안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성격으로 모든 복지사업(국고보조에 의한 일반사업과 지자체 고유의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시군구 담당공무원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와 민간기관 실무자들에게 물었더니, 53.4%대 46.8%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많았다.

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사업은 모두 빼고, 지역사업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응답이 5할을 넘어 가장 많았고, “지역사업을 주로 하고, 일반사업을 1-2개정도(대상별복지중 아동·노인·장애인복지등 1-2개영역)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를 볼 때, 응답자의 93.4%가 지역사업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6>참조)

<표 26>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적절성과 개선방식 (n=244)

		빈도(명)	퍼센트(%)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적절성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40	16.4
	개선이 필요하다	90	36.9
	적절하다	108	44.3
	매우 적절하다	6	2.5
개선방식	일반사업(국고보조사업)을 줄이고, 지역사업(지자체 고유사업) 증대	16	6.6
	일반사업은 모두 빼고, 지역사업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36	55.7
	지역사업을 주로 하고 , 일반사업을 1-2개정도(대상별복지중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등) 포함	92	37.7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방에 다가 이렇게 예... 사업을 지칭을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을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사업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중에서도 아 - 저기 -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을 위해 국비에 시, 군, 구비를 더 들여 가지고 보편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지역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순수한 지역사업을 가지고 또 저... 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거든요”.(○○군 복지기획 팀장)

“이제는 복지가 중앙(정부)도 광역 복지도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든 우리가 건강한 반여동 만들기 해서 보건소 주관으로 인구조사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건, 건축, 주택과 다 아우러진 목구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여동 (사회복지 법정동)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목구

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는거예요. 어제 그 워크숍을 1시 30에 시작했는데 6시 넘어서 끝났어요. 주변들이 다 와서서 했는데. 네 그런 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를 형성하시키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뭉칠 수 있는 고유사업,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선순위의 아젠다를 설정하여 풀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지역복지계획 전담당자)

4.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

“지역단위의 대상별 복지(국고지원에 의한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등)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복지평가에 맡기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표 27>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3.6%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36.4%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현재 지역 단위 복지 평가에 대한 태도 (n=244)

	빈도(명)	퍼센트(%)
매우 바람직하다	38	15.6
바람직하다	117	48.0
바람직하지 않다	74	30.3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5	6.1

5. 시군구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방안

1) 시군구 지역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주체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시군구를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community competence)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역량이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합의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동의하며,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Cottrell, 1983).

<표 28> 시군구 지역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주체 (n=244)

	빈도(명)	응답(%)
지역주민	124	16.9
민간복지기관	130	17.8
기초자치단체	206	28.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77	24.2
광역자치단체	38	5.2
중앙정부	57	7.8
합 계	732	100

“시군구 지역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주체 3개만 선정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은 <표 28>과 같다. 응답자들은 기초자치단체(28.1%), 지역사회복지협의체(24.2%), 민간복지기관(17.8%), 지역주민(16.9)의 순으로 응답했다.

2) 지역주민이 할 일

응답자들은 시군구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갖기”(37.9%), “주민조직·마을만들기 사업참여하기”(25.8%), “자원봉사참여”(12.9%), “자조조직만들기”(10.4%)등을 제시했다(<표 30>참조) .

<표 30> 시군구 지역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자원봉사참여	62	12.9
이웃주민들과 친해지기	17	3.5
자조조직만들기	50	10.4
주민조직·마을만들기 사업참여하기	124	25.8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갖기	182	37.9
기초의회 의정활동 감시하기	22	4.6
기초자치단체장의 활동 감시하기	23	4.8
합 계	480	100

3) 민간복지기관이 할 일

응답자들은 시군구의 복지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할 일로 “지역기관들과 네트워크 만들기”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만들기”, “주민조직화사업”,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기”의 순으로 민간기관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표 31>참조)

<표 31> 시군구 지역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복지기관)이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만들기	99	20.4
주민들의 자조조직만들기	26	5.3
주민조직화사업	86	17.7
지역기관들과 네트워크 만들기	178	36.6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기	78	16.0
통·반장 등 복지 리더 양성사업	10	2.1
주민참여 예산학교	9	1.9
합 계	486	100

4)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표 32>와 같다.

<표 32>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주민들의 자원봉사참여지원	35	7.3
지역의 민간자원개발	151	31.5
자조조직 만들기	14	2.9
권역별 주민조직 만들기	36	7.5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57	11.9
읍·면·동 단위의 복지조직화	127	26.5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	59	12.3
합 계	479	100

응답자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지역의 민간자원개발”, “읍·면·동 단위의 복지조직화”,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 그리고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지역사회복지조직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법 많은 것이 눈에 인상적이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일

시군구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 할 일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일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실행·평가”하는 것이다. “개별기관이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기반사업”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의 민간자원 개발과 기초 지역주민의 복지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응답을 선택한 조사대상자도 상당했다.

<표 3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기초 지역의 복지마을 만들기	10	2.0
기초 지역주민의 복지역량 강화사업	65	13.2
지역의 민간자원 개발	73	14.9
개별기관이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기반사업	130	26.5
지역단위의 정책개입	42	8.6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에 대한 협력	24	4.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실행·평가	137	27.9
보건과 복지의 연계	10	2.0
합 계	491	1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자원개발 사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을 사회복지 관련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사회 공헌 기업도 많고 종교단체도 많고 개인사업자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요건도 완화시키고 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번 달에 재구성했거든요. 있기 말았어 구성하면서 신세계 백화전계신 분들 부르고 금강 이남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담임목사님, 대학에서도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도 있지않 거기에 관리자인 학생처장님도 영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 파급효과가 강자기 커지는거예요. 왜 커졌냐면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이윤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태평대사업인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탁학교 청소년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두 개예요. 탁학교 청소년 학생이 건정고시를 쳤는데 이 아이 하나가 건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먼간 기관들이 정성을 쏟는 것이 1,2달이 아니고 보통 1년이 넘거든요. 이 아이가 60점 맞잖에 65점 받고 대학에 갈 능력이 스스로 전혀 안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처장님을 영입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구제해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했더니 학교 내에서 국가장학금하고 자체장학금까지 다 1차 수시전형으로 3명 붙어서 들어갔어요. 입학처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줍니다. 학사관리까지 다. 지금 또 수시 2차 2명 가려고 하거든요. 연차별 계획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목구가 무엇인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정, 관리, 감시해주는 역할을 지역사회협의체가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 FGI, 대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개별기관이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기반사업의 사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 지역사회복지 계획 상관이 없이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고 조인을 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2009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기관 기관장님들 오시라고하면 ‘바쁘는데’하시면서 안 오시려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협의체를 ‘언제 합니다’하면 거의 나오세요. 99%이상이 협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잘 됐느냐 못했느냐가 이런게 중요하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이윤으로 우리 구 특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구의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후 보강하겠음)(공무원 FGI, 대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6)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로, 응답자들은 “기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실행·평가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32.3%). “기초 지역주민의 복지역량 강화사업 지원”(26.1%),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지원과 교육(21.0%)이라는 응답의 순인데, 광역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13.6%가 되었다(<표 34>참조).

<표 34>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기초 지역의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	34	7.0
기초 지역주민의 복지역량 강화사업 지원	127	26.1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지원과 교육	102	21.0
기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실행 평가 지원	157	32.3
광역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6	13.6
합 계	486	100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복지평가에 대한 반응->“저희 구는 관심이 없었는데, ○○광역시가 자치구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부터 (평가에) 몰해 갱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광역시가 복지부 평가 이전에 자체평가를 이번 10월에 한번 하는데 거기에 시상금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자치구군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 시 당원 업무 연차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딱 그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자체에는 잡티든 못티든 나쁜의 평가를 하고 있고 갱사가 있어 느긋한 편인데 지금 ○○시에서 갱사 있는 구는 우리구만 있어요. 16개 시구 인데 갱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갱사를 갱자기 채용 할나니까 자치구군들이 밧등에 불이 떨어진거예요. 예산도 없고 낯리 났어요. 그래서 광역시에 갱사 예산 달라고 낯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구에 있는 달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돈 때문에 자치구들 안 하던것들 하며 낯리인데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연구자 주 : 자치구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보다 소속 광역자치단체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공무원 FGI, 대도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7) 중앙정부가 할 일

시군구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할 일로, 조사대상자들은 “지역사회 복지의 법적 근거 확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34.0%). 이러한 응답결과는 응답자중 공무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효성 점검”(22.7%) “시군구 복지관련 특화사업 지원”(20.9),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18.9%나 된다(<표 35>참조).

<표 35>중앙정부가 할 일

(n=244)

	빈도(명)	응답(%)
지역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확보	166	34.0
시군구 복지관련 특화사업 지원	102	20.9
시군구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17	3.5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조직가 채용지원과 교육	92	18.9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효성 점검	111	22.7
합 계	488	100

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반응-> “일단 복지부에서 복지계획 수립 할 때 되니까 관심 가지시고 오시고 하는데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공무원 FGI. 중소도시 복지계획 담당자)

“1년에 내려 오는 게 없어요. 1년에 공문 한 2,3번 내려왔어요.”(공무원 FGI. 군지역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시행결과 평가서』를 최소한 11월말 까지 내게 되었으면 그때까지 냈는지 안냈는지 물어 본게 얼마지 안 물어 본 곳은 어딘지 그 정도만 체크하는 것 같고, 평가서도 보고 듣 하면 피드백도 전혀 없어요. 어느 시군이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어느 것이 부족하다 피드백이라도 내려주시고 이정도만 해줘도 시군의 과장님 한 번의 교육의 시키는 흔러 그 이상 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지자체 종합평가할 때 복지계획이 최소한 기한이 법적으로 2월까지 했으면 2월에 한 시군은 몇 점 주고 안한 시는 몇 점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표에 들어가면 상당히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그 정도만 해줘도 좋겠고, 아까 텅장님 댁쑈들을 또 해주시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공무원 FGI. 중소도시 복지계획 담당자)

V.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자들의 안(초고)

지금까지 현장실무자들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원계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부언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중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지원하며, 시행후 평가하는 계획이 바람직해보임. 특히 평가시 광역의 평가가 더욱 공정할 수 있음. 다만, 평가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면이 있으므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둘째, 앞의 통계치와 실무자들의 진술에 근거할 때, 지역사업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 때 지역사업의 의미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역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며,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지역의 의지(조례 혹은 예산 반영)가 반영된 경우 지역사업을 본다. 예를 들면, 고흥군이 군민의 56.6%로나 되는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를 지역주력사업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우려되는 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기, 8년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즉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현장 실무자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립매뉴얼』을 미리 만들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특히, 군 지역의 복지기획력을 완화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들의 복지기획 능력을 볼 때, “뭘 해야할 지” 또 “어려워요”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수립 매뉴얼』에 예시를 해주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시군구 지역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다. 특히 5대 바우처 사업(전국 표준형)을 제외한 지역사회투자사업(지역의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 고유사업)을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실은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6>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예시

사업명	사례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우석대학교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휴먼아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한신 플러스 케어
인터넷 게임중동 아동 치료 서비스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동신대학교
돌봄여행 서비스	CTL 네트워크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아이앤유 케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복지회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한울정신복지재단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겨져야 할 지역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7> 지역사업의 예시

사업명	사례
소규모 지역단위 복지마을 만들기	부산 희망세상, 성미산 마을만들기
기초자치단체수준의 자원개발사업	성동구, 해운대구, 경남 진주시
영구임대단지 주민조직화사업	서울시 수서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서울시 성북구, 광주시 북구
(권역별?) 자조모임 만들기	보건영역이 하고 있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성동구, 부천시, 청주시, 증평군
주민 복지(예산) 학교 운영	광주 북구, 청주시
일반사업중 지역사업	

이렇게 예시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5개(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정도를 선정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렇게 된다면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훨씬 개선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지역의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사회역량이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합의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동의하며,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며, 지역의 구성요소, 혹은 ‘다양한 부분들’을 ‘주민’, ‘민간복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분하며,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이 부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 남양주시는 가장 환상적인 기초자치단체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관심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일까하는 의문이 들지만, 시의 복지계획 담당자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관심이다. 시장의 관심에 담당 국장, 과장, 실무자,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인 민간복지기관까지 목표에 합의와 우선순위에 합의하고,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협력하는 지역사회역량이 높은 도시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관련 요인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자치단체장이라 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부분은 무엇일까? 민간복지기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라고 본다.

사례 1 : 지역에 복지넷이라는 주민조직이 활발히 움직이니 관할지역 관청에서 같이 사업하자고 접근해 왔다.(대도시의 자치구)

사례 2 : 앞에서 많이 인용된 좋은 사례, 즉 지역사회복지 관련 긍정적인 측면이 소개된 지역에 오래된 풀뿌리 조직이 있다.(대도시의 자치구)

(사례 1, 2는 최종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될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복지역량만이 ‘토건 국가적 사고를 하는’ 자치단체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겨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토 론

박 정 휴(경기 부천시 무한돌봄팀장)

박 중 철(경북행복재단 팀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탐색 : 조사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안에 대한 토론문

박정휴 (부천시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장)

I. ■어기는 말

흔히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점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공급방식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을 거론합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자치단체 및 비영리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공급자 지급방식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서비스욕구에 대한 내용과 수준 역시 지역, 연령, 성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에 복지재정 분권이 실행되고, 이에 따라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시에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단위 협력체 구조)설치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화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 단위로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이 조사결과와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토론자는 금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조사가 통상적인 양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질적연구도 병행하고 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도 그 동안의 지역복지계획이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및 평가방법이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 지역복지계획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복지계획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보다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귀중한 결과와 제안을 마련해 주신 함철호 교수님, 박태영 교수님, 류만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II.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장기 발전방향 안에 대한 의견

본인은 발제자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방향 탐색 : 조사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안'의 발제문에 대해 특별한 이견을 달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적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적 실천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중장기적인 복지발전 방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동의된 실천계획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힘을 갖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실행 - 평가의 발전적인 제안에 덧붙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광역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원과 평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적절한 시행과 과정, 평가에 대한 기본 체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매뉴얼 등의 사업지침과 이해가 분명한 상세하고 현실적인 지표개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각 영역 간의 구체적 기준선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중심의 특성화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현실적인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 평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실행 평가지표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가의 주체도 불분명하고 평가에 대한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부여받아 설명할 책임도 사실상 거의 없다. 지자체의 주관적 판단도 상당부분 들어갈 수 있고 책임의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평가지표의 방식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가지표가 구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평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투자방법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3. 일반사업과 핵심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 :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지역 현장에서는 일반사업이 핵심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 비전속의 사업은 핵심사업이며, 일반사업은 네트워크 사업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지시 사업이고 핵심사업은 지역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구분을 하기도 한다.

사업적 구분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만 사업의지와 추진에 대한 힘을 어느 정도 두는

냐에 따라 판단하는 자율성을 두자는 의견이 있겠지만 구분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구분하여 명시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기술작성에 덜 생산적이다.

4.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시의회의 예산심의구조를 마련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실천을 강조하고 중장기 방향성 안에서 이를 실현하는 민관 협력적 과정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이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말이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자체의 사업들은 사업 방향이 복지보다는 사회기반투자시설에 있을 것이고 지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행사성 사업들에 많은 홍보비와 행사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에 대한 공정한 분배구조와 이에 대한 분석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의 책정과 심의는 시의회의 기능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다.

공공의 영역은 중장기 비전에 대한 계획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이를 시의회에 예산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계획은 절차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이 이를 수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할 때에만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조건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최종 심의는 대표협의체에 있다. 대표협의체의 회의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 예산 반영과 사전심의제도를 현실화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조직이 대표협의체이다. 충분히 그전에 공공과 민간의 협의구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구체화하여 공청회 또는 고시를 통해 알리고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의 충분한 심의와 논의구조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발전 방향과 예산에 대한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인 기초자치단체장인 경우가 많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의 충분한 심의와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해진 약간의 회의시간에 살펴보는 것 외에 특별히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심의시간을 별도로 충분히 두는 것과 각 분야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사전에 위원들로부터 받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비전수립 등 공공영역에서 관내 공무원에 요구되는 많은 계획수립(비전수립)을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단일화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부처별,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일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이

는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의 성격을 띠며, 관계부처의 협조와 논의를 토대로 하는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민간의 의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소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7. 주민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로컬거버넌스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즉, 주민이 정책과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 있다. 특정 인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자생단체의 특성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 또는 충분한 예산에 대한 이해와 시 행정 및 예산구조에 대한 분석이 없어 막연히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거나 지역중심의 이기주의적 예산확보가 그 개인의 성과로 치부되는 인식 때문에 당초의 발전적인 지역사회 건설과 무관하게 흐른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주민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내 현존하는 사회문제 해결과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에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주민교육과 인권과 복지에 대한 시민교육, 예산과 행정에 대한 실천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Ⅲ. 맺는말

금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탐색' 조사는 민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여 개선을 통한 훌륭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도는 각 자치단체별 교류를 활성화 시켜 우리나라 지역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편

박종철(경북행복재단 평가네트워크팀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의 근본적인 취지는 쉬운 말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이익사회'(gesellschaft)를 넘어선 '공동체'(gemeinschaft)로 만들어가는데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가용한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여 조직화하고, 지역 복지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본래 취지라고 본다.

그러나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공공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실제 수행되는 업무와 유리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행정력 소모 또는 부가업무로 인식되고, 민간에서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법률적 의무이행을 위한 관료적 행정행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발표 내용 중 인터뷰 자를 토대로 볼 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초의 기대와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세미나와 발표주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본다.

발제자들께서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민간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업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발제자들의 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이라는 법률적 규정이 담은 본래 취지와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원계획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의 경계 등에 역할모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세출예산 구조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경상북도의 경우 사회복지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약 30% 내외에 이르고 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약 78% 가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보육수당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예산이며, 약 12~14%는 지방이양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와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고정화된 예산이다. 결국 자체사업을 위한 역량은 10% 내외에 불과하나, 사회복지관련 단체지원 등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계속사업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보훈사업, 그리고 각종 행사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경직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율과 금액의 규모를 보면 매우 산발적이며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원사업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욕구와 필요, 미래지향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동일한 기준의 보장이 필요한 시책의 개발과 시행이 어려운 한계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경상북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먼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지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사회복지분야 정부역할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재정 교부 또는 지원제도를 개혁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복지계획의 내용과 범위를 지역사업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간적 범위 또는 투입재원의 특성을 기준으로 계획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행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이 제시한 내용적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보육,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 기타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저출산·고령화 계획, 기초생활보장계획 등을 비롯하여 각 행정전달체계별로 관련 법규에 의한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계획에 담겨져야 할 내용과 매뉴얼의 양식, 제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한 측면이 많다. 이는 행정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와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3/4분기 말 또는 4/4분기 초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해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한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사항의 매뉴얼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비롯한 법규가 명시한 계획수립에 수반되는 행정사항의 매뉴얼이 서로 상이하여 행정과다 또는 소모적 행정행위 발생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내용적 범위에서 각 분야별 매뉴얼과 계획수립시기와 내용, 그리고 지자체별 예산성립을 행정사항 등에 관련된 매뉴얼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행정소모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 분야별 계획과 매뉴얼을 통합하거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행정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따르는 난해함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단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제문에서 자치단체장의 '토건국가적 사고'라는 표현은 적어도 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가 아직까지 가시적 치적 위주의 정책 또는 행정계획에 밀려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복지의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 3대 요소 중 주로 사회서비스의 계획과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과 분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계획으로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관련 입법이 정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국가적' 행정행태는 사회복지를 전근대적 왕정국가의 온정적 시혜로 여기고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법률적 강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주로 군비 예산 또는 국비·도비 보조금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지역주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비물질적 자원 - 예컨대, 재능기부 조직화와 같은 - 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국가발전에 따른 성장과 분배의 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화되었다기 보다는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분출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한 즉응적 대응에 의해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장기발전은 이러한 산발적이고 분절화된 사회복지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조정을 통해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환경기반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2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
채 현 탁, 김 종 건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김종건(동서대 교수)

I. ■어기는 글

1.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성 강화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분권화 경향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수요에 부응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주민 밀착형 전략 개발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중요성 강조
 - 중앙 정부나 상부로부터의 산별적 개별 계획들이 수립되어 지역사회에 전달되므로 인해 복지 공급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등에 비추어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6년 수립하였으며, 2010년 제2기 계획(2011~2014년)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시행 강조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중기 계획이므로 이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 됨.
 -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의 불분명성, 양식의 적용의 비명료성,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기계적 적용과 현장식 해석 등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선 필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

계획을 시행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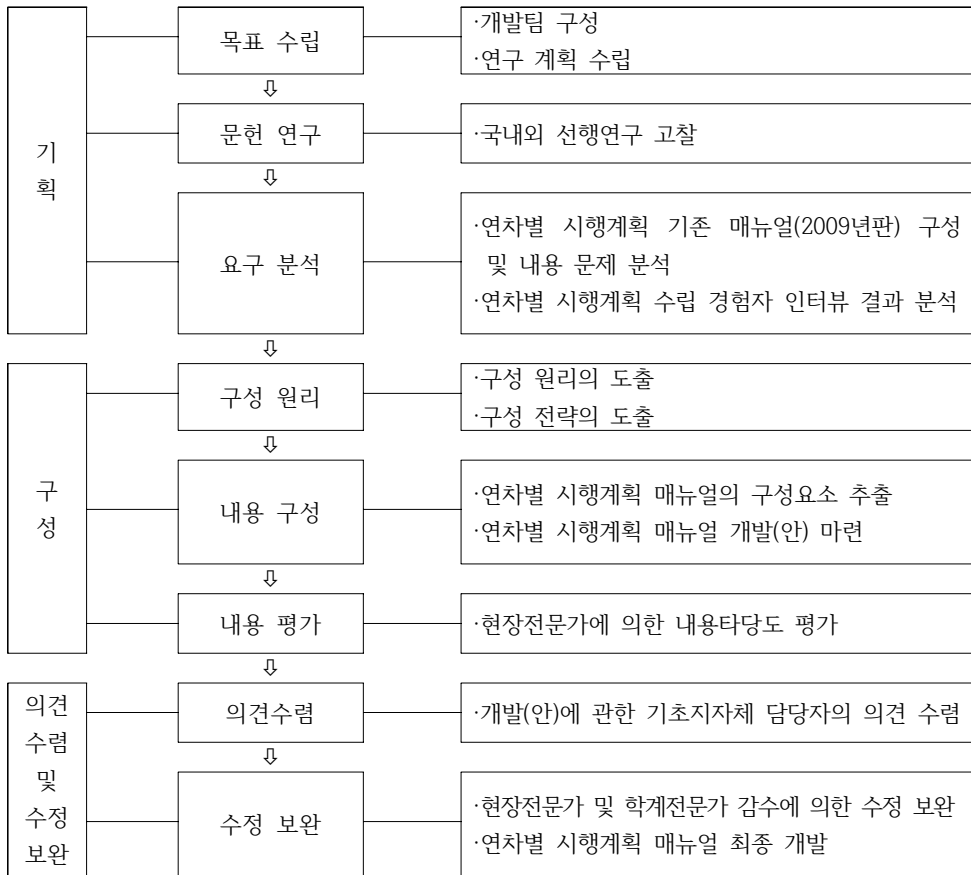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5).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 이러한 필요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통합, 협력, 참여의 3가지 차원에서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함. 통합(integration)은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시행 계획 수립, 협력(collaboration)은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 협력, 참여(participation)는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 유도를 의미함.
- 이러한 3가지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정과 실행, 평가 전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것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간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차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action plan by yearly)이며, 실무책임자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적합성을 점검하게 해주는 과정 검토 계획(process-checking plan)이며, 일선 실무자에게 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계획(guideline plan)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행계획·과정 검토계획·안내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가는데 목적이 있음.

2. 매뉴얼 개발의 과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안) 마련을 위해 기획, 구성,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의 3단계를 상정하고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과업을 <그림 1>과 같이 수행함.



<그림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개발 과정

II. 기존 매뉴얼(2009년) 구성 및 내용 분석

1. 기존 매뉴얼 구성 및 적용상의 문제점

○ 기존 매뉴얼의 구성 개요

- 기존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1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기초 지자체에 보급 됨.
- 이것은 크게 I.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개요, II.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III.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및 평가 안내의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II부에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다루고 있음.
- II부에서는 수립절차, 수립절차 세부 실행내용, 시행계획 내용, 시행계획 양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기초 지자체에서는 2011년,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에 의한 수립, 연구용역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기존 매뉴얼의 적용 경험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점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매뉴얼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 변화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단위 계획이자 실행계획(action plan)임.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은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매뉴얼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 가지 원칙인 통합·협력·참여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 지위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원칙의 구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이 어떠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함.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적용을 연단위 실행계획의 지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와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 정립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실무자 또는 조직에게 일종의 지침(guideline)임. 따라서 수립 매뉴얼은 각 과정에 임하는 실무자 또는 조직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 차원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매뉴얼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자만 참고하는 경향이 있음. 보편사업의 경우 이러한 현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역사업은 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의 주체 또는 자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기존 매뉴얼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을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field manual)으로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공공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구현하는 구실을 할 것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선의 수월성 증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와 정체성에 맞는 변화는 매뉴얼의 작성과 이해를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임.
- 기존 매뉴얼에서 이 부분의 한계는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

1) 기본 매뉴얼 적용 경험 과정상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월 실시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수렴, 연구 프로젝트팀에서 2012년 9월 실시한 시행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기초 지자체 담당공무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것임.

음. 논리모델에서는 투입을 ‘예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함. 그러다보니 과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산출(output)은 성과측정과 맞물려 일선에서 ‘실적’으로 칭해지는 인원수 또는 확보된 자원량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는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기계적 적용과 현장식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

- 신규 매뉴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법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서의 투입-과정-산출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outcome)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하며, 변화된 환경에서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여 성과측정을 보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림2>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문제점		개선 방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원칙(통합·협력·참여)을 언급하는 수준 ·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이 미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원칙(통합·협력·참여)을 연차별 계획 수립에 반영 ·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사이의 로직을 강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정립에 취약 · 매뉴얼의 유용성이 시행계획 수립자로 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eld Manual 로서의 정체성 부각 · 매뉴얼의 유용성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는 단위로 확대
일선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에 대한 이해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에서 수용 가능한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방식으로 전환

<그림 2> 기존 매뉴얼의 적용 경험상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기존 매뉴얼 시행계획 상세 내용의 문제점

○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상의 핵심영역은 II부의 시행계획의 내용과 시행계획 양식 부분임.

- 시행계획의 내용은 제1장 해당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제2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3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제4장 자체 평가계획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장에 따라 시행계획 양식은 도표 제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형,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기술형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시행계획의 상세 내용 분석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범주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과 이 과정에서 추출된 매뉴얼 개발 요소를 제시해 보면 <그림 3>과 같음.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내 양식만 제시 ·해당 항목의 타이틀만 제시 ·변경사업 내용의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상성과 모호성을 최소화해야 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이므로 구체적이어야 함 → 구체성의 확보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목표치의 불명확 ·시행계획 및 수행사업 추진인력의 불분명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와 이질적인 양식 형태 ·시행계획 수립 과정과 수립 양식간의 관련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의 분절로 인한 한계를 극복해야 함. ·계획수립자와 계획실행자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와 계획을 연동시키기 위한 양식의 연관성 제고 필요 → 통일성의 확보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동일한 양식으로 제시 ·수행사업의 구조만 제시 ·성과목표치 산정의 불명확 ·수행사업과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내용과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 수행자(공무원, 기관실무자, 활동가 등)의 업무지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민간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사업의 특성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함. ·논리모델과 성과측정방식의 현장수용성 제고 → 현장실용성의 확보 노력 필요

<그림 3> 시행계획의 상세 내용 분석을 통한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신규 매뉴얼 개발(안)

1. 신규 매뉴얼 개발원칙과 전략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개발을 위한 개발 원칙을 구체성, 통일성, 현장실용성으로 설정함.

첫째, 구체성(specification)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상성과 모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실무자와 참여자에게 권한과 구실을 부여하여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의 목적인 통합, 참여, 협력을 실물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임.

둘째, 통일성(unification)

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 계획의 실제 추진자가 참여함으로써 계획수립자(계획작성자와 계획실행자(담당공무원, 실무자, 활동가 등)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구현하자는 것임.

셋째, 현장실용성(field manual)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실무자, 활동가가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하자는 것임.

- 이러한 개발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첫째, 기존(2011~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내용과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매뉴얼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매뉴얼 내용상에 관계자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매뉴얼 내용상에 제시된 양식이 관계자들의 해석 없이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매뉴얼 내용상에 제시된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항목간의 구조화를 유도해야 한다.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1) 수립단계별 개괄 내용

수립 단계	내 용	수행방법	담 당 자
I. 계획의 변경사항 확정 및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 확인 및 확정	문헌 검토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2.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당해년도 1~9월의 수행실적) 평가내용 검토	문헌 검토	
II. 해당부서별 시행 계획안 수립 및 확보	1. 기존 내용 검토결과 해당 부 서 통보	문헌 검토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2. 해당부서별 시행계획안 작성	기획, 조사, 회의	• 관련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또는 TF) •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
	3. 시행계획안 취합	-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4. 시행계획안에 대한 예산부서 와의 사전 검토	대인 소통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 관련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III.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1. 시행계획안의 공개 검토	회의, TFT 구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또는 TF) •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
	2. 시·군·구 차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시행계획안 수정 및 보완	회의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IV.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1.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회의, 의사결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시행계획 제출	-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2) 수립 절차의 세부 실행내용

(1) 계획의 변경사항 확정 및 전년도 시행결과와 평가 검토 단계

<p>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 확인 및 확정</p>	<p>○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을 확정짓는 절차를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목표의 변경을 야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사항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p>② ①에 의한 해당연도 수행목표의 검토</p>	<p>○ ①에 의한 해당연도의 수행목표를 검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내용을 점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연차별 수행목표가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p>③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와 평가내용 검토</p>	<p>○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연차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시점이 11월임을 고려하면 시행결과는 당해년도 1~9월의 수행실적)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정보를 수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 할 수행사업의 조정 수행목표치, 사업수행상의 고려사항 등은 무엇인가?

(2) 시행계획안 수립 및 확보 단계

<p>① 기존 내용 검토 결과와 해당 부서 통보</p>	<p>○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목표,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분석 결과 내용을 해당부서에 회부한다.</p> <p>○ 해당부서는 검토 결과 내용 점검을 토대로, 사업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p>
<p>② 해당부서별 시행계획안 수립</p>	<p>○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사업부문별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지역사회 변화 추이에 대하여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방법은 회의 개최, E-mail 전송, 서신 발송 형태로 다양하게 취할 수 있다. <p>○ 사업부문별 해당 부서 담당자는 지역사회 변화 추이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목표 중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한다.</p> <p>○ 수정 혹은 존속되는 내용을 근거로 사업부문별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p> <p>○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해당 (유관) 실무협의체 위원(또는 TF),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과 긴밀히 소통한다.</p>
<p>③ 시행계획안 취합</p>	<p>○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사업부문별 해당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취합한다.</p>
<p>④ 시행계획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 검토</p>	<p>○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취합한 시행안의 예산안을 지자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보완될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사업부문별 해당부서 담당자는 예산 담당부서와 논의한 수정안을 지역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단계

① 시행계획안의 공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 의견취합 방법은 인터넷 공시, 주민 공청회, 대표자 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또는 TF)에서 시행계획안에 대한 취합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을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제시한다.
② 시·군·구 차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 해당 실행부서로부터 최종 의견을 받는다. ○ 시행계획안 최종안을 완성한다.

(4)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단계를 거쳐 수정·보완된 시행계획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부서(담당자)는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한다. ○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서는 지역사회에 공시한다.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내용

1) 개발원칙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세내용 개발 지침

개발 원칙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세내용 개발지침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내 양식에 따른 작성안내(작성목적, 용어해설, 작성방법, 작성예시) 제시 · 해당 항목(타이틀)에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변경사업의 다양한 변경내용을 유형화하여 제시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목표치를 사업량(건/명)과 예산(백만원)으로 명확화 · 시행계획 및 수행사업 추진인력의 구체화, 명확화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와 연동(자체 평가계획) ·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활동이 계획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화
현장 실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양식 개발 -보편사업 작성의 간단화, 명료화 -지역사업 작성의 구체화, 전문화 · 수행사업의 구조와 과정을 동시 고려할 수 있도록 양식 제시 · 성과목표치의 계산식 기술로 명확화 도모 ·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사업수행기관의 행정지원 계획으로 명확화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세내용

(내지)

20○○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 . 군 . 구)

성명	소속	직위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내지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를 명기하여 계획 수립자의 책임성을 담보한다.

【용어 해설】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담당 공무원 외에 관련 부서별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명단을 성명, 소속, 직위 순으로 기재.

심 의 결 과 서

○○(시 . 군 . 구) 2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함.

20○○.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4년 중기계획)의 사업내용 가운데 이번 연차에 수행해야 할 사업과 사업목표량을 분명히 한다.

【용어 해설】

- 성과목표치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값으로 수행목표의 방향을 제시함.
- 수행목표치 : 해당년도에서 사업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값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사업목표임.
- 보편 사업 : 보통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하달되는 상위계획 사업을 의미함.
- 지역 사업 : 기초지자체의 기획과 책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함. 중앙부처가 지원(국비)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는 기초지자체의 의지에 의해 기획한 것이므로 지역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음.

【작성 방법】

- 부문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등 기재.
 - 사업 : 사업명은 보편사업 및 지역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명 기재.
구분은 '보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
 - 성과목표치 : 성과목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됨.
 - 수행목표치 : 사업량(건/명)과 예산(백만원)을 기재.
- ※ 성과목표치는 사업의 4년간 목표값이고 수행목표치는 사업의 1년 목표값임. 수행목표는 성과목표치의 달성을 위한 해당년도 1년 사업목표치임.

【작성 예시】

부문	사업		성과목표치	수행목표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여성 가족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	지역	창업여성수 60명	15명	10

2.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내용

○ 시행실적(1월 ~ 9월) 평가

부문	사업		수행목표치		달성치	
	사업명	구분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사업량 (건/명)	예산 (백만원)

○ 시행실적 평가의 총평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자료는 당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이 자료를 통해 수행 사업에 관한 3/4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것에서 도출된 다양한 함의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작성 방법】

- 시행실적 평가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사업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사업의 연간 수행목표치는 기록함.
달성목표치는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시점이 11월임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3/4분기(1월 ~ 9월)까지의 사업과정상의 실적치를 기록함. 이 실적치는 향후 당해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시행실적 평가의 총평 : 부문별 사업실적(사업량/예산) 비교, 부문내 사업실적(사업량/예산) 비교, 당해년도 시행실적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문별 사업의 수행과정상 제기 문제 등을 다양하게 기술함. 이를 통해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사업의 수행목표치 조정, 사업수행상의 고려사항을 발견하고 제시함.

3. 해당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환경 변화 사항
-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 지역사회자원 변화 및 수렴 사항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 방향
- 기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사회자원 등의 다양한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작성 방법】

- 제시된 각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필요에 따라 제시된 항목을 삭제하거나 고려사항을 수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

부문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사회자원 등의 다양한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작성 방법】

- 부문 및 사업명 :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될 내용이 있는 사업만 기재.
- 변경내용
 - ① 폐지 : 해당연도 이후 시행하지 않음
 - ② 중지 : 해당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음
 - ③ 확대 :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모가 증대됨
 - ④ 축소 :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모가 줄어들
 - ⑤ 내용변화 : 추진 방식의 변화
 - ⑥ 신설 :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됨
- 사유 : 변경내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예시】

부문	구분	사 업 명	변경내용	사 유
노인	지역	재가노인들의 사회복지망 구축	③, ⑤	민간자원 지원(공동모금회 지원사업, 3억원 지원예정)으로 공공주도형 사회복지망 구축에서 민간협력 구축사업으로 조정되었음.

제2장 부문별 시행계획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1. 추진사업 총괄표

구 분	사 업 명	수행목표치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 보편사업	A-1.		
	A-2.		
	A-○.		
	...		
	...		
B. 지역사업	B-1.		
	B-2.		
	B-○.		
	...		
	...		

2. 보편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보편사업명 A-1 :

• 사업목적 :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대상	
실인원 수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_____ 개

2) 사업 예산 _____ 백만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1.1			
A-1.2			
...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보편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내용 및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연차의 부문별 일반사업 총량을 명료화하고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계획한다.

【작성 방법】

- 사업명 : 네모안에 보편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 사업목적 : 3줄 이내로 명료하게 기술.
- 사업 대상 및 실인원 수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제 인원수 명기.
- 사업 내용 및 예산 : 세부사업의 전체 개수 및 사업 예산(세부사업의 개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 사업내용은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개별 사업량, 예산), 세부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사업내용은 대상, 수행방식, 급여형태, 사업시기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 기술 내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작성 예시】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A-3.1.주거급여지원	4,595명	1,815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주거급여비(현금) 연중 개별지원
A-3.1.집수리지원	153명	230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의 집수리(현물, 경비보조)를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연중 개별지원

3. 지역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지역사업명 B-1 :

- 추진배경 :

- 사업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지역	
사업 대상	
실인원 수	

- 사업 내용 및 예산

- 1) 세부사업수 _____ 개
- 2) 수행인력

책임기관	
협력기관	

3) 사업 예산 _____ 백만원

예산 구성	시(구)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백만원
민간사업비 출처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건/명)	예산(백만원)	
B-1.1			
B-1.2			
...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지역사회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지역·대상 및 실인원 수, 사업 내용 및 예산, 평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연차의 부문별 지역사회 총량을 명료화하고 논리모델과 성과측정방식을 통한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계획한다.

【용어 해설】

- 수행목표 :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는 산출물.
- 성과목표 : 해당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 책임기관 : 해당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상의 책임을 맡는 기관. 본 사업의 주체이며 협력기관을 조직하며 기관간 기능 조정과 자원 통합의 기능을 맡음. 통상 예산집행의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임.
- 협력기관 :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책임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원으로 간주되기도 함.

【작성 방법】

- 사업명 : 네모 안에 지역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 추진배경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최근의 지역주민욕구조사, 공청회·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 지역복지자원 현황(최근의 지역자원조사 등 반영), 지역환경적 특성, 경험적 근거 등에 근거하여 기술. 6줄 이내로 명료하게 기술.
-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를 구분하여 명료하게 기술. 특히 수행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기술 할 것. 1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목표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해당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행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할 경우 수행목표만 기술할 수도 있음.
- 사업 지역, 대상 및 실인원 수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역(해당 읍·면·동)과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제 인원수 명기.
- 사업 내용 및 예산
 - 세부사업의 전체 개수 명기.
 - 수행인력은 책임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협력기관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해당기관명을 직접 기술하고, 기관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의 개별 예산을 합산하여 명기하고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내용은 세부사업명, 수행목표치(개별 사업량, 예산), 세부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사업내용은 대상, 수행방식, 급여형태, 사업시기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업을 중심으로 해당 월별을 음영 처리하는 방식으로 표기.

- 평가계획
 - 성과목표치 : 해당사업의 성과목표로부터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산정하여 기술.
 - 계산식 : 성과목표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식을 고안하여 기술.
 - 자료원 및 기존자료 여부 : 성과지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명칭과 기존 보유자료인지, 새롭게 작성하여 조사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O 또는 X로 표기
 - 자료수집방법 :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면접, 관찰, 사례연구 등)을 기술.
 - 자료수집시기 : 해당 월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 기술 내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작성 예시】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목적	수행목표	성과목표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안전 증대와 건강한 성장	저소득층 방임아동 방과후보호 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안전사고율 감소
	저소득층 방임아동 식사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평균 신체발달지수 향상

· 평가계획

성과목표치	측 정 방 법				
	계산식	자료원	기존자료 여부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시기
1. 자원연계성공률 60%	자원연계협약건수/자원연계를 위한 접촉건수×100	자원연계협약서, 업무일지	O	증명서, 일지	12월
2. 이용자 만족도 평균 4.5점	이용자만족도평균(5점)	이용자만족도 조사	X	서베이	12월

제3장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

1. 책임기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2. 협력기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4. 기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책임기관, 협력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행정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행계획 수행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용어 해설】

- 책임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상의 책임을 맡는 기관(부문별 시행계획의 세부 계획내용 관련).
- 협력기관 :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부문별 시행계획의 세부 계획내용 관련).

【작성 방법】

- 행정지원명 : 행정지원 내용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 기술.
- 행정지원 내용 : 행정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정지원 시기 : 연중, 분기(1,2,3,4분기), 반기(상,하), 구체적인 월 명기.

【작성 예시】

- 책임기관

행정지원명	행정지원 내용	행정지원 시기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업무 강화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업무 담당자 보강.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6월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복지국 내 희망복지지원단(과) 신설 조직 신설 행정조치와 신규인력 6명 배치	상반기
협력기관 네트워크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3월, 9월

제4장 자체 평가계획

1. 평가주체
2. 평가시기
3. 평가내용
4. 평가방법
5. 평가결과 활용계획

▣ 작성 안내

【작성 목적】

-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계획하므로 보다 나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작성 방법】

- ※ 자체 평가계획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
- 평가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주체별로 수행한 역할을 기술.
- 평가시기 : 시행계획 사업기간(평가대상 기간)과 시행결과 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내용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상의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제시.
- 평가방법 : 평가 주체가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제시. 서류 평가, 현장 평가,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평가 진행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
-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IV. 맺는 글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시행계획서 마련이라는 결과물 확보의 업무 성격보다 지역사회복지의 추진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결국 지역사회복지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가지는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규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안)에서 제기된 수립 과정과 수립 내용이 적절하게 연동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특히 이번 신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복지계획(2011~2014년)의 수행과정 상에서 전환될지도 모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기본 매뉴얼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세심한 전환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더불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까지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중요성(지역사회복지력을 높여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시행계획)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며,
 - 기초 지자체 담당자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력, 업무 추진력 등을 높여가기 위한 실무 교육이 필요(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피드백도 활용)하고,
 -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만들어 가는 수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 주민·시민 참여노력 등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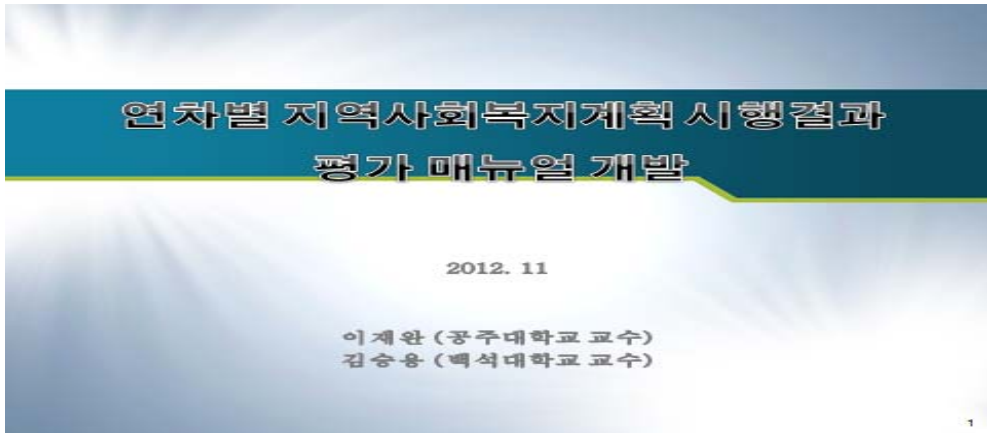
주제발표 2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개발 /
이재완, 김승용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개발

이재완(공주대학교 교수)

김승용(백석대학교 교수)



➔

1. 평가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기(2011-2014) 지역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제15조의 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의 4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실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에의 효과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행연도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지역복지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1)평가 - 지역복지계획의 순환평가는 4년 주기로 하되 이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지역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결과 평가를 받는다.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지역복지계획의 중간점검으로서 과정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2)평가결과 반영 - 지역복지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내용은 제3기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한다. - 연차별 계획 시행 결과평가를 제2기 지역복지계획 실행과정에 반영하여 계획 변경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2. 지역복지계획 작성원칙과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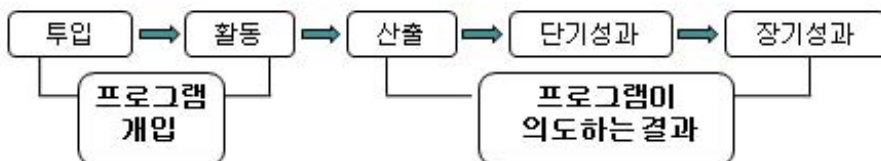
계획의 방향	작성원칙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성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 부터 시작되는 상위계획 사업들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실행계획을 수립함. • 참여성 지역주민/시민의 참여를 유도함 • 협력성 지역의 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 공공·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 과학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 연속성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계획 등과의 연속성이 확보된 계획 • 실현성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재정계획 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의 충실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3



3. 지역복지계획 평가계획(안)

- 평가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기관 등
- 평가시기 : 평가실시기간
- 평가방법 : 평가주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제시, 서류 평가, 현장평가
- 평가절차 :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일련의 진행과정 및 절차
- 논리모델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논리모델이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과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나 결과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도표화 하는것



4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 시행계획 총괄 평가 결과 : 지역간 차이 발생
 - 주민참여와 협력 평가 영역에서 낮은 평가 점수
- 보편사업 분야 :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핵심사업 분야 : 지역간 차이 발생
- 우수지역과 미흡지역간 차이 발생
 - 보편사업 9.9점, 핵심사업 11.9점
- 시·군·구별 비교 :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 발생
 - 보편사업의 경우 시행과정의 적절성(추진체계, 추진과정)에서 차이 발생(자치구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남)
 - 핵심사업의 경우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주민참여와 협력에서 차이 발생(시지역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남)

5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종합평가 결과 : 시지역

구분	지표	지역민들의 권리					주민참여와 민회참여 정도				총	결과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참여와 협력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지역민들의 권리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경남 시지역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우수
경북 시지역	10	0	0	0	0	10	10	10	0	0	00	우수
강원 시지역	20	0	10	10	0	10	7	10	10	0	0	우수
경북 시지역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우수
충남 시지역	20	0	0	10	0	10	10	10	10	0	0	우수
경기 시지역	20	10	10	10	0	10	10	10	0	0	00	우수
경기 시지역	10	0	0	0	0	10	0	0	0	0	07	미흡
경기 시지역	20	10	0	10	10	10	7	7	7	0	00	미흡
경북 시지역	20	0	0	10	0	10	0	10	10	0	00	우수
계산		10.0	0.1	0.1	0.0	0.0	10.0	0.0	0.0	0.0	00.0	

5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종합평가 결과 : 군지역

구분	지표	지역내부의 개선					주민참여와 민생문제 정도				총	결과
		구입목적	구입내용				참여와 협력					
			지역 복지계획의 이행 여부	노년노년 구별의 실천성	정년노년행복의 평가결과 반영여부	특별 민생 문제 여부	행사에 참여 여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수렴	카카오 지역민생 문제 협력 여부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강령	1-1	20	8	10	6	10	10	6	6	10	83	비중
주요	1-1	20	10	9	9	8	10	9	9	9	93	우수
주요	1-2	20	9	10	9	9	10	8	8	9	83	우수
개발	1-1	18	8	9	7	9	8	7	7	8	81	비중
개발	1-2	19	10	9	9	9	10	10	10	9	96	우수
주요	1-3	18	10	8	8	8	10	8	8	10	84	비중
주요	1-4	20	10	9	8	9	10	9	10	9	94	우수
개발	1-5	19	10	10	10	10	10	10	10	10	99	우수
평균		19.0	9.3	9.0	8.1	9.0	9.7	8.2	8.6	9.2	90.2	

7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종합평가 결과 : 구지역

구분	지표	지역내부의 개선					주민참여와 민생문제 정도				총	결과
		구입목적	구입내용				참여와 협력					
			지역 복지계획의 이행 여부	노년노년 구별의 실천성	정년노년행복의 평가결과 반영여부	특별 민생 문제 여부	행사에 참여 여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수렴	카카오 지역민생 문제 협력 여부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인생	1-1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우수
인생	1-2	17	8	9	8	9	8	7	8	8	88	비중
거주	1-1	20	10	10	0	10	10	8	8	8	84	비중
개발	1-1	20	10	10	10	10	10	9	10	9	98	우수
주요	1-1	18	10	9	10	10	10	8	10	10	87	우수
개발	1-2	18	10	10	10	10	10	8	10	10	94	우수
개발	1-3	20	10	10	10	10	10	8	10	8	98	우수
거주	1-3	18	10	10	8	8	10	8	10	10	90	우수
주요	1-3	20	10	10	10	8	10	8	10	10	94	우수
주요	1-4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우수
개발	1-4	20	10	10	10	10	10	8	10	10	98	우수
평균		18.8	9.8	9.8	8.7	9.8	9.8	8.2	9.8	9.6	94.0	

8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보편사업 우수지역/ 미흡지역간 비교

구분	배점	우수지역 (n=170)	미흡지역 (n=20)	t값
추진체계 적합성	60	29.46(0.91)	27.09(0.99)	6.26**
추진과정 투입적절성	10	9.78(0.88)	8.74(0.86)	6.05**
추진과정 활동	10	9.78(0.88)	8.80(0.89)	4.86**
추진과정 산출	10	9.70(0.78)	8.60(0.92)	6.81**
목표달성율	20	19.01(1.26)	16.97(2.20)	7.69**
목표달성 예산집행	20	18.80(1.81)	15.78(2.20)	6.44**
총계	100	98.29(8.18)	84.88(6.09)	9.81**

*p < 0.1 ** p < 0.05

9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핵심사업 우수지역/ 미흡지역간 비교

구분	배점	우수지역 (n=136)	미흡지역 (n=33)	t값
추진체계 반영도	10	9.84(0.29)	8.58(1.49)	9.24**
추진과정 투입적절성	10	9.72(0.52)	8.48(1.56)	7.70**
추진과정 활동적절성	10	9.76(0.45)	8.46(1.46)	8.91**
추진과정 산출적절성	10	9.74(0.40)	8.10(1.45)	11.53**
목표달성율	10	9.59(1.27)	7.72(2.13)	6.52**
목표달성 객관성	10	9.70(0.43)	7.87(2.09)	9.41**
목표달성 예산집행	10	9.37(0.95)	7.73(1.91)	7.05**
지역주민 의견수렴	10	9.58(0.57)	7.58(2.23)	9.30**
관련기관 의견수렴	10	9.74(0.40)	7.76(2.14)	10.13**
예산집행	10	9.71(0.46)	7.80(2.16)	9.47**
총계	100	96.74(3.01)	80.09(15.23)	11.93**

*p < 0.1 ** p < 0.05

10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보편사업 시/군/구별 비교

구분	배점	시 (n=56)	군 (n=57)	구 (n=77)	F값
추진체계 적합성	80	29.29(1.61) ^{ab}	28.87(1.48) ^a	29.40(0.98) ^{ab}	2.98 ^{**}
추진과정 투입적절성	10	9.58(0.64) ^a	9.49(0.80) ^a	9.78(0.89) ^{ab}	4.57 ^{**}
추진과정 활동	10	9.74(0.48) ^b	9.51(0.57) ^a	9.78(0.49) ^b	4.54 ^{**}
추진과정 산출	10	9.64(0.80)	9.88(0.81)	9.67(1.15)	1.95
목표달성율	20	18.78(1.80)	18.45(1.48)	18.82(1.72)	0.95
목표달성 예산집행	20	18.01(1.97)	18.50(1.59)	18.86(2.68)	0.89
총계	100	95.20(5.05)	94.20(4.95)	95.78(8.81)	1.78

*p < 0.1 ** p < 0.05

11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 핵심사업 시/군/구별 비교

구분	배점	시 (n=50)	군 (n=42)	구 (n=77)	F값
추진체계 반영도	10	9.74(0.99)	9.48(0.86)	9.59(0.78)	1.47
추진과정 투입적절성	10	9.42(1.17)	9.69(0.88)	9.57(0.88)	0.68
추진과정 활동적절성	10	9.64(1.02)	9.80(0.98)	9.54(0.82)	1.77
추진과정 산출적절성	10	9.81(1.05)	9.19(0.89)	9.42(0.95)	2.14
목표달성율	10	9.25(1.51)	9.01(2.45)	9.82(1.11)	0.49
목표달성 적관성	10	9.68(1.00) ^b	8.90(1.89) ^a	9.89(0.98) ^{ab}	4.29 ^{**}
목표달성 예산집행	10	9.08(1.44)	8.98(1.21)	9.09(1.40)	0.08
지역주민 의견수렴	10	9.57(1.08) ^b	8.78(1.78) ^a	9.18(1.21) ^{ab}	4.27 ^{**}
관련기관 의견수렴	10	9.88(1.08) ^b	8.84(1.77) ^a	9.48(1.00) ^b	5.28 ^{**}
예산집행	10	9.55(1.08) ^b	8.80(1.78) ^a	9.49(0.99) ^b	5.09 ^{**}
총계	100	95.18(9.78) ^b	90.58(11.10) ^a	94.00(8.78) ^b	2.74*

*p < 0.1 ** p < 0.05

12



4.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2)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의 함의

- 평가결과의 신뢰성 결여
 - 평가매뉴얼의 구체성, 객관성 결여
 -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문제 발생
- 자체평가시 평가의 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함

평가매뉴얼상의 평가사업별 명확한 평가근거의 제시가 필요함

보편 사업 평가보다 핵심사업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함

평가의 객관성(주관적 해석 배제, 계량화 및 객관화), 수월성(평가의 용이성 제고), 보편성(평가기준 및 지표의 보편화)의 확보

13



5. 2012년 평가 매뉴얼의 목적과 원칙

1) 2011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지표의 문제점

- 평가지표의 자의적 판단 문제
- 평가지표 해석의 어려움
- 시행결과 작성의 불필요한 서식으로 업무 비효율성 유발

2) 평가 매뉴얼 개발의 목적

- 평가지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편, 용이성 제고
- 평가지표가 측정가능하도록 명확성 및 객관성 유지
- 시행결과 서식의 단순화로 평가업무의 효율성 증진
- 평가결과 활용으로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

14



5. 2012년 평가 매뉴얼의 목적과 원칙

3) 평가매뉴얼 개발 원칙

- 수월성
 - 매뉴얼을 가능하면 쉽게 만들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의 용이성 제고
- 보편성
 - 매뉴얼의 해석에 있어 보는 사람이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보편성 유지
- 객관성
 - 평가지표가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량화, 객관화 하도록 평가지표 구성
- 연속성
 - 본 매뉴얼을 수립함에 있어 2011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지표 구성과 내용의 일부 수정 및 보완

15



6. 2011년 지표와 2012년 지표 구조 및 내용의 변화

1) 2012년 평가지표 구조와 형식의 변화 (표1)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지표명		세무평가지표내용 나열	지표의 특성을 함축한 지표명 부여	지표의 명목화
지표수		25	21	시행지표 : 9 → 8 보편사업 : 6 → 5 지역사업 : 10 → 8
평가분야	시행지표수명	8명역(사업목적, 사업내용, 참여와 협력)	각종	
	보편(원안)	4명역(우권제계, 우권과정, 사업목표 달성정도, 이산김영선역)	2명역(우권과정, 사업목표 달성정도)	우권제계는 모호하여 삭제
	지역(핵심)	6명역(우권제계, 우권과정, 사업목표 달성정도, 이산김영선역, 참여와 협력)	8명역(우권과정, 사업목표 달성정도, 참여와 협력)	이산김영선역은 사업목표 달성정도에 포함
용어		시행지표용어	시행지표수명분야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함

15

6. 2011년 지표와 2012년 지표 비교

1) 2012년 평가지표 구조와 형식의 변화 (표2)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점수부여방식	5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종간 점수자 4점 (최우수 20, 우수 18, 보통 12, 미흡 5, 매우미흡 5) 종간 점수자2점 (최우수 10, 우수 8, 보통 5, 미흡 4, 매우미흡 2)	5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단계(최우수, 보통, 매우 미흡) 2단계(최우수, 매우 미흡) 종간 점수자2점 (최우수 20, 우수 18, 보통 18, 미흡 14, 매우미흡 12) 종간 점수자1점 (최우수 10, 우수 8, 보통 5, 미흡 7, 매우미흡 8)	단계간 세분화하고, 매우 미흡 점수단 최우수점수의 80% 수반으로 조정
지표평가자료	없음	각 분량마다 신설	지표의 직관화, 구체화 추구 및 세부사업영역가라피 용이
지표구분	평가지표구분없음	맞과잇, 숫자표 지표구분	지표의 명확화
평가분야부도화	없음	시행계획수립분야 : 각 보편(일반)사업 : 윤 지역(핵심)사업 : 병	평가분야에 필기하여 명확화
가중치	시행계획수립 40% 보편(일반)사업 20% 지역(핵심)사업 40%	과중	일관성유지

17

6. 2011년 지표와 2012년 지표 비교

2) 2012년 평가지표 내용의 변화 (표3)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평가분야	시행계획수립 7.주민의견수렴정도 8.관련기관의견수렴정도 9.민관협력정도	C8.주민의견수렴정도 8번 삭제 C4.민관협력정도(내용변경)	8번과9번이 중복됨 C8에서 포함
	보편(일반) 1.우권제계여부 6.예산집행정도	1번삭제 B2-예산집행의충원성(내용변경)	1번 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재정, 인력, 조직, 서비스 및 기술)에 걸맞은 우권제계도 마련했는지'가 우상격 B2는 2012년 사업에 걸맞은 예산이 사업규모에 맞는지로 내용변경
	지역(핵심) 1.우권제계여부 9.민관의견수렴정도	1번삭제 9번삭제 C1외견수렴정도	위 1번 내용과 동일 9번은 C1에 포함(내용이 동일)

18



6. 2011년 지표와 2012년 지표 비교

2) 2012년 평가지표 내용의 변화 (표4)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제1장 제12차 지역사회복지사업시행계획 평가개요	제1회 추진리포트 평가	구체적 작성방법 없음	작성 이시 본양 용용 지시	작성 안내 구체화
제2회 평가개요	작성 안내란 지시		작성내용 구조화 및 표 지시(이시제시)	해당항목의 중요성 추구
제3회 평가결과	총점 기재 없음		총점용 분야별로 기재하도록 신설	총괄표의 가능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2회 사업시행결과분야	코드번호 A+1	가-1으로 변경 사업코드의 의미 설명	평가지표의 앞다섯과 구분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제1회 000분야	각 사업마다 평가단 A41장으로 기존	사업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항수 기재	작성 내용의 단순화
	3. 사업별시행결과	사업목적 중 기준방법 모두	사업목적 본양, 기준방법 이시 지시	시행계획의 명확화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회 종합평가	계획단 지시	이시제시	종합평가에 중요성
	제2회 분야별 발전방향	작성 필한 있음	작성표, 본양, 이시 지시	발전방향에 중요성 및 구체화
세부평가지표	없음		21개 지표마다 신설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내용, 지표 핵심,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세분화한 통해 지표평가내용의 구체화
평가항목명	평가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산출 방식은 평가항목으로 지시	관제세부사업에서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평가

13



7. 2012년 평가지표

1) 시행계획 분야 지표 비교

평가 기준	평가 영역	2011년		2012년	
		지표	비점	지표	비점
1. 계획 내용의 충실성	사업 목적	1. 욕구조사의 연차별계획 반영 여부	20	A1 계획수립과정의 합리성	20
		2. 지역복지계획과 연계 여부	10	B1 계획의 연계성	10
	사업 내용	3. 세부사업의 연계성	10	B2 계획의 논리성	10
		4. 건전도 평가결과 반영여부	10	B3 평가반영정도	10
2. 수단 참여와 협력	참여와 협력	5. 환경변화 대응성	10	C1 환경변화 대응성	10
		6. 협의체 심의 및 과정적 특성	10	C2 심의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7. 수단의견수렴정도	10	C3 의견수렴정도	10
		8. 관련기관의 견수렴정도	10	삭제(08에 포함)	-
		9. 민관협력정도	10	C4 민관협력정도(내용변경)	10
계			100		100

20



7. 2012년 평가지표

2) 보편사업 분야

평가 기준	2011년			2012년		
	평가영역	지표	비점	평가영역	지표	비점
1.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체제	1. 추진체제 여부	30	A. 추진과정	삭제: 너무 추상적	-
		추진과정	2. 주민의 적절성		10	A1 주민의 적절성
	3. 활동의 적절성		10		A2 활동의 적절성	20
	4. 산출의 적절성		10		A3 산출의 적절성	20
2. 시행결과 목표달성정도	사업목표달성정도	5. 목적달성율	20	B. 사업목표달성정도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20
	예산집행실적	6. 예산집행정도	20		B2 예산집행의 충실성 (내용변경)	20
계			100	계		100

21



7. 2012년 평가지표

3) 지역(핵심)사업 분야

평가 기준	2011년			2012년		
	평가영역	지표	비점	평가영역	지표	비점
1.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체제	1. 추진체제 여부	10	A. 추진과정	삭제: 너무 추상적	-
		추진과정	2. 주민의 적절성		10	A1 주민의 적절성
	3. 활동의 적절성		10		A2 활동의 적절성	10
	4. 산출의 적절성		10		A3 산출의 적절성	10
2. 시행결과 목표달성정도	사업목표달성정도	5. 성과 목적 달성율	10	B. 사업목표달성정도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10
	예산집행실적	6. 목표 중의 이행성	10		B2 목적의 명확성	10
3. 주민참여와 협력정도	참여와 협력	7. 예산집행정도	20	C. 참여와 협력	B3 예산집행의 충실성 (내용변경)	10
		8. 주민의견수렴정도	10		C1 의견수렴정도	20
		9. 민관협력수렴정도	10		삭제: OI에 포함	-
			10. 민관협력정도	10	C2 민관협력정도 (내용변경)	20
계			100	계		100

22



7. 2012년 평가지표

4) 세부평가지표의 신설

- 2011년의 경우, 각 지표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자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지표마다 세부지표 마련
- 세부평가지표는 시행계획분야, 보편(일반)사업, 지역(핵심)사업별로 제시함
- 각 지표마다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지표해설, 평가자료 제시

23



7. 2012년 평가지표(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1. 계획내용의 충실성	비율																		
평가영역	A 사업목적	20																		
평가지표	A1 계획수행이행의 합리성																			
평가내용	<p>· 평가방법</p> <p>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상 ‘보편적 시행 계획’ 외 추진리포트 복지육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개론가 의견, 지역 연도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리포트 작성되었는지 정도를 판단</p> <p>· 산출방법</p> <p>추진리포트에 복지육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지역 연도 등 관련자료 근거에 따라 작성된 사업명 수 $\times 100 \div$ 전체 사업명 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등급</th> <th>연차별 기준 사업명 수</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우수</td> <td>80% 이상</td> <td>20</td> </tr> <tr> <td>보통</td> <td>70~79%</td> <td>18</td> </tr> <tr> <td>보통</td> <td>60~6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50~59%</td> <td>14</td> </tr> <tr> <td>최저미흡</td> <td>5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연차별 기준 사업명 수	점수	우수	80% 이상	20	보통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최저미흡	50% 미만	12
등급	연차별 기준 사업명 수	점수																		
우수	80% 이상	20																		
보통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최저미흡	50% 미만	12																		
지표해설	연차별 계획서 상에 있는 사업에서 추진리포트 부분에 복지육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지역 연도 등 하나라도 근거에 따라 작성된 사업명 개수가 전체 사업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24



7. 2012년 평가지표

5) 평가점수 환산 방법 및 등간 점수 부여

구분 분야	2011년	2012년		
	적용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적용점수
시정계획수립	시정계획총량의 총점×4	100	100	환산점수×4
보편(일반)사업	노점수+사업개수×2	노점수	100(노점수+사업개수)	환산점수×2
지역(특성)사업	노점수+사업개수×4	노점수	100(노점수+사업개수)	환산점수×4
총점	1000		500	1000

구분	2011년	2012년
종간	5단계	5단계, 3단계, 2단계
종간 점수	4점 (최우수20, 우수18, 보강12, 미흡8, 매우미흡6)	2점 (최우수20, 우수18, 보강18, 미흡14, 매우미흡12)
	2점 (최우수10, 우수8, 보강8, 미흡4, 매우미흡2)	1점 (최우수10, 우수8, 보강8, 미흡7, 매우미흡6)

25



8. 2012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안)

■ 매뉴얼 구성

- 제1장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합체사업계획은 평가 개요
 - 제1과 추진배경 및 결과
 - 제2과 평가 개요
 - 제3과 평가 결과
- 제2장 2012년 연합체 사업계획은 평가 시행결과
 - 제1과 사업계획은분야
 - 1. 2012년 시정계획 점수
 - 2. 시정계획 세부점수
 - 제2과 사전 사업결과 분야
 - 1. 보편(일반)사업 점수
 - 2. 지역(특성)사업 점수
 - 제3과 분야별 사업계획은 시행 결과
 - 제1과 000분야
 - 제2과 000분야
 - 제3과 000분야
- 제4장 2012년 사업계획은 시행결과 평가
 - 제1과 종합평가
 - 제2과 분야별 발전 방향

26



9.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제언

- 1) 평가를 고려한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 연차별계획 수립 매뉴얼을 평가매뉴얼과 연동하여 평가의 목적달성 및 과정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
- 2)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객관성 제고
- 3) 연차별 시행계획분야의 평가가중치를 지역(핵심)사업에 높게 두는 방향 고려
 - 현재 각 분야별 비중은 시행계획수립분야 40%, 보편사업분야 20%, 지역사업분야 40%인데, 이것을 20%, 30%, 50%의 비중을 두어 지역사업분야 강화
- 4) 평가수행의 광역시도 역할 강화
 - 시군구 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의 지역화

27



감사합니다.

※ 이 매뉴얼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안)

O. 매뉴얼에 앞서(목차안내, 표지 등)

1. 시행결과 및 평가 목차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및 평가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장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 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평가 개요

제3절 평가 접수

제2장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1절 시행계획수립분야

1. 2012년 시행계획 접수
2. 시행계획 세부 접수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1. 보편(일반)사업 접수
2. 지역(핵심)사업 접수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제1절 000분야

제2절 000분야

제3절 000분야

제4장 2012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분야별 발전 방향

부록-세부평가지표

2. 시행결과 및 평가 보고서 양식

시·도에 제출하는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음.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표지>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〇〇〇(시·군·구)

<제출문>

제 출 문

OO시장(도지사) 귀하

OOO(시·군·구)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O. O.

(시장·군수·구청장)

OOO

<심의결과서>

심 의 결 과 서

OOO(시·군·구)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심의함.

2013. O. O.

OOO(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차>

목 차

제1장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평가 개요	
제3절 평가 점수	
제2장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1절 시행계획수립분야	
1. 2012년 시행계획수립 점수	
2. 시행계획 세부 점수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1. 보편(일반)사업 점수	
2. 지역(핵심)사업 점수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제1절 000분야	
제2절 000분야	
제3절 000분야	
제4장 2012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분야별 발전 방향	
부록-세부평가지표	

제1장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예)

2010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문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57%였음.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 56%가 노인문제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함. 이에 따라 2012년 연차별 계획에는 노인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으며.....

【작성안내】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를 자세히 기술. 즉 지역현황, 지역욕구조사, 지역 언론, 전문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 합리적, 개조식으로 기술. 분량은 A4 1장 정도

제2절 평가개요

(예)

구분	내용
평가주체	지자체-평가 자료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평가위원구성, 전문가-평가지표검토,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평가사업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평가지기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평가방법	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검토 2. 관련자에게 질의 및 응답 3. 관련 서류 검토 4. 현장 확인

【작성안내】

1. 평가 주체 :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용역참여기관 등이 참여하였다면 그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2.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를 기술
3. 평가 방법 : 평가 주체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제시. 서류평가, 현장평가,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술

제3절 평가점수

점수 공식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갑)×4	보편(일반)사업 점수(을)×2	지역(핵심)사업 점수(병)×4	평가점수
점수				

【작성안내】

1. 평가점수는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최종 점수이며, 총점은 1000점
2. 시행계획분야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것이며 40%, 보편(일반)사업은 20%, 지역(핵심)사업은 40%의 비중을 두어 계산

제2장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제1절 시행계획수립 분야

1. 2012년 시행계획수립 점수

계획내용의 충실성	주민참여와 협력	점수(갑)

【작성안내】

2012년 시행계획 점수는 시행계획에서 얻어진 점수를 기입하는데, 분야 점수 기입 아래 표에서 얻어진 점수를 영역별로 기입

2. 시행계획수립 세부 점수

분야	평가영역	지표	배점	점수(갑)
1. 계획내용의 충실성	A 사업목적	A1 계획의 충실성	20	
		B 사업내용	B1 계획의 연계성	10
	B2 계획의 논리성		10	
	B3 평가반영정도		10	
2. 주민참여와 협력	C 참여와 협력	C1 환경변화 대응성	10	
		C2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C3 의견수렴정도	10	
		C4 민관협력정도	10	
계			100	

【작성안내】

1. 지표의 점수는 부록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지표를 보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 기입
2. 점수는 세부평가지표를 보면서 평가내용에 있는 해당 점수 기입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1. 보편(일반)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사업명	점수
기초생활	가-1-1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가-1-2		
	가-1-3		
노인	가-2-1		
점수(을)			

【작성안내】

1. '분야'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상별 분야를 기술
2. '사업코드' 중 '가'는 보편(일반)사업 의미, 첫 번째 숫자 '1'은 사업분야 중 첫 번째 사업 (여기서는 기초생활), 두 번째 숫자 '1'은 첫 번째 사업분야 중 첫 번째 세부사업
3. '점수'는 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서 얻어진 사업별 점수 기입
4. '점수(을)'는 보편(일반)사업에 얻어진 모든 점수를 사업개수로 나눈 점수를 의미(Σ 점수÷사업개수). 이 점수가 최종 점수에 반영

2. 지역(핵심)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사업명	점수
기초생활	나-1-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	
	나-1-2		
노인	나-2-1		
	나-2-2		
.....			
점수(병)			

【작성안내】

1. '분야'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상별 분야를 기술
2. '사업코드' 중 '나'는 지역(핵심)사업 의미, 번째 숫자 '1'은 사업분야 중 첫 번째 사업 (여기서는 기초생활), 두 번째 숫자 '1'은 첫 번째 사업분야 중 첫 번째 세부사업
3. 점수는 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에서 얻어진 점수 기입
4. 점수(병)는 지역(핵심)사업에 얻어진 모든 점수를 사업개수로 나눈 점수를 의미(Σ 점수÷사업개수). 이 점수가 최종 점수에 반영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제1절 ○○○ 분야

1. 2012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정도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B2 예산집행의 충실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가-1-1						
가-1-2						

【작성안내】

1. 각 코드에 맞는 사업에 대해 지표 하나 하나씩 평가하여 우측 빈칸에 그 사업 점수 기입
2. 점수는 부록에 제시한 평가지표를 보면서 각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 기입
3. 여기서 나온 우측의 점수가 제2장 제2절 사업시행결과 분야 보편(일반)사업 점수, 지역(핵심)사업점수
4. 아래 지역(핵심)사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정도			3. 주민참여와 협력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C. 참여와 협력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B2 목적의 명확성	B3 예산 집행의 충실성	C1 의견수렴정도	C2 민관협력여부	
배점	10	10	10	10	10	10	20	20	100
나-1-1									
나-1-2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역

【작성안내】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붙임으로 처리

1) 보편(일반) 사업 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가-1.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교복착용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로 정함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지원
가-○.		
...		

2) 지역(핵심) 사업 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나-1. 독거노인 친구 맺기	친구맺기 사업에 대해 노인들의 거부감 상존	청소년을 활용한 독거노인 정서 지원
나-○.		
...		

3. 사업별 시행 결과

1) 보편(일반)사업 시행 결과

보편(일반)사업명 가1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 사업목적 : OO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O월 기준 000명(00%), 차상위층 000명(0%), 소년소녀가장 OO세대 등 국가의 지원없이 살아가기 힘든 인구가 많음. 이들은 생계비, 생활비, 학비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곤란한 상태임. 따라 이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요구 됨.

- 세부사업수 : 5 개

예시)

세부사업명 가-1-1 :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억원			30억원		
활동	수급자 파악, 생계비 지원			생계비지원		
산출	1200가구			1200가구		
세부사업 가-1-1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평가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정도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B2 예산집행의 충실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근거자료 :

<p>【작성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네모안에 보편(일반)사업의 코드명, 사업명 기술 2. 사업목적을 5줄 이내로 기술, 세부사업의 개수 기입 3. 세부사업은 가-1에서 파생된 사업 4. 세부사업수만큼 가-1-O를 만들고 표 작성 5. 사업평가는 해당하는 세부사업의 각 지표별 평가를 기입 6. 근거자료는 사업명 가-1에 대한 근거자료이며, 사업을 시행한 결과보고서 제목, 관련 공문서 번호 등 기재

세부사업명 가-1-2 : 00000000000000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활동						
산출						
세부사업 가-1-2 : 00000000000000 사업 평가						
평가기준	1.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정도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의 적절성	B2 예산집행의 충실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근거자료 :

보편(일반)사업명 가-2 :

<p>【작성안내】</p> <p>보편(일반)사업의 수만큼 위의 양식으로 작성</p>
--

2) 지역(핵심)사업 시행 결과

(예시)

사업명 나1 : 방과후 아동 보호시스템 강화

- 사업목적 : OO 지역에는 방과후에 방치되는 아동이 000명으로 파악됨. 방과후 방치로 아동교통사고 00건, 아동대상 범죄 00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심각. 이에 이들을 위한 민·관협력보호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도모의 필요성 제기

성과목적	아동 방과후 방임 문제 50% 감소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실종신고율 전년대비 40% 감소 • 아동 범죄율 전년대비 40% 감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전년대비 50% 증가
자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통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표
자료수집 방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방법 : 경찰청 통계데이터 검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수집 • 자료수집시기 : 2011년 12월
수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실종신고율 전년대비 30% 감소 • 아동 범죄율 전년대비 35% 감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전년대비 70% 증가

- 세부사업 수 : _____ 개

세부사업명 나-1-1 :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활동									
산출									
세부사업 나-1-1 :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사업 평가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와 목표달성정도			3. 주민참여와 협력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C. 참여와 협력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 의 적절성	B2 목적의 명확성	B3 예산 집행의 충실성	C1 의견수렴 정도	C2 민관협 력여부	
배점	10	10	10	10	10	10	20	20	100
점수									

【작성안내】

1. 네모안에 지역(핵심)사업의 코드명, 사업명을 기술
2. 사업목적을 5줄 이내로 기술, 세부사업의 개수 기입
3. 세부사업은 나-1에서 파생된 사업
4. 세부사업수만큼 나-1-O를 만들고 표 작성
4. 사업평가는 해당하는 세부사업의 각 지표별 평가를 기입.
5. 근거자료는 사업명 나-1에 대한 근거자료이며, 사업을 시행한 결과보고서 제목, 관련 공문서 번호 등 기재

세부사업명 나-1-2 : 0000000000000000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활동									
산출									
세부사업 나-1-2 : 0000000000000000 사업평가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2. 시행결과 의 목표달성정도			3. 주민참여와 협력		점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사업목표달성정도			C. 참여와 협력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달성 의 적절성	B2 목적의 명확성	B3 예산 집행의 적절성	C1 의견수렴 정도	C2 민관협 력여부	
배점	10	10	10	10	10	10	20	20	
점수									

- 근거자료 :

지역(핵심)사업명 B-2 :

·
·
·

【작성안내】
지역(핵심)사업의 수만큼 위의 양식으로 작성

제4장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작성안내】

1. 평가 결과 총괄은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 하여 기술
1)시행계획분야는 지표별로 기술
2)보편(일반)사업, 지역(핵심)사업은 우수사업과 미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미흡요인, 우수요인을 적고, 미흡요인에 대한 대안 제시
2. 분야별 평가 결과 현황은 점수화 하여 표로 제시

□ 평가 결과 총괄

- 시행계획분야는 계획의 충실성 OO점, 계획의 연계성 OO점으로..... 총 OO점임. △△△△지표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지표에서 미흡하게 평가됨. 향후 ▽▽▽▽지표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편(일반)사업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분야에서 90점 이상 OO개, 아동복지 OO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분야는 점수가 낮게 나와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책은.....이며 ◇◇◇◇분야가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역(핵심)사업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분야에서 95점 이상 OO개, 아동복지 OO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분야는 점수가 낮게 나와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책은.....이며 ◇◇◇◇분야가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사업을 점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 >분야별 평가 결과 현황

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보육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가족		OOO 복지		OOO 복지	
등급	사업수		사업수	등급	사업수		사업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최우수(95점이상), 우수(90점-94점), 보통(85-89점), 미흡(80-84점) 매우미흡(80점미만)							

□ 예산 집행율

- 2012년에 시행된 OO개 세부시행과제의 예산집행 총액은 OO원이며, 계획(OO원) 대비 집행율은 OO%
OO개 세부추진사업 중 예산사업 OO개(OO%), 비예산사업 OO개(OO%)
- 기초생활보장(OO원), 노인복지(OO원), 보육(OO원) 등 상위 3개 분야의 예산 집행액은 OO원으로 전체 총액의 OO%를 차지
- 예산 집행률이 100% 이상인 분야는 OO분야, OO분야임
- OO개 분야 중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OO분야

<표 >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부문	2012년 최종 예산(A)	2012년 집행 예산(B)	집행률(B/A×100)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여성·가족복지			
OOO 복지			
OOO 복지			
계			

제2절 분야별 발전 방향

【작성안내】

1. 분야별 발전방향은 기초생활, 아동, 노인, 등 사업 분야로 작성
2. 문제점은 시행과정상, 핵심문제를 관련자들과의 회의, 주민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술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발전 방향은 시행시기, 방법(자원동원 등), 장소, 대상 등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에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기술
5. 각 분야 당 A4 1장 분량의 내용으로 작성하되, 표로 작성

○ 기초생활분야

시행과정상 문제	
핵심 문제	
발전방향	
기타	

○ 아동복지분야

시행과정상 문제	
핵심 문제	
발전방향	
기타	

<부록> 세부 평가 지표

1. 시행계획 분야

평가기준	1. 계획내용의 충실성	배점																		
평가영역	A 사업목적	20																		
평가지표	A1 계획수립배경의 합리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상 ‘부문별 시행 계획’의 추진배경에 복지욕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전문가 의견, 지역 언론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배경이 작성되었는지 정도를 판단</p> <p>· 산출방법</p> <p>추진배경에 복지욕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지역 언론 등 하나라도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업명 수의 합 $\times 100 =$ %</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사업명 수의 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80% 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70-79%</td> <td>18</td> </tr> <tr> <td>보통</td> <td>60-6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50-59%</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5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	점수	최우수	80% 이상	20	우수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매우 미흡	50% 미만	12
등급	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	점수																		
최우수	80% 이상	20																		
우수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매우 미흡	50% 미만	12																		
지표해설	<p>· 연차별 계획서 상에 있는 사업에서 추진배경 부분에 복지욕구조사, 자원조사, 지역주민의견, 지역 언론 등 하나라도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업명 개수가 전체 사업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p>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해당사업 목록표																			

평가기준	1. 계획내용의 충실성	배점																		
평가영역	B 사업내용	10																		
평가지표	B1. 계획의 연계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세부목표'와 2012년 연차별 계획의 일치성을 판단</p> <p>· 산출방법</p> <p>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부문별 계획의 세부목표와 2012년 연차별 계획이 일치한 사업명 수의 합 $\times 100 =$ %</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사업명 수의 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80%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70-79%</td> <td>9</td> </tr> <tr> <td>보통</td> <td>60%-69%</td> <td>8</td> </tr> <tr> <td>미흡</td> <td>50-59%</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50%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	점수	최우수	80% 이상	10	우수	70-79%	9	보통	60%-69%	8	미흡	50-59%	7	매우 미흡	50% 미만	6
등급	연차별 계획 사업명 중	점수																		
최우수	80% 이상	10																		
우수	70-79%	9																		
보통	60%-69%	8																		
미흡	50-59%	7																		
매우 미흡	50% 미만	6																		
지표해설	<p>· 2010년에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부문별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세부목표'가 있는데, 그 세부목표와 2012년 연차별 계획이 일치하는지 평가</p>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기준	1. 계획내용의 충실성	배점																		
평가영역	B 사업내용	10																		
평가지표	B2. 계획의 논리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사업이 논리모델에 입각하여 투입, 활동, 산출, 성과가 합리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판단</p> <p>①투입예산이 적절하다 ②활동내용이 적절하다</p> <p>③산출(output)이 합리적이다 ④성과(outcome)가 합리적이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위 4개 중 충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4개 충족</td> <td>10</td> </tr> <tr> <td>우수</td> <td>3개 충족</td> <td>9</td> </tr> <tr> <td>보통</td> <td>2개 충족</td> <td>8</td> </tr> <tr> <td>미흡</td> <td>1개 충족</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해당없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지표해설	<p>· 연차별 시행계획이 논리모델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p> <p>· 예산은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은지, 활동내용이적절한지, 산출(output)이 너무 적거나 과하지 않은지, 성과(outcome)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남는가는 수준인지 판단</p>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기준	1. 계획내용의 충실성	배점									
평가영역	B 사업내용	10									
평가지표	B3. 평가반영 여부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2011년 시행계획을 시행 한 후 평가가 반영되었는지 평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평가반영여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반영함</td> <td>10</td> </tr> <tr> <td>매우 미흡</td> <td>반영못함</td> <td>5</td> </tr> </tbody> </table>		등급	평가반영여부	점수	최우수	반영함	10	매우 미흡	반영못함	5
등급	평가반영여부	점수									
최우수	반영함	10									
매우 미흡	반영못함	5									
지표해설	<p>· 2011년 시행계획을 시행 한 후 평가가 2012년 시행계획 어느 부분이라도 언급되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일부라도 반영되었다면, 최우수로 평가)</p> <p>· 2011년 평가 결과만 있고 반영이 안되었다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p>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기준	2. 주민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10																		
평가지표	C1. 환경변화 대응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 연차별 계획 변경 시 2012년 한 해 동안 다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평가</p> <p>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②사회복지기관 간담회</p> <p>③관련 부서 협의 ④주민의견 청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위 4개 중 충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4개 충족</td> <td>10</td> </tr> <tr> <td>우수</td> <td>3개 충족</td> <td>9</td> </tr> <tr> <td>보통</td> <td>2개 충족</td> <td>8</td> </tr> <tr> <td>미흡</td> <td>1개 충족</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해당없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지표해설	<p>· 2010년에 수립 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후 국가, 사회, 지역의 변화에 따라 2012년 연차별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했는지를 평가</p> <p>· 관련부서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각양의 부서를 의미</p>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기준	2. 주민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20															
평가지표	C2. 심의 및 과정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심의 여부 및 회의 정도 평가</p>																
	<p>C2-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여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심의 여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심의했음</td> <td>10</td> </tr> <tr> <td>심의없음</td> <td>5</td> </tr> </tbody> </table>	심의 여부	점수	심의했음	10	심의없음	5	<p>C2-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연차별계획관련 회의개최 횟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회의 개최 횟수</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0회 이상</td> <td>10</td> </tr> <tr> <td>7-9회</td> <td>9</td> </tr> <tr> <td>4-6회</td> <td>8</td> </tr> <tr> <td>6회 미만</td> <td>7</td> </tr> </tbody> </table>	회의 개최 횟수	점수	10회 이상	10	7-9회	9	4-6회	8	6회 미만
심의 여부	점수																
심의했음	10																
심의없음	5																
회의 개최 횟수	점수																
10회 이상	10																
7-9회	9																
4-6회	8																
6회 미만	7																
지표해설	<p>·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했는지 여부와 이 모든 단체들이 계획을 위한 회의를 몇회 개최했는지 평가</p> <p>· 단, 계획과 무관한 회의는 해당 없음</p>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기준	2. 주민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10																		
평가지표	C3. 의견 수렴 정도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다음의 대상들에게 의견 수렴이나 반영했는지 판단</p> <p>①주민의견청취 ②주민만족도 ③욕구조사 ④관련 단체 의견청취 ⑤관련공무원 의견청취 ⑥전문가 의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위 4개 중 충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4개 충족</td> <td>10</td> </tr> <tr> <td>우수</td> <td>3개 충족</td> <td>9</td> </tr> <tr> <td>보통</td> <td>2개 충족</td> <td>8</td> </tr> <tr> <td>미흡</td> <td>1개 충족</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해당없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등급	위 4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지표해설	<p>·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서를 수립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평가기준	2. 주민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10																		
평가지표	C4. 민관 협력 정도																			
평가내용	<p>· 평가방향 연차별계획 중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정도. 즉, 세부사업 중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 전체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p> <p>· 산출방법</p> $\frac{\text{세부 사업명 중 민관협력 사업명의 개수}}{\text{전체 사업명 수}} \times 100 =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민관협력사업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20%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15-19%</td> <td>9</td> </tr> <tr> <td>보통</td> <td>10-14%</td> <td>8</td> </tr> <tr> <td>미흡</td> <td>5-9%</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5%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민관협력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20% 이상	10	우수	15-19%	9	보통	10-14%	8	미흡	5-9%	7	매우 미흡	5% 미만	6
등급	민관협력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20% 이상	10																		
우수	15-19%	9																		
보통	10-14%	8																		
미흡	5-9%	7																		
매우 미흡	5% 미만	6																		
지표해설	<p>·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보면, 재원을 민관이 공동 투자하거나,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의 정도를 평가</p> <p>·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 전체 중 민관협력사업의 정도 평가</p>																			
평가자료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																			

2.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20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투입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투입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18</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p>·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20																		
평가지표	A2. 활동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활동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활동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18</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활동을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등급	계획대비 활동을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p>·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활동의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p> <p>· 만약 활동이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 여(최우수)와 부(매우 미흡)로 평가</p> <p>· 예컨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경우 부지매입했다면 여(최우수), 매입하지 못했다면 부(매우 미흡)로 평가</p> <p>· 활동이 예산, 인원 등이 혼재하다면,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p>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20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산출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산출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18</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p>·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평가기준	2. 시행결과와 목표 달성 정도	배점																		
평가영역	B 사업 목표 달성 정도	20																		
평가지표	B1. 목적 달성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인 바를 달성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목적달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18</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16</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p>·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한 계획서와 결과를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는지 평가</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혹은 협의체 회의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평가기준	2. 시행결과와 목표 달성 정도	배점												
평가영역	B 사업 목표 달성 정도	20												
평가지표	B2. 예산집행의 충실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사업에 집행한 예산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100% 이상 집행</td> <td>20</td> </tr> <tr> <td>보통</td> <td>80-99% 집행</td> <td>16</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 집행</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	점수	최우수	100% 이상 집행	20	보통	80-99% 집행	16	매우 미흡	80% 미만 집행	12
등급	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	점수												
최우수	100% 이상 집행	20												
보통	80-99% 집행	16												
매우 미흡	80% 미만 집행	12												
지표해설	<p>· 시행계획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을 때는 사유를 기술</p> <p>· 중앙정부 요인 등 지자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혹은 협의체 회의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2.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10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투입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투입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9</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8</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p>·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p>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10																		
평가지표	A2. 활동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활동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활동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9</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8</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활동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등급	계획대비 활동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활동의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만약 활동이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 여(최우수)와 부(미흡)로 평가 · 활동이 예산, 인원 등이 혼재하다면,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 · 건물건축 등 인프라 구축이라면 여부로 여(최우수), 부(미흡)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평가기준	1.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10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산출부분에서 2012년 시행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산출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9</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8</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p>· 2012년 분야별 사업 중 세부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p>																			

평가기준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 정도	배점																		
평가영역	B 사업 목표 달성 정도	10																		
평가지표	B1. 목적 달성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시행계획을 시행 한 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목적달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95% 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td> <td>90-94%</td> <td>9</td> </tr> <tr> <td>보통</td> <td>85-89%</td> <td>8</td> </tr> <tr> <td>미흡</td> <td>80-84%</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p>·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한 계획서와 결과를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는지 평가</p>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평가기준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 정도	배점												
평가영역	B 사업 목표 달성 정도	10												
평가지표	B2. 목적의 적절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핵심사업의 사업목적 제시가 명확하게 결과 지향적이고 대상자들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10</td> </tr> <tr> <td>우수</td> <td>9</td> </tr> <tr> <td>보통</td> <td>8</td> </tr> <tr> <td>미흡</td> <td>7</td> </tr> <tr> <td>매우 미흡</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점수	최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등급	점수													
최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지표해설	<p>·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핵심사업의 사업목적 제시가 명확하게 결과 지향적이고 대상자들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p> <p>· 사업목적에 사업방법, 대상자, 지향점 등이 언급되어야 함</p>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평가기준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 정도	배점												
평가영역	B 사업 목표 달성 정도	10												
평가지표	B3. 예산집행의 충실성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사업에 집행한 예산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었는지 판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100% 이상 집행</td> <td>10</td> </tr> <tr> <td>보통</td> <td>80-99% 집행</td> <td>8</td> </tr> <tr> <td>매우 미흡</td> <td>80% 미만 집행</td> <td>6</td> </tr> </tbody> </table>		등급	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	점수	최우수	100% 이상 집행	10	보통	80-99% 집행	8	매우 미흡	80% 미만 집행	6
등급	계획대비 예산 집행정도	점수												
최우수	100% 이상 집행	10												
보통	80-99% 집행	8												
매우 미흡	80% 미만 집행	6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계획한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시행계획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을 때는 사유를 기술 · 중앙정부 요인 등 지자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평가자료	<p>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혹은 협의체 회의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평가기준	3. 주민참여와 협력 정도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20																		
평가지표	C1. 의견 수렴 정도																			
평가내용	<p>· 평가방향</p> <p>2012년 시행계획을 시행하면서 다음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정도를 판단</p> <p>①주민의견청취 ②주민만족도</p> <p>③욕구조사 ④관련 단체 의견청취</p> <p>⑤관련공무원 의견청취 ⑥전문가 의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위 6개 중 충족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4개 이상 충족</td> <td>20</td> </tr> <tr> <td>우수</td> <td>3개 충족</td> <td>18</td> </tr> <tr> <td>보통</td> <td>2개 충족</td> <td>16</td> </tr> <tr> <td>미흡</td> <td>1개 충족</td> <td>14</td> </tr> <tr> <td>매우 미흡</td> <td>해당없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위 6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등급	위 6개 중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지표해설	<p>·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서를 수립했는지 평가</p>																			
평가자료	<p>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있는 자료</p>																			

평가기준	3. 주민참여와 협력 정도	배점									
평가영역	C 참여와 협력	20									
평가지표	C2. 민관 협력 여부										
평가내용	<p>· 평가방향 사업집행 시 예산, 인력, 장비(시설), 공동의사결정, 사업과정에 공동참여 등 민관협력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평가</p> <p>· 산출방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민관협력사업 정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위 항목 중 최소 1가지 충족</td> <td>20</td> </tr> <tr> <td>매우 미흡</td> <td>해당사항없음</td> <td>12</td> </tr> </tbody> </table>		등급	민관협력사업 정도	점수	최우수	위 항목 중 최소 1가지 충족	20	매우 미흡	해당사항없음	12
등급	민관협력사업 정도	점수									
최우수	위 항목 중 최소 1가지 충족	20									
매우 미흡	해당사항없음	12									
지표해설	<p>· 사업집행 시 관이나 민이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는지 평가</p>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회의록 등 증빙자료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2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1(도시형) /

김미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1 (도시형)

김미자(서울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 제1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2005년 8월, 11월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마치고 그 해 12월에 성동구 관내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 후 제1기 중기복지계획을 수립
 - 제1기 중기복지계획 수립 당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생성되지 얼마되지 않아 협의체의 활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 당시 관에서는 민이 중심이 되어 복지계획을 수립하기를 원해 민을 중심으로 좋은 사업의 제안이나 기존 관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 지적 및 비판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민간기관과 단체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됨.
: “우리가 이렇게 만나 본 경험이 거의 없어 서로에 대해 비판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보는 계기가 됨.

- 제2기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 협의체가 1기 중기복지계획 수립 시 민·관이 공동 수립에 대한 초보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과 당시 협의체가 공공과 민간에서 인지도가 알려진 상태여서 수월하게 복지계획 수립이 가능함.
 - 제2기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논의함.
2010년 1월 8일 관에서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 1기 때와 이름만 달리했지만 지도교수가 동일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 (1기 때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계약)
 - 연구용역기관이 성동구 관내에 위치한 대학이고 1기때 중기복지계획을 주도한 지도교수가 2기때도 동일하고 지도교수가 대표협의체가 구성될 당시부터 대표협의체 위원이었다는 점은 성동구 복지계획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
 - 연구진 구성 시 책임연구원인 지도교수와 한양대 측 연구원 1명외에 나머지 2명을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이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명의 연구진이 실무협의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들이어서 좀 더 깊이있는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음.
 - 실무협의체 2명이 연구진에 참여하고 협의체 분과장 7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복지계획을 수립함
 -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조사에서 복지부의 표준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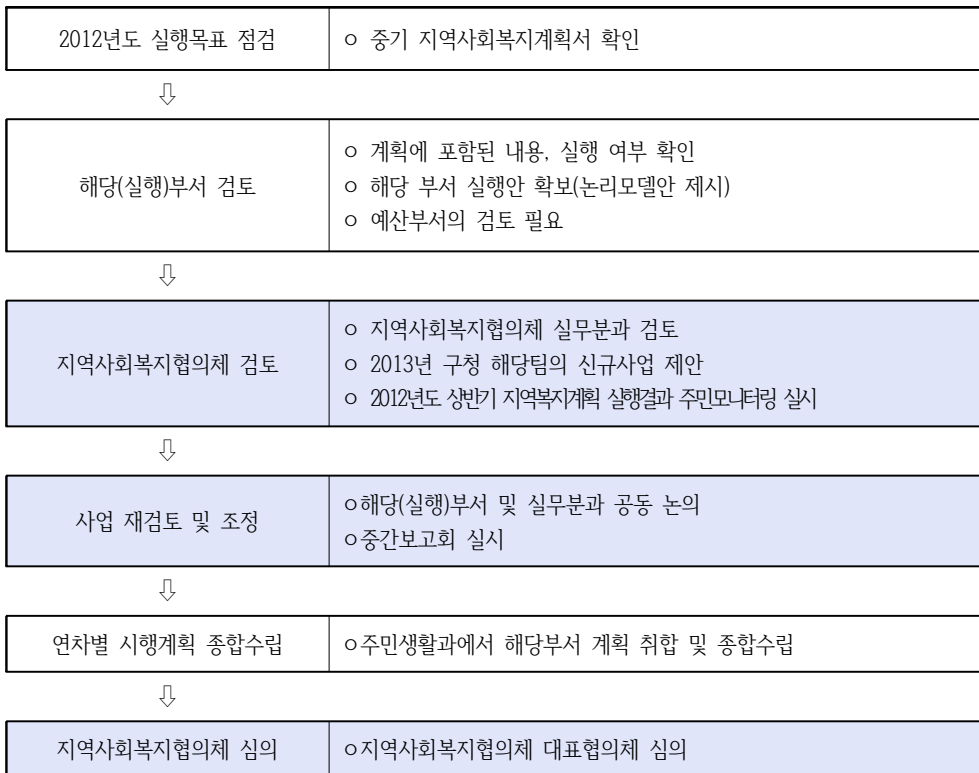
설문지를 응용하여 성동구 실정에 맞는 설문지 검토 작업 실시

: 협의체 분과에서 검토작업 실시, 공공 해당 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 대표협의체를 확인 후 주민 설문조사 실시

- 2명의 연구위원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분과를 통해 새로운 사업 안 제안과 검토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4월말에는 보건-복지 관련 공공팀장 회의를 실시하여 복지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시킴
- 완료된 주민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약 1개월간 수립 작업을 거쳐 작성된 사업안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구 담당부서(서비스연계팀장, 담당공무원)와 연구 용역기관 간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안을 구청의 관련 팀장과 분과장의 회의를 통해 신규사업 안의 타당성 논의 작업을 추진
- 6월 22일 민·관합동 연석회를 거쳐 최종 작업을 한 후 7월 6일 주민공청회와 주민공고 작업을 한 후 총 8개분야의 복지계획을 7월 16일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의결 후 구에 제출.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현황

- 추진방법: 분야별 사업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당 실무분과와 논의 후 계획 수립
- 2013년도 지역복지계획 수립절차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1(도시형)

- 세부추진 일정

단 계	일 정	내 용	추진부서
계획수립	7. 2 ~7. 13	○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목표점검 ○ 2011년도 계획 시행결과 검토 ○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해당부서
	7. 16 ~7. 27	○ 사업부문별 계획수립【1차】 - 핵심사업 선정 -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설정 - 사업부문별 실행방법 수립 - 행정·재정적 자원 및 민간자원 조달계획	• 해당부서
	8. 1 ~8. 31	○ 사업계획 검토 및 신규사업 제안 * 구청 담당팀장 및 주무관 참석 필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
	9. 3 ~9. 6	○ 실무분과 신규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 검토	• 지역사회복지협의 실무협의회(9월회의)
	9. 7 ~9. 14	○ 중간보고회 - 신규 제안사업 필요성 보고 - 지역주민 모니터링 결과발표	• 주민생활과 • 해당부서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회(3차회의)
	10. 1 ~10. 19	○ 사업부문별 계획수립 【2차】	• 해당부서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
	10. 22 ~10. 31	○ 연차별 시행계획 종합수립 - 사업부문별 계획 취합 - 보건의료계획 등 연계	• 주민생활과
종합조정 심 의	11. 1 ~11. 23	○ 각 팀별 종합 조정, 보안 ○ 사업부문별 계획 총평 제출	• 주민생활과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
		○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계획확정 제 출	11. 26 ~11. 30	○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	• 구청장
		○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 서울시

-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인식의 변화	차기년도 성동구청 예산반영을 위한 제안서 (관 중심의 계획수립)	성동구 복지사업 계획서 (민+관 중심의 계획수립)
운영방식	1. 차기년도 복지계획 시행 목표 검토(실무팀) 2. 사업팀 제출자료 검토 및 신규사업 제안 (실무분과) 3. 자료취합 및 대표협의체 심의 4. 서울시 지역복지계획서 제출	* 기존유지+추가사항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 검토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실적 중간 점검 (민간영역 포함)
복지계획 구성	일반사업 + 핵심사업	일반사업 + 핵심사업 + 협력사업(분과사업 등)
제출양식	보건복지부 양식	보건복지부 양식 + 세부 실행계획서 첨부 (제출양식의 적정성 검토)

- 2012년 상반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 주민 모니터링 추진

- 추진기간: 2012. 8. 2.(월) ~ 9. 10.(금)
- 추진대상: 2012년 상반기 지역복지계획 중 8개 분야 사업(민간위탁 사업 중심)
- 모니터링 추진결과
 - 민간위탁 사업 중 5개 사업(급식아동 지원 운영,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보호 교육, 무지개학습봉사단 사업, 밑반찬 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80%이상 만족 의사 표시
 - 한계점: 각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음.
 - 의 의: 향후 구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발점을 마련함.
-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문제점 및 방안
 - 공공분야의 문제점
 - 관심이 없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매년 차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 예산 한계에 따른 신규사업의 추진 어려움
 - 공공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의식 부족: 위험부담
 - 민간의 문제점
 - 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
 - 업무외의 가중업무로 생각
 - 교육 부재
 -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계획에 대한 인식 부재
 - 복지부서 공무원의 교육 필요

- 평가방법의 문제
 - 수치화가 어려움에도 수치와 요구가 있어 이를 대신한 평가방법이 필요
- 지침이 너무 어렵고 명확한 지침 시달.(서식이 어려움)
- 제3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연차별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 복지계획은 민·관의 소통이 가장 중요
 - 복지계획과 협의체 담당 팀의 통합이 필요
 - 비록 예산이 없어 실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관의 공동 논의라는 중요한 경험이 쌓여 향후 커다란 역할이 기대됨
 - 복지부에서는 자치구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사업의 경우 일반/보조사업으로 분류하여 표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지역의 특수사업을 중심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
 - 복지계획 수립과 협의체 사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의식 변화 필요
 - 보조사업이라도 협의체가 문제점 등을 논의하여 공공에 건의를 하고 공공은 검토 후 중앙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협의체는 지역의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공동사업, 행사보다는)
 - 연차별 복지계획 수립을 스스로 수립하게 된다면 중기복지계획도 협의체의 자력으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2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군부형) /
이강미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 (군부형)

이강미(증평군 주민복지실)

I. 제1기 증평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증평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주민의 욕구와 지역내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통해 연차별, 분야별, 주요문제별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증평군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지역사회복지 계획기간

- 제1기 증평군 사회복지계획 : 2007년~2010년(4년)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 증평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으로서 증평지역 주민과 복지자원의 특성에 근거한 복지비전과 방향,전략을 제시함
- 증평지역사회복지계획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종합복지계획임.
- 증평복지- 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획임.
- 증평군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주도하되 사회복지사업실천과 의지가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치로서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여건 형성 마련 계획임

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체 및 수립과정

1) 연구기관 :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연구책임자 : 김창기(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정재욱(청주대학교 행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강신욱(청주 우암 시니어클럽 관장)
- 공동연구자 : 안종태(충북곰두리체육관 관장)

- 공동연구자 : 황혜원(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이화정(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공동연구자 : 양천공(증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공동연구자 : 이종욱(진천군노인복지관 부장)

2) 수립과정

- 증평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18백만원
- 증평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약체결 : 2006.3.30
- 부문별 연구진 구성 및 위촉 : 2006. 3. 10
- 부문별 욕구조사지 구성 및 제작 : 2006. 3.18~4.1
- 욕구조사 조사원 모집 및 교육실시 : 2006. 4.13
- 부문별 욕구조사 실시 : 1:1면접방문조사(2006.4.14~4.28)
- 욕구조사 분석 및 통계 : 2006.4.28~5.5
- 중간보고회 : 2006. 7.21
- 공청회 : 2006. 11.23
- 최종보고회 및 심의 : 2006.11.28.

5.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범위

1) 계획수립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2005년 12월말 현재 증평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함
(1읍 1면 99리, 81.83km)

○ 조사대상 범위

- 사회복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욕구분석

○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은 2006년 8월에 수립하여 2007년 1월~2010.12월까지의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추진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며 2006년 7월에 수립되는 증평보건 계획과 연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전달되도록 함

- 조사기간은 2006년 4월13일부터 4월25일까지 11일간 면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1읍 1면 99리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인구 분포 대비 설문지 배부

2) 부문별 계획수립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보육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 의료, 지역자원개발 및 역량강화

3) 증평균사회복지계획의 기본방향

- 복지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기반조성으로 복지문화도시 추진
-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
-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게 추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6. 증평균 지역사회복지 현황

1) 인구현황

- 증평균의 연령별 인구 단위 백분율을 보면 30~39세의 30대가 17.5%로 가장 많고 20~29세,40~49세대가 15.4%임.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15.9%이며 노인복지법상의 노령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 현재 총 3,487명(11.4%)로 고령화 사회임.

<표1-2-4>증평균 인구 10세 단위백분율 2)

(2005. 12. 31. 현재)

연령별	인구수	백분율(%)	연령별	인구수	백분율(%)
0세-9세	3,889	12.7	60~69세	2,723	9
10세-19세	4,012	13.1	70~79세	1,637	5.3
20세-29세	4,708	15.4	80~89세	442	1.4
30세-39세	5,366	17.5	90~99세	60	0.2
40세-49세	4,713	15.4	100세이상	0	0
50세-59세	3,057	10			

2)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증평균의 기초수급자는 인구대비 4%에 달하며, 등록장애인 수는 인구대비 4.5%로 나타남.

<표1-2-5> 읍면별 복지대상자 현황3)

구분	인구(명)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명)	저소득모부자(가구)	소년소녀(가구)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총 계	30,607	1,146	105	1,381	84	11
증평읍	27,845	992	101	1,179	78	9
도안면	2,762	154	4	202	6	2

3) 사회복지 지역자원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운영되고,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에 무료양로시설이 설치되어 4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증평균사회복지종합계획 33p

3) 증평균사회복지종합계획 34p

<표1-2-7>사회복지관련 시설 4)

(단위 : 개소)

총계	복지관	자활훈련기관	장애인 관련시설	이동관련시설		노인복지 관련시설		여성 관련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생활 시설	보육 시설	아동 센터	경로당	생활 시설	교육 시설	수련관
126	2	1	2	17	2	99	1	1	1

II. 제2기 지역사회인복지계획 수립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배경

1) 대외적 환경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는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9년 1인당 GDP 2만 2695달러이지만, 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6%에 훨씬 못 미치는 8.3%로 OECD 최하위임.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하며, 성장과 복지는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 관계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가는 ‘동반성장’, 으로 전환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류임.
- 세계의 경제적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의 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공급자(시설 등)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비전을 요구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환경적 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한 세계의 공통적 현실 속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으로서 사람이 경쟁력이며, 복지투자하는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현실적인 정책적 변화는 우리나라 또한 매우 중대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음

2) 대내적 환경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4) 증평군사회복지종합계획 35p

- 정부 전체 533개 사업(12조7천억)중 163개 사업(1조1천억)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그 중 보건복지부는 67개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시켜 지역주민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선진화와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상위계획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실행했으며 사회복지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에 제시하여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체계의 복지인프라구축이며 관료제적인 복지체계의 고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와 협력의 기제를 확보하는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의 다양성과 선진화
- 핵가족화와 탈가족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령화의 급진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사회 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증가는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시설의 전문화, 다양화, 표준화를 통해 국가의 지침과 규정에 따른 시설의 표준화와 수혜 대상자가 바라는 서비스의 개별화의 가치를 수용해야 함.
 - 사회복지실천의 품질 구현을 의미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선진화는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요 충족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물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성, 전문성, 즉각성, 예방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권리로서 요구하고 있음.
 - 증평균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내 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계된 인프라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의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 고령화와 저출산의 지역문제, 재정자립도의 향상의 문제 등 지역주민을 위해 공식보호와 비공식보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증평균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적계획의 성격을 가짐 .

2.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실행결과 분석5)

1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2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1기 계획 수립과정 분석	• 용역수주관련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주체로의 협의체의 역량이 부족함.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량 강화
	• 욕구조사관련	대상자별 200CASE정도로 신뢰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제시함.	전문집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항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일반남성의 의식조사 및 다문화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검토 반영
	• 자원조사및 계획수립의 활용관련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의 연계성이 분석미흡	분과외견수렴, 주민외견수렴 및 자문위원구성 및 FGI 운영
	• 사업 개발 과정 관련	연차별시행계획의 유기적연계 부적절.	지역성과 참여성과 실행가능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관협력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계획수립 관련 협의체활동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형식은 갖추었으나 합리적인 기술의 부족.	담당공무원, 협의체간사, 연구원의 실무심화과정운영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지원사항 교육의 충실성
	• 시·도 조정 권고 관련	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복과 누락의 세심한 검토 필요.	계획업무매뉴얼 발간보급에 따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 삭제 첨부하여 분석도출가능.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의견제시 및 최종보고 심의	언론홍보, 홈페이지공지, 카페공지, 실부분과외견수렴, 지역전문가, 지역자문위원, Focus Group Interview운영체계구축
	• 기타	지역의 지리적 경제특성에 대한 구체성, 합리성 미흡	공공자원재정의 한정이거나 경제적 특성에 대비하여 기업의 참여 및 민간자원현황 분석 제시로 거버넌스협력체계구축.

5)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13p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실행 분석6)

1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2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1기 계획 실행 분석	• 사업 실행력 관련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수립여부 및 측정방법에 대한 민관협력논의구축	운영조례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협의체의 사업수행 성과측정.
	•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조성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네트워크협력체계구축
	• 실행과정의 협의체 활동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5, 지역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4, 에 의거 연차별계획을 심의함.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연차별 계획시행의 검토에 따른 실무분과 의견수렴 및 대표협의체의 심의 및 지역 복지계획시행의 위원의 모니터링제 운영
	• 기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 연차별 평가의 진행	지역사회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협의체가 주관 진행.
지역주민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청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욕구조사 및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함.
총괄평가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욕구조사로 수립된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연차별계획시행 및 평가실시에 제시의 어려움이 있음.	충분한 크기의 욕구조사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과정에 있어 노력하며 보편사업과 일반사업의 나열에 있어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예산의 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으로 달성도의 정도를 제시해야 함.

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특징 및 방향

□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용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를 통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가지 차원에서의 방향성을 갖음.

6)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14p

○ 통합성

-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작되는 상위계획 사업들을 고려하여 지역차원에서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실행계획을 수립.

○ 참여성

지역주민의 참여를 과정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함

○ 협력성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공공· 민간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을 함.7)

-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1기 지역복지계획의 분석과 문제방안을 제시하여 1기 용역기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연구자 및 연구원1명을 2기 지역복지계획연구자로 위촉하여 1기 계획과 연계함.
-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계획은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지역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계획을 설정하고 일반남성과 다문화가정의 욕구와 문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과정에 넣어 의식조사를 확립 하고 홍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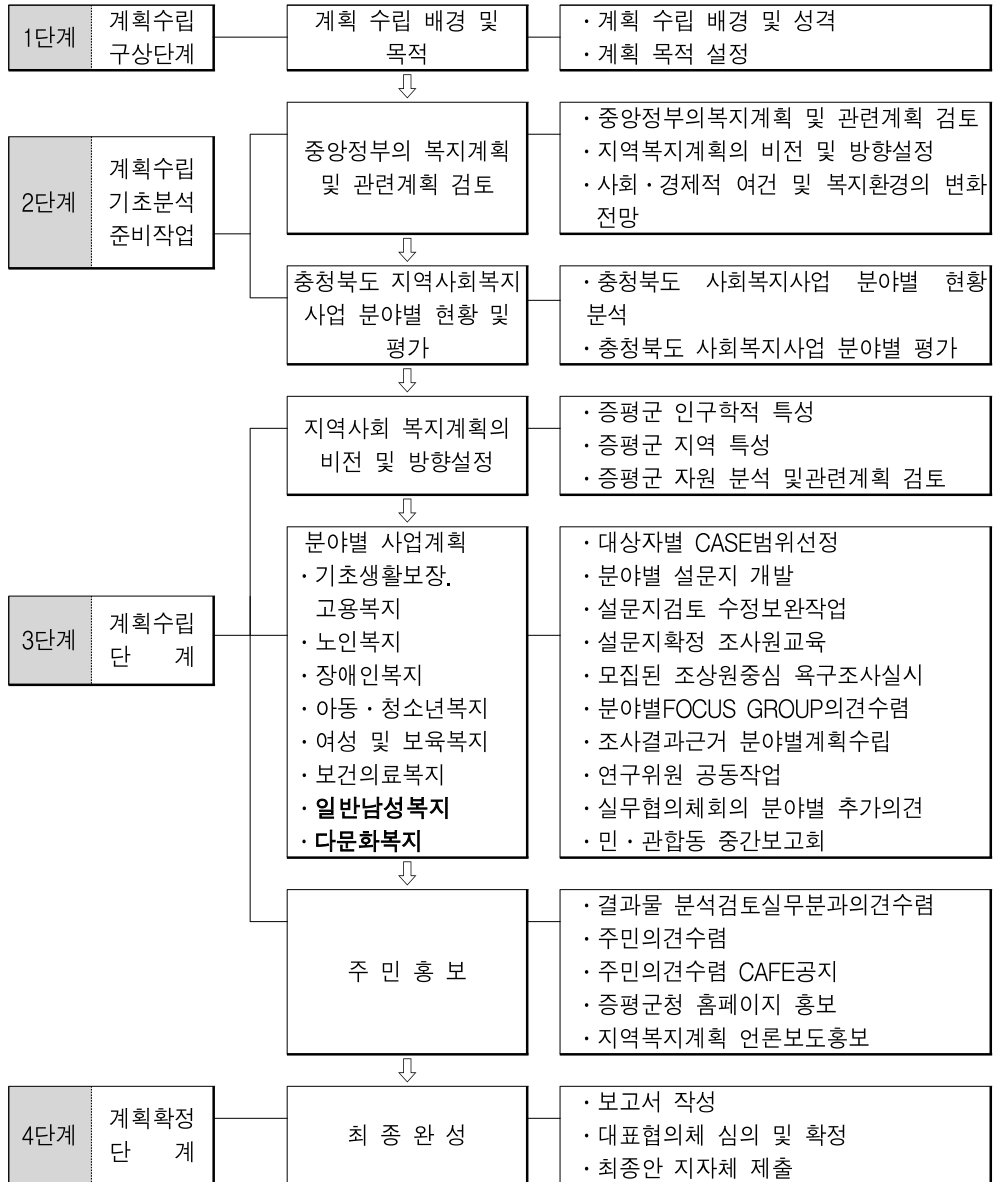
□ 지역주민이 복지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 1기와 달리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계획수립으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반영하여 수립함.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전에 미리(2009년 9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계획에 대한 디자인을 계획함.
- 지역주민이 복지계획수립에 참여하므로 복지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함.
- 욕구조사는 일반남성, 기초생활보장 고용부문, 장애인, 노인, 아동을 둔 학부모, 고학년 아동, 청소년, 여성· 보육 및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조사 실시함.
- 욕구조사, 기관조사 및 예산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중앙 및 충청북도의 상위계획과 계획 실행중에 있는 지역의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본 계획에 적용함.
-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은 각 분야별 실무분과 회의를 거쳐 실무협의체와 민간자문위원, 공공기관의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본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중간보고회

7) 보건복지가족부 (2009.9.).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시·군·구용.

를 개최하고 최종부문별 정책 및 최종 완료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⁸⁾



8)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17p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⁹⁾

계획과정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1단계- 기획 및 지역조사 단계	설문조사, 시군구홈페이지 민원광장분석, 장애를 가진 주요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 접근	○협의체 중심으로 연구원 팀을 구성하고 계획하여 design 결정 ○민·관·학이 협력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공동개발	기획단계에서 중앙 및 충청북도의 복지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연계되도록 증평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방향 수립
2단계- 사업계획 단계	주민의 경험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사업계획에 주민참여, 기존사업 분석등에서 제시된 주민의 욕구나 의견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원들이 사업계획초안 작성, ○기관 및 시설관계자, 실무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실무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실무분야별로 검토.	실무분야와 담당공무원이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중앙 및 시도사업 지침 점검을 통해 사업중복, 사각 등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함
3단계- 심의보고 단계	계획보고서 초안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청회나 공고 등의 형태로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 증평군의 복지정책의 주체가 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함.	실행계획수립 제출

9)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18p

4.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추진: 사업비 20백만원 10)

□ 계획수립 팀 구성



□ 계획수립팀의 역할분장

○ 책임연구원(김현숙 : 대표협의체위원, 충주대학교 교수)

- 복지계획 연구수행 지휘 감독
- 결론도출

○ 공동연구위원

(이화정, 안종태 : 제1기 증평군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및 연구자)

(이장희, 양천공, 최성진, 복영규, 권명희, 문영숙 :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 분야에 대한 자원/욕구조사 관련 설문지 문항 작성
- 분야에 대한 자원/욕구조사 및 1차 자료 분석
- 제1기v계획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제2기 분석 보고서 Design 작성
- 연구자 회의 참석
- 증평군 예산 및 증장기 계획 분석
- 관계공무원 및 관계 단체장과 workshop
- 기타 전체 연구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 연구보조원(김용예: 민간간사)

- 관계기관과의 섭외를 통한 각종자료의 확보
- 자원 및 욕구조사관련 조사원 확보 및 관리
- 연구팀 회의 업무 준비 및 기록
- 연구보고서의 기본 편집 및 인쇄관련 업무
- 연구원의 자료정리 보조
- 연구비용 영수증 및 출납관리

○ 연구보조원(이진성, 김혜정, 공경배)

- 자료정리, 연구보조

○ 연구지원팀(김종관, 최재숙 : 담당공무원)

- 연구팀에 필요한 각종 통계, 예산서 및 분야별 사업 자료 제공
- 연구팀 회의의 참관 및 증평군 의견 제시
- 분야별 연구팀원과 증평군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지역복지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증평지역 : 1개 읍 1개 면 101개 리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14년
 - 계획기간 : 2011 ~ 2014 (4년)
 - 향후 4년 동안 증평군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분야별(일반남성,여성,보육,다문화,노인,장애인,전달체계,재정,지역사회네트워크,정보접근성 등) 추진전략과 사업추진 방향 제시

○ 내용적 범위¹¹⁾

구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평균민 1,920명 - 성인일반남성 280명, - 성인여성 400명, - 초등학교저학년 부모 131명, 초등학교 고학년 147명, - 청소년 212명, - 노인 301명, - 기초자활 99명, - 장애인 248명 - 다문화 102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일반남성</td> <td>19세 이상~64세 이하의 일반남성이 응답</td> </tr> <tr> <td>여성보육</td> <td>19세 이상~64세 이하의 여성이 응답 보육아동 : 취학 전 아동</td> </tr> <tr> <td rowspan="2">아동청소년</td> <td>아동</td> <td>초등학생 1~3학년생은 부모가 응답함</td> </tr> <tr> <td>청소년</td> <td>중·고등학생</td> </tr> <tr> <td>노인</td> <td>65세 이상의 노인</td> </tr> <tr> <td>기초생활보장·고용</td> <td>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td> </tr> <tr> <td>장애인</td> <td>증평균 등록 장애인</td> </tr> <tr> <td>다문화</td> <td>증평균 거주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td> </tr> </table>	일반남성	19세 이상~64세 이하의 일반남성이 응답	여성보육	19세 이상~64세 이하의 여성이 응답 보육아동 : 취학 전 아동	아동청소년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생은 부모가 응답함	청소년	중·고등학생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고용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증평균 등록 장애인	다문화	증평균 거주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일반남성	19세 이상~64세 이하의 일반남성이 응답																
	여성보육	19세 이상~64세 이하의 여성이 응답 보육아동 : 취학 전 아동																
	아동청소년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생은 부모가 응답함															
		청소년	중·고등학생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고용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증평균 등록 장애인																
다문화	증평균 거주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조사기간	2010. 3. 4. ~ 5. 20.																	
대상자 표집방법	할당표집 또는 임의표집																	
자료수집방법	설문지에 자기기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함. 설문지에 자기기입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조사원이 기입함.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 분석																	
조사내용	각 대상자별 설문지는 기본사항, 및 공통사항이 있고, 각 대상자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소득 및 경제, 보건 및 의료 등으로 구분되어있음.																	

11) 구체적인 내용은 『증평군 사회복지 욕구조사 보고서』(부록) 참고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제2기 증평군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일정

시행일	추진내용	참석
2009. 9. 21	▶ 연구팀 구성 논의 - 12명(협의체 위원 8, 외부위원 2, 복지기획담당2)	12명
2009. 9. 28	▶ 지역복지계획(대전) 매뉴얼 교육 참석 - 연구원 2명, 민간간사1명, 공무원 1명	4명
2009. 12. 8	▶ 지역복지계획 연구원 위촉 - 10명(위촉장 수여: 증평군수)	12명
2010.1. 8 ~ 1. 28	▶ 설문지 구성을 위한 연구원 회의 - 4회(매주토요일)	12명
2010. 2. 6	▶ 제1차 워크숍 - 부문별 설문지 확정(다문화 도서관 '나눔')	15명
2010. 2. 8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	20명
2010. 2. 9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개최 - 부문별 설문지 구성에 대한 실무분과별 의견수렴	93명
2010. 2. 23	▶ 부문별 설문조사 책임자 교육 - 10명	25명
2010. 3. ~ 5.	▶ 부문별 설문조사(주민복지욕구 조사) 실시 ▶ 복지관련 기관조사(복지자원 조사) 실시	2,000명
2010. 4. 5 ~ 4. 7	▶ 지역사회복지계획 실무 심화과정 교육 참석 - 부문별 계획작성 매뉴얼 교육 및 실습	2명
2010. 4. 15	▶ 부문별 욕구조사 분석 및 통계작업 시작	5명
2010. 4. 16	▶ 부문별 복지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원 교육	12명
2010. 4. 28 ~ 5. 6	▶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93명
2010. 5	▶ 부문별 복지계획(안) 작성	10명
2010. 5. 29	▶ 제2차 워크숍 - 부문별 복지계획(안) 검토 및 수정	15명
2010. 6. 5	▶ 제3차 워크숍 - 부문별 복지계획(안) 최종검토	15명
2010. 6. 8	▶ 제2기 증평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 공고기간 : 2010. 6. 8 ~ 6. 28	20일 공고
2010. 6. 9	▶ 중간보고회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별 최종의견 수렴	93명
2010. 6. 17	▶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공청회』 - 분야별정책발표 및 주민의견수렴(증평군청 대회의실)	150명
2010. 6. 23	▶ 지역복지계획 대표협의체 심의 - 부문별 복지계획(안) 최종검토(증평군청소회의실)	20명
2010. 6. 30	▶ 최종본 완성 - 총정북도 제출 - 권고 및 조정	-
2010. 7	▶ 최종본 완성 자료집 제작	50부

6. 증평군 지역사회복지 현황

1) 인구 사회적특성

- 증평군의 인구는 전년도 대비 2009년 12월 기준으로 13,326세대 33,164명(충청북도 1,530,032명의 2.2%)
- 증평읍 30,680명, 도안면 2,484명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됨.

증평군 연령별 인구현황 12)

(단위: 호, %)(2009. 12. 31. 현재)

구 분	소 계	거주지		성 별			
		증평읍	도안면	남		여	
합 계	33,164	30,680	2,484	15,770	1,271	14,910	1,213
0-14세	5,867	5,639	228	2,880	108	2,759	120
15-64세	23,076	21,481	1,595	11,470	907	10,011	688
65세이상	4,221	3,560	661	1,420	256	2,140	405

※65세이상 노인은 인구대비 12.7%로 나타남.

2) 수혜대상 인구변화 현황13)

증평군의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는 2006년 1,187명에서 2009년 1,344명으로 3년사이 약 157명 증가로 2009년 수준 수급자 인구가 가장 많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부문으로 총 3,026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2009년 기준, 사회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은 총 1,897명임.

구분	수급자	장애인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2006	719세대 1,187명	1,486명	810명	635명	42세대 106명
2007	730세대 1,213명	1,623명	975명	616명	53세대 136명
2008	783세대 1,289명	1,761명	1,291명	2,385명	51세대 131명
2009	814가구 1,344명	1,897명	1,014명	3,026명	78세대 197명

※ 기초노령연금 : 2008년부터 시행(2008년 이전은 경로연금)

3)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 증평군의 공공자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보았을 때, 증평군은 총 139개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관 3개소, 아동보육시설 19개소, 아동센터 3개소, 노인복지 시설10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자활훈련기관 1개소, 여성 관련시설 1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1개소, 체육시설 3개소, 기타시설 2개소임14)

12)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27p

13)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34p

(단위 : 개소)

15)총계	복지관	자활련기관	장애인 관련 시설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 관련시설		여성 관련 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체육 시설	기타
			생활 시설	보육 시설	아동 센터	경로당	생활 시설	교육 시설	수련관	실내 외시설	
139	3	1	2	19	3	99	5	1	1	3	2

Ⅲ.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평가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수립배경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4)
-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이에 민·관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연도별 사업인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력 제고 및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시행되는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계획(안) 자체평가지침」에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 민간모니터링 위원들이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2로 나누워 평가 진행함.

14) 증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jp.go.kr>. 2010. 05. 25, 제2기 증평군지역복지계획 39p

2.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추진 경과

일 자	구 분
2011. 04. 04	○ 모니터링단 (실무협의체 위원 중 전문위원 위촉)구성 · 총 10명(공공 1명/민간10명)
2011. 04. 21	○ 군의회와 간담회 개최 · 2011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력 제고에 관한 간담회
2011. 06. 30	○ 2011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시행 결과 형성평가 모니터링 · 실무분과 회의 개최 · 형성평가 및 보편사업, 지역사업 평가 · 형성평가 결과내용 담당자에게 발송, 총괄평가 시 반영
2011.8.12~18	○ 모니터링(공공) 및(민간)의견 취합
2011.8.29	○ 대표협의체 모니터링 과정 보고회
2011.12.15	○ 기존매뉴얼에 의한 총괄 평가 실시
2012. 1. 13	○ ‘11연차별지역사회복지 시행평가 교육 참석 · 담당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참석
2012. 2. 14	○ ‘11연차별지역사회복지시행결과 모니터링·평가 교육 · 부문별 담당자 작성법 교육(타지역 협의체 참석, 총 20명)
2012. 2. 17	○ 민관 담당자회의 · 변경매뉴얼 안내, 평가방법논의 및 결정 (담당공무원평가단 5명 참석)
2012. 2. 17~20	○ 분야별 사업 수정 및 보완, 사업조정 · 공무원 담당 작성
2012. 2. 20~23	○ 평가단 검토 · 공무원 담당 검토 후 작성
2012. 2. 27	○ 민관담당자회의 (담당공무원, 평가단 5명 참석) · 시행결과 총괄평가 · 분야별 사업 평가
2012. 2. 28	○ 대표협의체 심의 회의 · 최종 평가서 심의·의결
2012. 2. 29	○ 충청북도 제출 ·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3. 기존 매뉴얼에 의한 2011년 증평균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¹⁶⁾

1)평가기준 및 배점표

-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는 다음 기준으로 평가

16)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평가기준	해당여부 및 점수					
	계획총괄		일반사업		지역사업	
계획내용의 충실성	○	15				
시행과정의 적정성	○	15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15	○	30
사업내용의 명확성					○	10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정도					○	15
계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점수
시행 계획 총괄	계획내용의 충실성	•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계획 간의 논리적 연계성	8
		• 차년도 시행계획 내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7
	시행과정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 여부	5
		• 시행계획 작성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도	5
		• 사업수행에서의 민관협력 정도	5
	일반 사업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성과목적 달성률
핵심 사업	사업내용의 명확성	• 성과목적 제시의 명확성	4
		• 세부사업 투입/활동/산출의 명확한 연결성	3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의 적절성	3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성과목적 달성률	15
		• 계획대비 투입의 적절성	5
		• 계획대비 활동의 적절성	5
		• 계획대비 산출의 적절성	5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정도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정도	7
		• 사업수행 시 민간(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포함)과의 협력정도	8

2) 기존매뉴얼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표

지자체명	증평균		
실무책임자	홍성열	소속 및 직위	증평균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공위원장
자체 평가팀 대표자	김현숙	소속 및 직위	증평균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장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진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군부형)

구 분		자체평가 점수*17)
총 점 (A+B+C)		85
연차별 시행계획 총괄 (A)		167/7=24
일반사업 소계 (B=각 사업별 점수의 합/사업 수)		627/45=14.6
전달체계	A-1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 구축	15
	A-2 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9
	A-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15
	A-4 사회복지관 거점 사례관리	15
	.	
지역사업 소계 (C=각 사업별 점수의 합/사업 수)		797/17=46.8
전달체계	B-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강화	50
	B-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45
	B-3 사회복지박람회	55
	.	
		.

3) 세부평가지표

사업명 A-1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 구축
---------	--------------------

○ 세부사업 수 : 1개

1.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15)

평가 항목	자체 평가
• 사업 목적 달성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대단히 높음 대단히 낮음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V15 12 9 6 3 </div>

※ 종합의견

○ 7개 실무분과가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대표협의체 회의 4회, 실무협의체 회의4회를 통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구축의 목적이 잘 실현됨.

17) 평가팀의 대푯값(평균,최빈값,중앙값 등)을 기재

4) 기존매뉴얼 종합평가 결과

보건의료부분의 사업은 보편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수립에 대한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형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기 중평군지역복지계획상에 있는 지역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보편사업 또한 일부만 시행되고 있음. 사회구조상 증가하는 웰-다잉에 대한 욕구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및 응급구조 구축을 위한 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노인 지원체계구축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중재,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이중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손실을 줄이고, 클라이언트 역시 중복검사나 중복적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우리 지역의 경우 보건 의료연계 부분에 있어 지역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역사회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역사업의 구축 역시 시급하다고 판단됨.

5) 기존매뉴얼 발전방향

사업수행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평가의 준거들이 마련되지 않은 탓인지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타당성 있는 모니터링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 연차별계획 수립 시부터 준거들의 기준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자료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복지모니터링을 위하여 모니터링 위원과 담당공무원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위원의 이해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4. 변경매뉴얼에 의한 2011년 중평군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¹⁸⁾

1) 시행계획 총괄 분야

○ 2011년 총괄 시행결과 개요

	계획내용의 충실성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정도	총점	평균총점
시행계획 총괄분야	담당자: 56/60	40/40	96/100	95/100
	평가위원: 55/60	39/40	94/100	

18)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765(2011.12.22)호에 의거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진계획 수립 및 평가 사례 2(군부형)

○ 평가표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담당자 점 수	평가원 점수
1. 계획 내용의 충실성	사업목적	1.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가 적절히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각 사업의 내용이 지역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10/10	10/10
	사업내용	2. 지역사회복지계획(4개년)과 연계하여 사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분야별 비전과 각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2011년도 시행계획내 2010년도 시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여부)	10/10	10/10
		3. 세부사업의 투입/활동/산출의 명확한 연결성 (사업의 수행주체, 절차, 사업기간,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의 논리모델 구성의 적절성)	10/10	8/10
		4. 시·군·구 계획의 취합, 계획수립과정의 점검을 통해 조정·연계·권고과정 수행 여부	10/10	8/10
		5. 연차별사업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조직 정비 및 전문교육 실시, 시·도비 등의 분담·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8/10	8/10
		6. 자체평가시 시군구 평가내역의 점검과 조정 등 병행 실시 여부	5 /5	5 /5
		7.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 (대응성)	5/5	5 /5
2.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정도	참여와협력	8.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10/10	10/10
		9. 시행계획 작성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도 * 주민참여 유도노력, 참여의 빈도(횟수), 강도(정책반영율), 참여방식의 개방성(위원의 수), 만족도 평가여부를 평가함	10/10	10/10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 사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기관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정도	10/10	10/10
		11.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복지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	10/10	10/10
합 계			96/100	94/100

※ 평가척도 : 매우우수 (10점, 20점), 우수 (8점, 16점), 보통 (6점, 12점), 미흡 (4점, 8점), 매우미흡 (2점, 4점)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 보편사업 총괄 시행결과

분야	사 업 명		시행과정의 적절성 (60)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0)	총점 (100)
	46(116)				
전달체계 6 (8)	A-1.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구축	(1)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구축	56	36	92
	A-2. 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1)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54.5	38	92.5
		.			

○보편 세부사업 시행결과표

사 업 명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총점	평균 총점
A-1.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 구축	담당자: 56/60	36/40	92/100	92 /100
	평가위원: 56/60	36/40	92/100	
A-2. 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55 /60	36 /40	91/100	93 /100
	평가위원: 54 /60	40/40	94/100	

3) 지역사업 총괄 시행결과

분야	사 업 명		시행과정의 적절성 (60)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0)	총점 (100)
	46(116)				
전달체계 6 (8)	A-1.민관협력네트워크의 공급체계구축	(1)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급체계구축	56	36	92
	A-2. 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1)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54.5	38	92.5
		.			

○지역 세부사업 시행결과표

지역 부분	사 업 명		시행과정의 적절성 (40)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30)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정도 (30)	총점 (100)
	18(32)					
전달체계 5 (16)	B-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강화	(1)지역사회복지 자원조사	37.00	26.00	30.00	93.00
		(2)2012년 시행계획수립	39.00	29.00	28.00	96.00
		(3)복지모니터링 운영	40.00	27.00	30.00	97.00

4) 변경매뉴얼 최종 종합평가 결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부문, 25개의 평가기준, 5단계 척도로 이루어짐. 세 가지 부문은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평가, 보편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각 부문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로¹⁹⁾ 최종평가를 내림.
-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최종점수는 878점으로서 '우수'에 해당함. 세 가지 부문 중 총괄평가결과가 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편사업 평가결과가 92점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사업 평가결과가 78점인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분야가 전달체계,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기초고용자활 분야로 5개 분야이었으며, '우수'에 해당하는 분야는 장애인 분야 1개 분야이었음.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로 1개 분야이었음.(보건의료분야는 지역사업 없이 보편사업으로만 구성되었음).
- 부문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문을 살펴보면, 총괄평가에서는 아동청소년, 노인 분야가 보편사업평가에서는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노인분야가, 그리고 지역사업평가에서는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기초고용자활, 장애인 분야가 해당되었음.

<표1 > 최종 평가결과표²⁰⁾

부 분	총괄평가 결과	보편사업 평가결과	지역사업 평가결과	가중치적용 최종점수	평점
계	95.00	92.00	78.00	878.00	우수
전달체계	95.00	93.29	88.88	923.00	매우 우수
여성보육	95.00	82.31	92.60	915.00	매우 우수
아동청소년	96.00	95.06	97.00	962.00	매우 우수
노인	97.00	95.83	80.10	968.00	매우 우수
기초고용자활	94.00	87.93	92.00	930.00	매우 우수
장애인	95.00	92.85	92.00	888.00	우수
보건의료	93.00	95.28	0	563.00	매우 미흡

19) 최종평점 = (시행계획 총괄의 총점×4) + (보편사업 평가의 평균×2) + (지역사업 평가의 평균×4)

20)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31p

5)세부사업 평가 총괄

- 실제 사업수행 결과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평가부문 중 '계획'에 대한 평가인 총괄평가를 제외하고, 실제 수행된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148개 사업 중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매우 우수'는 19개(12.8%) 이었음. 그리고 '우수'는 53개(35.8%), '보통'은 49개(33.1%), '미흡'은 24개(16.2%), '매우 미흡'은 3개(2.0%) 이었음.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2> 세부사업 평가 총괄표²¹⁾

부 문	총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148	19	53	49	24	3
전달체계	23	0	7	13	2	1
여성보육	39	5	14	17	2	1
아동청소년	18	3	8	5	2	0
노인	23	2	13	6	1	1
장애인	14	7	0	1	6	0
기초고용자활	18	0	3	6	9	0
보건의료	13	2	8	1	2	0

3) 성과목표 달성도

- 사업평가에 적용된 25개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성과목표 달성도임. 따라서 하위 평가 기준 중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²²⁾를 살펴보면, 총 148개 사업 중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매우 우수'는 42개(28.4%) 이었음. 그리고 '우수'는 77개(52.0%), '보통'은 25개(16.9%), '미흡'은 1개(0.70%), '매우 미흡'은 3개(2.0%) 이었음.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80%를 넘게 나타나, 실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매우 우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여성보육, 장애인, 아동청소년,보건의료 분야이었으며, 낮은 분야는 전달체계, 노인분야이었음.

21)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32p

22) 평가기준 : 100%(매우우수), 95%~99% (우수), 90%~94% (보통), 70%~89%(미흡), 70% 미만(매우미흡)

<표 3> 세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²³⁾

부 문	총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148	42	77	25	1	3
전달체계	23	2	18	2	0	1
여성보육	39	14	20	5	0	0
아동청소년	18	5	10	3	0	0
노인	23	6	14	2	0	1
장애인	14	7	1	5	1	0
기초고용자활	18	6	5	6	0	1
보건의료	13	2	9	2	0	0

4) 예산집행을

- 2011년 시행계획 전체 예산안은 22,469,000천원 이었으며, 실제 집행 실적은 23,788,000천원으로서, 집행실적율은 105.87%이었음
- 분야별로 100% 이상의 실적율을 나타내는 부문은 전달체계, 여성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분야이었으며, 그 이하의 낮은 실적율을 보인 분야는 아동청소년, 기초고용자활 분야이었음.

<표 > 예산 집행율²⁴⁾

(단위 : 천원)

부문	2011년 최종 예산(A)	2011년 집행 예산(B)	집행률(B/A*100)
계	22,469,900	23,788,000	105.87
전달체계	1,116,000	1,120,000	100.36
여성보육	5,949,500	7,157,500	120.30
아동청소년	799,000	728,000	91.11
노인	5,667,500	5,729,500	101.09
장애인	3,146,000	3,382,000	107.50
기초고용자활	5,283,000	5,143,000	97.35
보건의료	508,900	528,000	103.75

5)발전 방향

- 지역사업은 각 부문별로 증평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23)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33p

24)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34p

대체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증평균의 복지 환경은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욕구가 생겨남으로 이에 차기 연차별 계획 수립시 새로운 복지욕구의 반영을 위한 방법을 찾고 사업내용과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사업 중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의 평가결과를 받은 사업들은 대체로 단 기간에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음. 단기간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기반을 조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변화하는 증평균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각 부문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변화 할 수 있으므로 2기 증평균 지역복지계획, 혹은 연차별 복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과 민의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차별 시행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차별 시행 계획에 반영하였는데 좀 더 넓은 영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 기관별 평가와 연차별시행계획 평가 및 그 외 복지관련 평가의 지표를 일정 부문 표준화하여 평가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결과의 원인을 발견하여 차기 계획수립에 반영함이 필요함.

IV.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평가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배경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시달되는 상위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 유도 필요성 제기
- 이에 민·관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연도별사업인 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력 제고 및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8개 부문(전달체계, 여성보육복지부문, 장애인복지부문, 보건복지연계부문, 노인복지부문, 기초고용부문, 아동청소년복지부문,다문화부문) 복지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 7명의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하여 2012년에 시행되는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계획 자체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중간평가 진행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 경과

일 자	구 분
2012. 02. 04	○ 모니터링단(실무협의체 위원 중 전문위원 위촉)구성 · 총 7명(민간7명)
2012. 02. 21. ~ 2012. 08. 28.	○ 모니터링평가단 간담회 실시(4회) · 모니터링 평가단 매뉴얼 교육 · 형성평가 방법 논의
2012. 06. 21	○ 민관 담당자회의 · 매뉴얼 안내, 평가방법논의 및 결정 (담당공무원, 평가단 2명 참석)
2012. 09. 03. ~ 2012. 09. 28.	○ 2012년 연차별지역사회복지시행 결과 형성평가 모니터링 · 실무분과 회의 개최 · 형성평가 및 보편사업, 지역사업 평가
2012. 09. 06.	○ '12 연차별지역사회복지시행결과 모니터링·평가 교육 · 부분별 담당자 작성법 교육(총 20명)
2012. 08. 01. ~ 2012. 08. 02.	○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새로운 모니터링 방식도입(총 25명)
2012. 09. 24. ~ 2012. 10. 05.	○ 분야별 사업 수정 및 보완, 사업조정 · 분야별 사업 평가 · 부분별 담당공무원과 간담회 실시 · 담당 공무원 및 모니터링 평가단 각각 작성
2012. 10. 08. ~ 2012. 10. 12.	○ 모니터링 평가단 검토 · 분야별 사업 평가 · 공무원과 간담회 실시, 평가서 검토 후 작성
2012. 10. 15.	○'12 연차별지역사회복지시행결과 형성평가모니터링 결과보고 · 중간평가 결과 증평군청(주민복지실) 제출
2012. 10. 20~11.6	○'13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안) ·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모니터링단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조율
2012. 11.15~11.27	○'13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심의 · 실무분과 회의 1차 심의(2012. 11. 15) · 대표협의체 의원에게 계획(안) 문서 발송(2012. 11. 20) ·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 후 충청북도 제출(2012. 11. 27)

V.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평가의 발전방향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4의 의거하여 지역복지계획은 다음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 조직 및 재정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되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제42조(보조금 등)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 국가의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선시행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 국가에서 시달하는 보조금사업처럼 국가가 먼저 만들어서 시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년 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의거 분야별 공모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토 론

강 병 민(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장)

강 대 선(위덕대 교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개발 및 사례 토론

강병민(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연합회장)

제 1기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이후 6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방향 모색과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학술대회가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한다.

1. 매뉴얼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복지계획은 개별사업계획이 아니라 지역복지에 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이므로 쉽고 간결하게 현재의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작성을 하는 부서와 타 부서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수정 매뉴얼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보고서작성에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 높다. 수행인력이나 민간분야 사업비 출처 등도 파악이 쉽지않다. 중장기 복지계획이 매년 지방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과정상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반영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상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야한다.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어느 기관이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올해 사업평가 결과가 아닌, 전년도 평가결과만 반영하는가? 계획관련 일정을 보면, 1~2월에 전년도 평가하고 11월에 차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7월에 상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11월에 차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수립 및 평가단계에 협의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에서는 협의체의 역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의체와 아무런 논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혼자 작성해서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심의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립단계인 시행계획안 취합 후 실무협의체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고 확정단계에서는 반드시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행시기를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복지계획관련 교육 강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부서별 복지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료작성과 취합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복지계획에 관심도 없고 계획 관련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참석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계획의 위상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2회(평가 및 수립기간 전)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당 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및 교육을 시켜야 한다.

계획관련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주요일정>

시기	과제	내용
1월	전년도 평가	간담회(관련부서 담당), 추진실적 취합 후 자체평가
2월		평가(실무협의체) 및 심의(대표협의체), 시도 제출
7월	올해 평가	간담회(관련부서 담당)
8월		올해 중간평가
9월	차년도 계획	계획안작성
10월		의견수렴(실무협의체)
11월		심의(대표협의체), 시도제출

마지막으로 올해 1월 해프닝이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갑자기 복지부에서는 복지계획평가 관련 권역별 교육에 올라더니 평가서식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한 후,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하고 포상한다고 하였다. 일선 공무원들이 문제제기가 심하자 돌연 시범사업으로 변경한 일이 있었다. 무엇이든 서둘러 되는 일이 좋은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2013년 시행계획안은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내년 2월에 진행할 2012년 결과보고서는 어떤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1월의 해프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개발 및 사례 토론

강대선(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 매우 의미있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원고를 발표하신 김미자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도시형의 개념: 작은 공간-다양한 욕구

우선 저는 도시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 도시형 혹은 농촌형 구분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실효성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도시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는 데에는 분명 그 의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따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는 인구구성이 비교적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과 욕구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간의 역동성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마디로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욕구가 만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작은 공간- 다양한 욕구). 이렇듯 도시가 뭔가 다른 것을 가진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측면에서, 자원 또는 기회 또한 역으로 장애 내지 위험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의 의미도 동시에 지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에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도시형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러한 도시적 특성을 어떻게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계획의 모니터링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4년 단위에서부터 1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도시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및 모니터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평가 또는 모니터링의 의미

연차별 계획은 평가의 속성이 강한가 아니면 모니터링의 속성이 강한가를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평가와 모니터링의 엄밀한 구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저는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복지계획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혹은 반향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과산출 및 사업량 달성률로 주로 측정되는 양적 평가 및 이의 단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파급성과 주민의견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평가시각에서보다 좀 더 유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000 프로그램은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삶의 질이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등의 조사문항도 수용되고 측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을 연구자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여, 연구자가 생각하는 연차별 혹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3. 협력형과 압력형 실행전략

연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혹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협력형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공부문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전략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부문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압력전략을 가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협력형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과 충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협력형과 압력형의 실행전략의 균형이 가능한 것인지, 공공부문의 내적 책임성에 의존하는 협력형 원칙에 충실한 대화 중심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을 유지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본 토론자가 밝힌 공공부문에 대한 압력형 전략이 유효한 지에 대하여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3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
박태영

한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박태영(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으로 씀)은 사회복지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가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복지욕구를 표출하고 이를 결집한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들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박태영 편역, 2003).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며, 나아가 여러 실천 방법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살펴보면, 그 지자체의 복지 역량 내지는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계획은 2001년부터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21세기 지방화시대 지역복지계획수립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2).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화 한 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제1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2012년 현재 제2기 2년차 지역복지계획이 실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계획은 그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아직 형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박태영, 2008; 박태영, 2009; 이재완,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즉,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 상의 과제와 수립된 계획의 실천 상의 과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계획 수립 시기 및 기간의 부적절성, 수립주체의 미스 매칭, 주민 참여의 한계성, 지자체 복지관계자의 계획에 대한 인식 부족, 광역지자체의 계획에 대한 소극성, 연차별 계획의 형식성, 계획 평가의 한계성, 관리 중심의 매뉴얼 제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 지역복지계획과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적 요소와 차별적인 요소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복지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II. 한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검토

한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복지계획의 등장 배경과 경험에 대한 사항, 지역복지계획의 법적 근거,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등장배경과 경험

우리나라의 지역복지계획은 2001년부터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는 2005년부터이다.

지역복지계획의 등장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큰 힘으로 작용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일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지역복지계획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게 된 시기가 2005년부터이다. 지역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라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은 지역복지계획을 통해 그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물론 분권교부세 제도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나타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지방분권화라는 정권차원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계획은 지자체의 사회복지계획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서는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보건복지가족부, 2009),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총괄적인 정리와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의 사회복지 확대방안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 및 실천되고 있다.

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주민참여나 민관협력은 일정한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계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변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박태영 편역, 2003). 제1기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지역복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도는 1980년 후반부터이다. 1984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복지계획 이론과 방법’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자주적인 지역복지계획화 시기이다. 제2기는 1990년대로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에 의한 노인보건복지계획이 전체 지자체에 수립되는 법제적 계획화의 시기이다. 제3기는 2000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실시하게 된 참가형 종합계획화 시기이다.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면,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사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역사적 계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大橋謙策,

2004). 첫째는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의 방법으로써 실천된 계보이고, 둘째는 19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과 관련된 계획 계보이고, 셋째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법적 근거에 의한 지자체의 계획 계보이고, 넷째는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가 1983년 법정단체가 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한 지역복지활동계획으로서의 계보이다. 다섯째는 2003년 시행하게 된 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이다. 다섯째의 계보가 등장한 것은 이미 1997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구조개혁에서부터 출발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로는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단위의 복지서비스 이용 촉진과 사회복지사업의 건전한 발달, 주민참여의 촉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계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이 그 동안 계획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의 복지를 총괄하는 것이면서도 민관 협력에 의해, 그리고 이용자를 포함한 주민참여에 의해 수립되고 실천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국의 지역복지계획은 복지의 지역화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복지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중층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획에 대한 경험이 짧고 지자체의 복지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의 계획은 지자체 사회복지계획의 성격이 강하고, 민관협력과 주민참여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한국 지역복지계획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양국의 지역복지계획은 모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3에서 제15조의6까지 지역복지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 제107조(지역복지계획)와 108조(지역복지지원계획)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계획수립의 의무화 여부이다. 한국은 의무화를 취하고 있고, 일본은 내용과 절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임의 사항이다(平野隆之·原田正樹, 2010).

이에 대하여 武川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서 지역복지계획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지역복지의 추진인 이상 시정촌(기초지자체)이 사회복지업무를 방기하지 않는 한 시정촌이 지역복지계획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武川正吾, 2005, p.30).

한국이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실천을 의무화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 수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계획의 의무화는 계획의 형식화 내지는 '붕어빵 계획'화 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분권화라는 큰 맥락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경험여부나 지자체의 관심여부를 떠나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상황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사료된다.

둘째는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한국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획의 평가는 앞에서 검토한 계획 수립의 의무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사업이든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식임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평가이다. 한국의 경우 계획의 의무화에 따른 평가는 계획의 형식화를 실질화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실천 목적에 적합한 평가지표,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광역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계획은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광역지자체의 계획을 '지역복지지원계획'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 및 역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광역지자체의 계획은 기초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실천을 지원한다는 측면은 같지만, 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한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①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②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③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④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⑤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⑥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⑦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일본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법 제107조)은 다음과 같다.

- ①지역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②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 ③지역복지 활동에 있어서 주민 참가의 촉진에 관한 사항

일본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내용(사회복지법 제108조)은 다음과 같다.

- ①시정촌의 지역복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에 관한 사항
- ②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와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③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촉진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일본 지역복지계획 및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社會保障審議會福祉部會, 200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자체 사회복지의 체

계획 내지는 계획화라는 측면과 공급자 중심의 뉘앙스가 강한 반면에 일본은 주민참가의 강조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계획 내용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 계획 수립 및 실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의 한·일간 비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양국 지역복지계획 출발점의 차이와 관련 자료의 한계 등에 기인한다. 여기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일간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식적으로는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면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제별로 하나씩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수립 주체이다. 법적으로 양국 모두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체로는 한국은 지역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이고, 일본의 경우 계획책임위원회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우리나라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일본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의 지역복지협의체는 법적 상설기구이고, 일본의 계획책임위원회는 임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양국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본의 계획책임위원회 위원 구성(牧里每治·野口定久, 2007, p.138)

1. 민생·아동위원대표자
2.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3. 학식경험자
4. 장애인복지관계자
5. 보건·의료관계자
6. 노인보건복지관계자

이외에도 아동복지관계자, 노인클럽대표자, 정내회·자치회대표자, 공모주민, 지자체담당자, 교육관계자, 당사자단체대표자 등의 순임.

둘째는 계획 수립 시기와 기간으로 한국의 경우 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수립 기간도 매뉴얼에서는 약 9개월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6

개월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수립 기간이나 시기를 특정화 하지 않고 있으나 수립 주기는 대체로 5년 단위인 것으로 보이고, 수립 기간은 대체로 1년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계획 수립 및 실천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국의 경우, ①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②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③아울러 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④계획 수립매뉴얼의 방향성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성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일본의 경우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로 주민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 내용 가운데 셋째에 해당하는 '지역복지 활동에 있어서 주민 참가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社會保障審議會福祉部會, 2002).

- ①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NGO법인 등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필요한 지식, 기술의 습득, 활동거점에 대한 지원
 -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공공적 서비스의 연계
- ②문제를 공유화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의식의 향상, 지역복지 추진에의 주체적 참가 촉진
 - 지역주민, 서비스 이용자의 자립
 - 지역의 바람직한 복지체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에 의해 주체적인 생활자,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향상
 - 주민 등의 교류회, 연구회 등의 개최
- ③지역복지를 추진할 인재의 양성
 - 지역복지활동 전문가,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의한 지역조직화 기능의 발휘

위에서 살펴본 것은 형식적 차원의 주민참여이고,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 및 실천에서 주민참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제1기 계획에서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 및 이용자 복지욕구의 양적 조사 중심으로, 전문가 및 복지관계자의 질적 조사(FGI)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민참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태영, 2009).

일본의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①욕구파악 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타 계획의 정보수집, 지역주민간담회, 서비스과제 검토, 지역과제 명확화, 연구회 개최, 관련단체 및 당사자 단체 면담 등의 방법 순으로 나타나 있다. ②주민참여 방식으로는 공모위원으로 참여, 주민간담회 개최에 참가, public comment, 복지 관련단체·당사자 단체·지역대표자와의 간담회, 포럼 등의 개최 등으로 나타나 있다. ③계획 관련 정보공개 방법으로는 흥

보지에 개제,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시설에서 열람, 계획 요약본의 배포, 복지 관련단체·당사자 단체와의 간담회, 주민간담회 등으로 나타나 있다(牧里每治·野口定久, 2007, pp.139-141).

계획 수립 및 실천에서 주민참여는 한국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차원의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참여방식도 획일적인 경향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참여방식의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 공모위원으로 참가, 100인 위원회 구성 등이다.

넷째는 양국의 지역복지계획에서는 공히 지자체의 복지 전반을 모두 계획에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경험,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을 종합화하면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의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수립 및 실천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존 실시해 온 영역별 사회복지 사업을 모아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시킨 지자체 행정 주도의 계획 수준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복지관련 계획 수립 및 실천의 경험과 지역복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역복지계획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총괄적으로 담아내는 계획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동안의 영역별 계획의 모자이크식 짜집기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횡축에 대한 고려, 시정촌 하부 권역단위의 계획화 등)들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계획의 종합화와 주민참여는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武川正吾, 2006, p.103). 계획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상향식 접근보다 하향식 접근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 경험을 축적하여 참여 역량을 높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이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계획의 종합화보다 주민참여를 우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는 계획 수립 및 실천의 매뉴얼에 관한 것이다. 양국 모두 지역복지계획의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매우 상세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매우 거칠게 큰 틀 차원의 사항들만을 후생노동성 산하의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에서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약과 같다. 계획 수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뉴얼이 거칠게 제공되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제공되면 계획 수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그 지자체 산(産) 지역복지계획이 아니라 '붕어빵 계획'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평가주체가 제공하는 매뉴얼이라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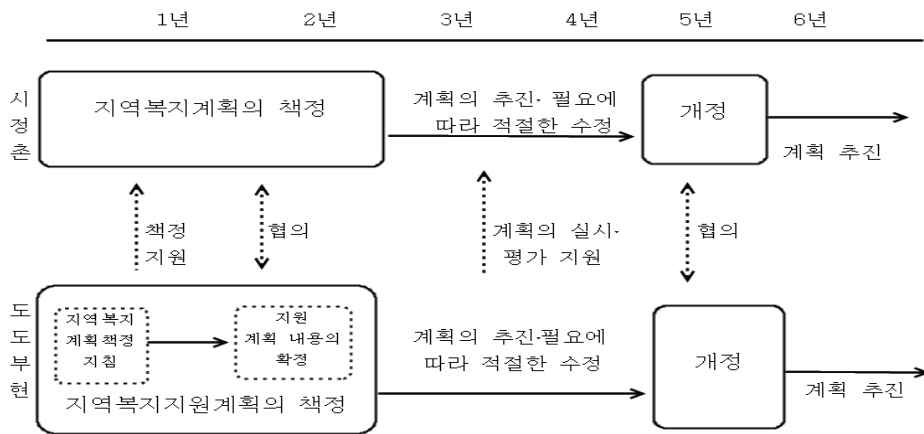
Ⅲ. 시사점

한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에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도 지역복지계획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시도 계획은 법률상 소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적 내용도 시군구 계획 내용과 차별성이 없으며, 실제로 수립된 계획의 내용도 시군구 계획의 종합 및 광역 차원의 독자적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시도 계획은 시군구 계획의 지원계획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의 일본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지지원계획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박태영 편역, 2003).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지지원계획과의 관계>



시도 계획의 내용도 시군구 계획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도 계획의 내용으로는 ①시군구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항, ②시군구와 시도가 협의하여 시군구에서 추진해야하는 사항, ③시도 하부권역(3-4개 시군구) 차원의 복지과제에 관한 사항, ④시도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인재양성 및 연수, 복지권리옹호사업 등) 등으로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태영 편역, 2003).

<일본 지역복지지원계획의 내용>

	사회복지법 제108조			기타:
	1항: 시정촌의 지역복지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2항: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와 자질향상	3항: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추진 및 사회복지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기반정비	· 시정촌이 직접 권 한이나 예산을 갖고 있지 않는 지역복지에 관련된 사업 · 시정촌 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지욕구에 대한 광역적인 대응
A 지역복지 추진 및 지역복지계획의 책정·실행하기 위한 지원	도도부현에 의한 · 지침 책정 · 기술적 지원 · 재정적 지원			
B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협의 하에 시정촌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역복지 추진 사업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도도부현의 지원 (시정촌과의 협의에 의한 시책화)	
C 지역복지 과제에 관련된 광역권에의 지역복지 추진 시책이나 사업 실시		· 사회복지인재센터 · 사회복지연수센터	○지역복지권리옹호 사업 ○고충해결사업 ○제3자 평가사업 ○주민참가의 복지 마을만들기의 기반 구축 (자원봉사·시민활동 센터 등)	○현행 복지시책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복지과제에 대한 대응책 검토·협의 ○도도부현 업무를 시정촌에서 이양하는 과정에의 지원책 (예 : 지적장애, 정신보건복지 등) ○ 주택, 고용, 도시정책 등 사업에의 협력

둘째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실시, 전문가 및 관계자 집단면담, 공청회 및 공고에 의한 의견수렴, 지역복지협의체의 의견수렴, 지자체 종합민원실(인터넷 포함) 민원분석,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분석 및 대기자 명단 분석, NGO의 의견수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계획 내용에서 주민참여 강화방안으로는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 복지이벤트 개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주민 복지교육 강화 등이 있다. 주민참여는 계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평상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박태영, 2009).

지역복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①계획 수립 기간 및 시기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약 6개월 이하의 계획 수립 기간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주민참여를 이뤄나갈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단체

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계획 수립 시기가 일정 정도 겹치게 되어 있어 선거관련법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와 계획 수립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②주민참여는 상당부분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의지와 관련성이 높다.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③주민참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 혹은 타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 시 활용한 주민참여 방법의 제시 등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복지계획 주민좌담회 담당직원 매뉴얼'(日本鶴岡市地域福祉計劃策定Working Group, 2003)과 같은 것을 개발하여 계획 수립관계자에게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자가 경험한 주민간담회 실시, 시민 복지의견 발표회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지역복지계획의 종합화에 대한 것이다. 계획의 내용 내지는 구성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계획은 영역별(중축: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보육 등) 계획의 나열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 영역별 각각의 계획을 지역복지계획이라는 틀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는 계획의 종합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획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횡축, 예를 들면, 일자리(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주거(독거노인, 지역에 자립할 장애인, 자립할 시설 퇴소아동, 모자세대, 노숙자 등), 문화(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권리옹호(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학대아동 및 여성,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획에서 지역적 권역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읍면동 → 시군구 하부 권역(3-4개 읍면동 규모) → 시군구 → 시도 하부 권역(3-4개 시군구 규모) → 시도로 이어지는 지역적 규모에 따른 계획화이다. 시군구 지역복지계획뿐만 아니라 시군구 하부 권역 내지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제3의 분권화'라고 한다(박태영 편역, 2003). 이러한 읍면동 내지는 권역 단위의 계획 수립에 대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능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박태영 외, 2010).

<계획의 매트릭스>



넷째는 계획의 매뉴얼이다. 사실 매뉴얼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는 계획 매뉴얼 안에 이미 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매뉴얼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평가 주체가 제시하는 매뉴얼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추동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나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도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매뉴얼에 대한 버전이 좀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건복지부의 계획 수립매뉴얼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적인 필수사항 중심으로 보다 간단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필수사항뿐만 아니라 선택사항도 포함하고, 복지욕구 파악방법이나 시도의 기본적인 복지데이터 등도 수록하여 제시하면 시군구의 계획 수립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획 수립의 각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박태영, 2008).

다섯째는 계획의 평가이다. 일본에는 계획 평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도 여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牧里每治·野口定久, 2007; 武川正吾,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획 평가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 지자체 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한 적이 없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계획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프로젝트에서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계획 수립 및 실천의 평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계획 수립 시 목표설정의 적절성, 실천한 계획의 효과성, 수립된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의

명확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보조금 지급 연동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의 정당성 등 하나같이 만만찮은 주제들이다.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의지를 추동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자 수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지표'의 향상과 같은 지역사회복지의 포괄적인 상황의 향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복지지표 개발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IV. 결 론

여기서는 한일 지역복지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복지계획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리보다 복지 관련계획에 관한 한 20여년을 앞서가는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을 통하여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시도 계획의 제자리 매김, 계획에서 주민참여 강화방안 강구, 계획의 종합화 및 권역의 계획화, 계획 매뉴얼의 슬림화 등을 다루었다.

한일 양국의 지역복지계획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나 있다. 즉,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지자체 사회복지의 종합화, 계획에서 주민참여 중시 등이다. 이는 앞으로 양국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영역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양국의 지역복지계획을 담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검토, 양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 상황 검토, 지방자치제도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양국 간의 전반적인 차이 고려 등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복지계획에 한정하여 비교한 한계가 있으며, 양국 지역복지계획 제도 자체의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일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사례연구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태영 편역, 2003,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현학사.
- 박태영, 2008,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박태영, 2009,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주민참여방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태영 외, 2010, 제2기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평택복지재단.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이재완, 2009,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계획) 실태와 과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大橋謙策, 2004, “지역복지계획과 Community Social Work”, 지역복지계획의 실천 방안,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社會保障審議會福祉部會(2002), 市町村地域福祉計劃及び都道府縣地域福祉支援計劃策定指針の在り方について(一人ひとりの地域住民への訴え).
- 武川正吾, 2005, 地域福祉計劃-ガバナンス時代の社會福祉計劃-, 有斐閣アルマ.
- 武川正吾, 2006, 地域福祉の主流化, 法律文化社.
- 牧里每治·野口定久, 2007, 協働と參加の地域福祉計劃-福祉コミュニティの形成に向けて-, ミネルヴァ書房.
- 平野隆之·原田正樹, 2010, 地域福祉の展開, 放送大學教育振興會.
- 日本鶴岡市地域福祉計劃策定Working Group, 2003, 地域福祉計劃地域住民座談會擔當職員マニュアル.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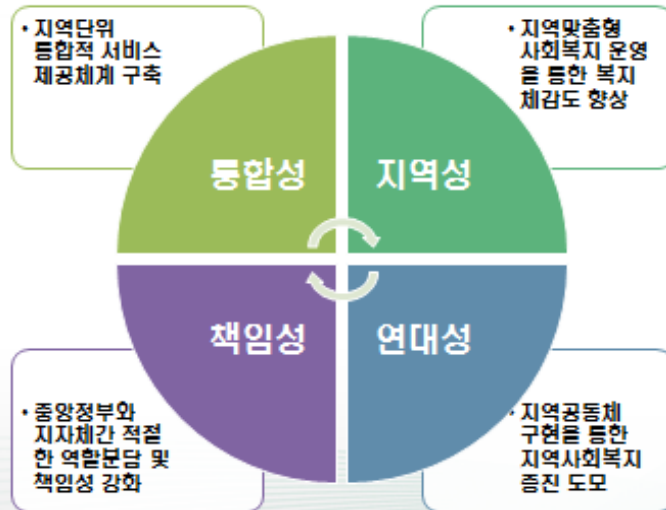
주제발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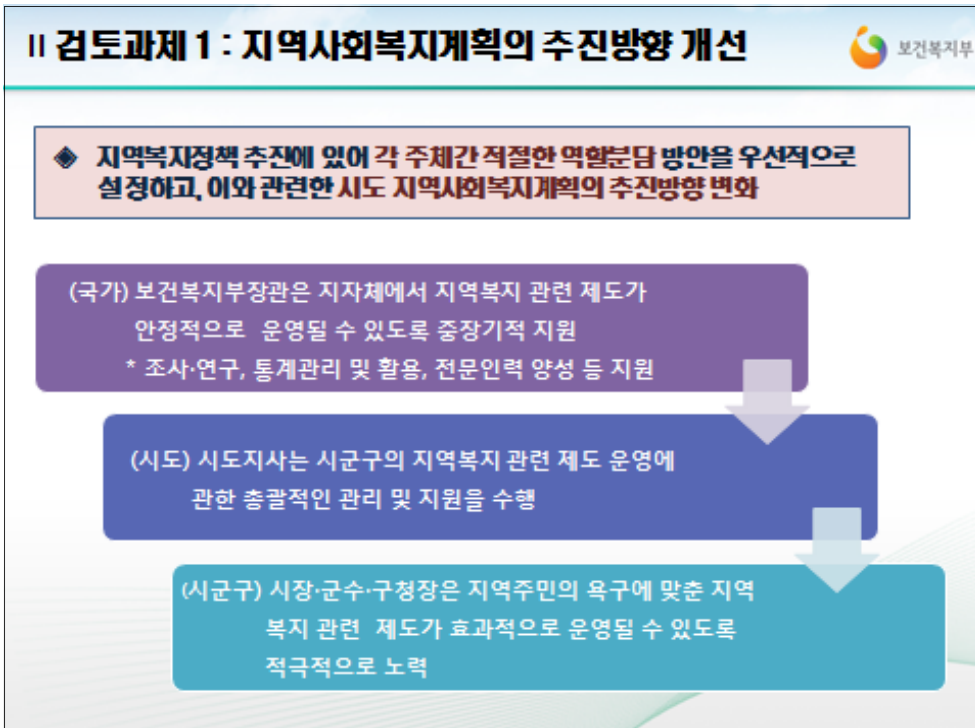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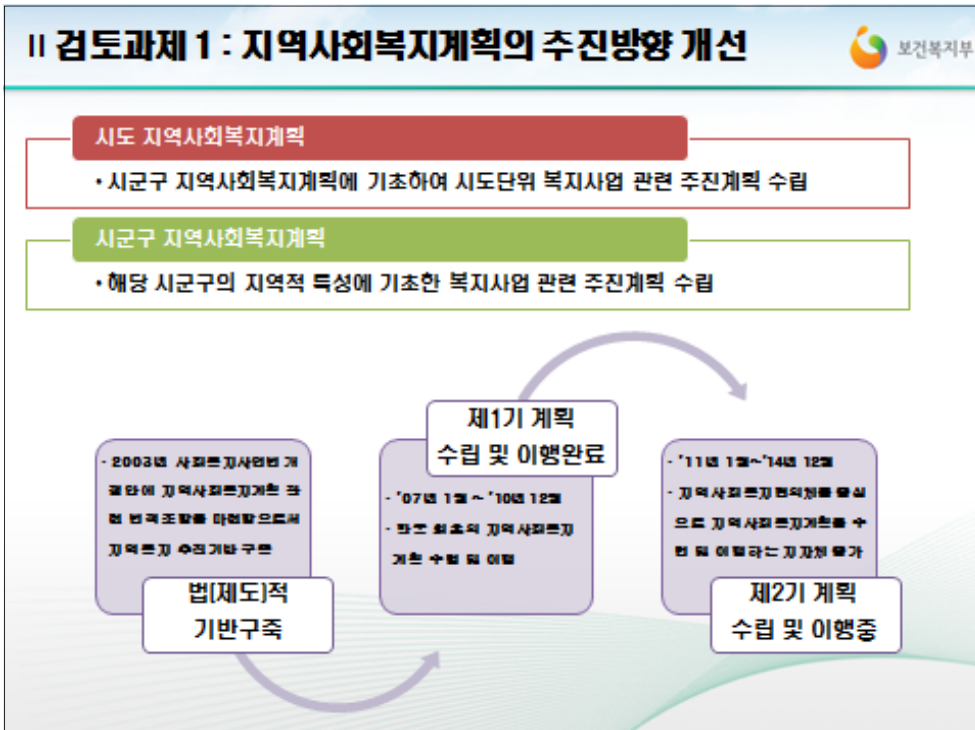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
송준헌

한국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검토과제


송준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I 효과적인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한 방향성 검토





II 검토과제 1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방향 개선



◆ [현행] 관할 시군구계획의 종합+ 독자적인 광역 차원의 계획
[향후] 관할 시군구 의 지역복지 관련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 중심의 계획 수립

- 1


 - 시군구의 효과적인 지역복지정책 및 제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 2

 - 시군구의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관련 사업
- 3


 - 시군구의 보건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지원방안
- 4

 - 시도단위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등

II 검토과제 1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방향 개선



◆ [현행] 보건·복지 등 개별법령에서 각각 별도의 지역계획 수립중
[향후] 분야별 계획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graph TD
    A[지역사회 보장계획]
    B[지역보건 의료계획] --> A
    C[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A
    D[농어촌보건 복지기본계획] --> A
    E[지역사회 복지계획] --> A
    F[사회보장 기본법] --> B
    G[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지역보건계획 연계 검토 의무화] --> B
    H[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 --> B
    I[지역의 사회보장에 수립 근거를 관계법령 위임 제시] --> C
    J[8대 시책의 추진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 --> B
    
```

II 검토과제 2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변화



[현행] 국·도·시·군·구별 사회복지예산

[향후] 지역 특성에 따른 예산 배분

2012년 예산 1조 2천 500억 원

2013년 예산 1조 3천 500억 원

2014년 예산 1조 4천 500억 원

2015년 예산 1조 5천 500억 원

2016년 예산 1조 6천 500억 원

2017년 예산 1조 7천 500억 원

2018년 예산 1조 8천 500억 원

2019년 예산 1조 9천 500억 원

2020년 예산 2조 500억 원

이루고 지역특화사업이 부가적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 선거금액을 일시 반영하여 추진

II 검토과제 3 : 지방 복지재정 구조




[현행] 사업별 매칭 구조,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존

[향후] 포괄보조방식 도입

- 보건소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년부터 포괄보조 예산구조 도입
-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운영중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단위: 원)



연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2008	22조 8000억	12조 2000억
2009	26조 5000억	15조 2000억
2010	29조 2000억	17조 5000억
2011년	30조 1000억	18조 5000억

자료: 한국지방재정연구원(2011 지방지자체 예산계)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구분	사업명	사업 예산	지방비
국고보조금	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2.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3.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4.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5.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6.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7.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8.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9.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0.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2.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3.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4.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5.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6.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17.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00	0
지방비	18. 지방비	0	100
	19. 지방비	0	100

II 검토과제 4 : 이행관리



- ◆ [현행]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의무이지만 평가는 자원임의규정
[향후] 평가 등 이행관리 의무화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강화
 - 시도의 시군구 지역계획에 대한 이행관리 역량 제고
 -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행관리방안 수립

지역사회보장
지수 등을 통한
이행관리

지역복지발전
센터 등 상설
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계획이행 평가
결과를 보조금
등과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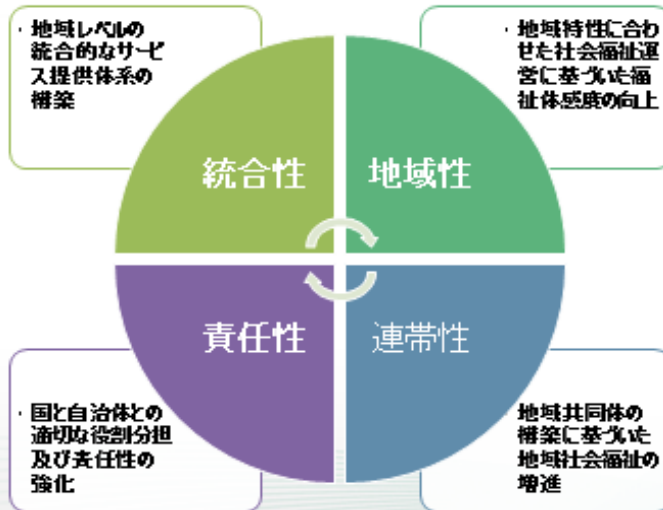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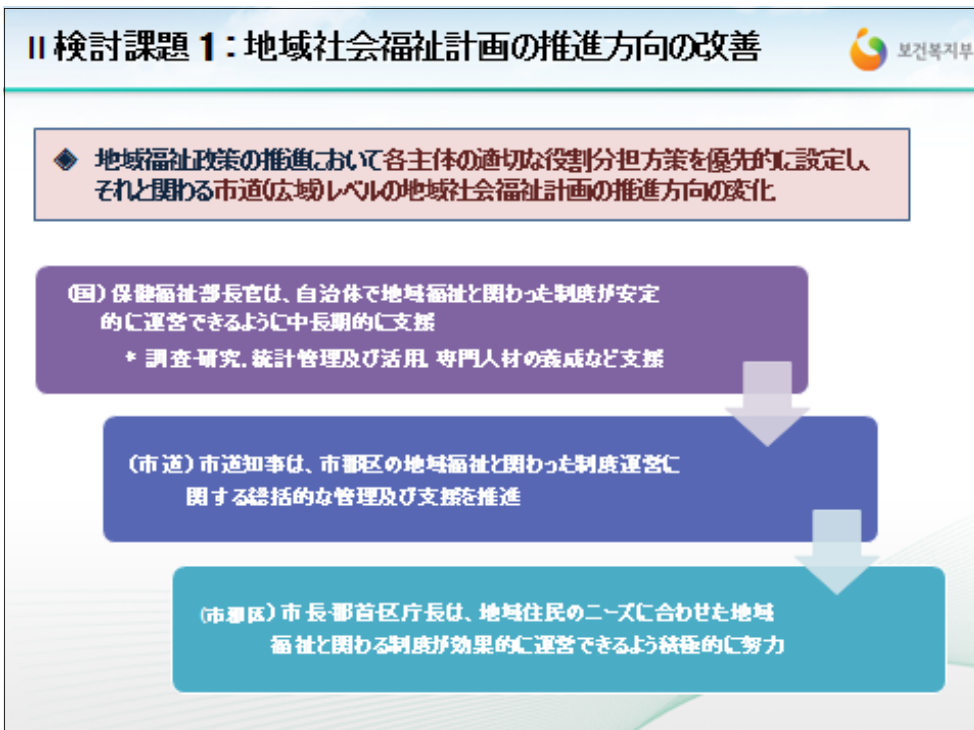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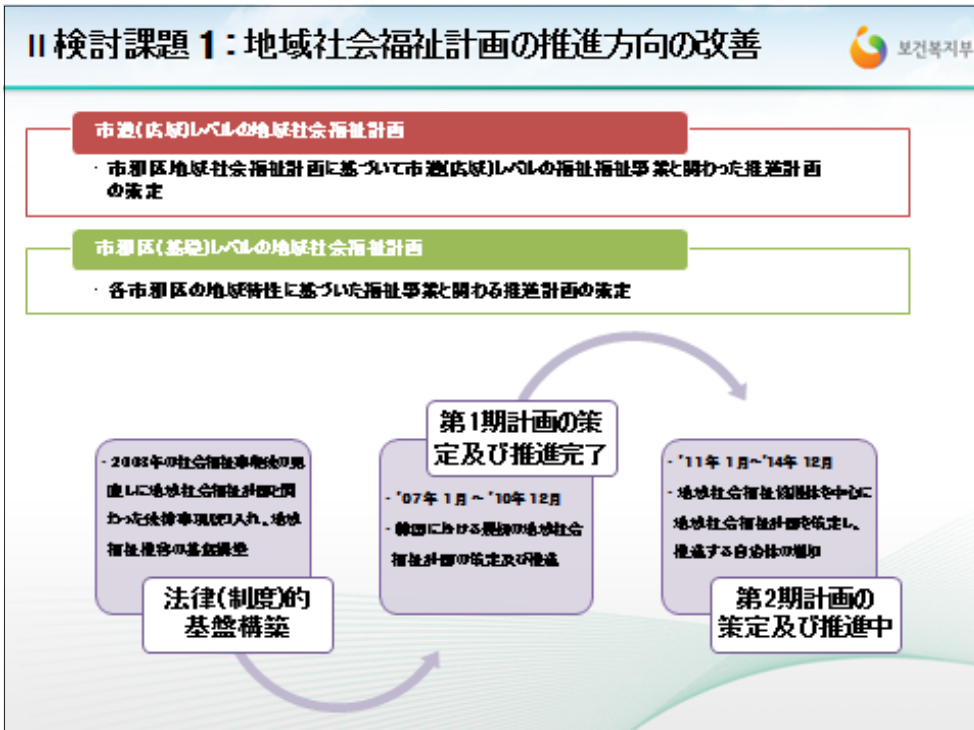
韓国における地域社会福祉計画の 定着及び発展のための検討課題

宋 俊 憲
ソン ジョンヒョ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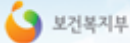
【韓国 保健福祉部地域福祉課長】

I 効果的な地域社会福祉推進のための方向性の検討





II 検討課題 1: 地域社会福祉計画の推進方向の改善



◆ (現在) 各市郡区計画の総合本+ 独自の広域レベルの計画
(今後) 各市郡区の地域福祉に関わった推進する内容中心の計画の策定

- 1


・ 市郡区の効果的な地域福祉政策及び制度の推進を支援するための目標と推進戦略
- 2

・ 市郡区の効果的な保健福祉サービスの提供及び利用のための基盤構築と関わる事業
- 3

・ 市郡区の保健福祉サービスの質的水準の向上のための人材養成及び専門性強化へ向けた支援方策
- 4

・ 市道(広域)レベルの統計収集及び管理方法に関する事項など

II 検討課題 1: 地域社会福祉計画の推進方向の改善



◆ (現在) 保健福祉など個別法律に基づいて各々別の地域計画を策定
(今後) 分野別の計画を総括する総合計画として地域社会保障計画の策定

Ⅱ 検討課題 4 : 施行管理



- ◆ (現在) 年次別施行計画の策定は義務、評価は自律(任意事項)
(今後) 評価など施行管理の義務化
 - 市郡区地域社会福祉協議会の役割強化
 - 市道の市郡区地域計画に対する施行管理の能力向上
 - 国の地域社会福祉計画に対する施行管理方策の策定

地域社会
保障
支助などを通じた
施行管理

地域福祉
発展
センターなど常設の
支援組織の設立
及び運営

計画施行
評価
結果に基づいて
補助金などと連動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3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
和氣康太(와케 야스다, 日本地域福祉学会事務局長 · 明治学院大学)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2012년도 추계 대회

일본에 있어서 지역복지의 추진과 지역복지 계획의 과제

2012년 11월 10일

와케 야스타
(메이지학원대학)

지역복지 추진의 사회적 의미

- 성장과 복지의 괴리
→경제적 성장 지상주의의 종언과 생활의 질 중시
- 21세기의 일본은 초저출산고령사회
*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창조
포인트는 지역 주민(이용자도 포함)에 의한
지역복지 활동의 추진이고, 지역사회의 재생이다.
- 지방 자치제의 역할
지역복지의 추진은 다른 생활 관련 시책(의료·
보건, 교육, 취업, 주택, 환경, 도시 계획 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큰 정책 과제이다.

지역복지의 기본적 시점(Ⅰ)

■ 지역복지의 사회적 문맥

일본 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분권화, 민영화 등 → 구조 개혁의 필요성

■ 사회복지에 있어서 구조 개혁

※ 사회복지 기초 구조 개혁의 논의, 「개호보험법」(1997년)의 성립과 개호보험사업의 전개·개혁, 「사회복지법」(2000년)의 본격적 시동(지원비 제도로의 이행, 지역복지 권리 옹호 사업과 복지 서비스 제3자 평가 사업의 개시, 지역복지(지원) 계획의 책정 등)

지역복지의 기본적 시점(Ⅱ)

■ 사회복지 개혁의 동향과 지역복지

사회복지 개혁의 동향: (1) 계약화, (2) 다원화, (3) 계획화, (4) 분권화, (5) 종합화

→ * 앞으로는 이러한 원리·원칙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일본의 사회복지가 이행하게 된다.

지역복지는 앞으로의 사회복지의 본연의 자세를 제시하는 열쇠 개념 (key concept)으로서 새롭게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f) 지역복지의 「주류화」(mainstreaming), 잔여적 (residual)인 지역복지에서 제도적 (institutional)인 것으로

지역복지의 기본적 틀(I)

■ 지역복지의 목적

현대의 사회복지의 목적은 「자립」과「공생」(사회적 통합)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복지는 「이용자」의 자기 결정과 자기 실현을 지원하고,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복지는 ①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있어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통해 원조·지원하는 것(=자립지원)、 또한 동시에 ② 그것이 가능하도록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공생 사회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복지의 기본적 틀(II)

■ 지역복지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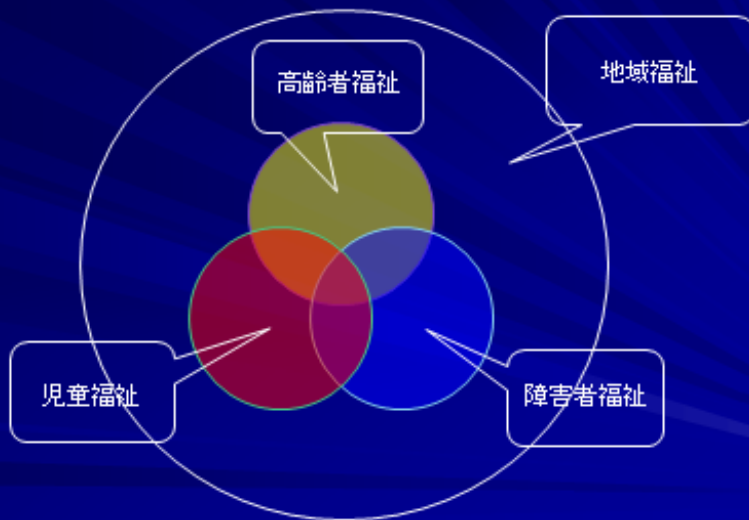
오늘날 지역복지의 주체는 다원화하고 있다. 즉, 종래와 같은 시정촌(행정)과 사회복지협의회만이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의 복지 공사, 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복지NPO, 자원봉사 단체, 주민 단체(마을회·자치회등), 복지 기업 등의 다워너적인 주체(기관·단체·시설 등)이 협동하여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또한, 사람에 관해서도 지역복지의 전문 종사자만이 아닌 복지의 이용자(당사자)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다.

지역복지의 기본적 틀 (III)

■ 지역복지의

지역복지의 대상이 되는 니즈는 오늘날 지역사회에 있어 잠재화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고령자의 개호 니즈와 아동의 보육 니즈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표면화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니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홀리스, 고령자 학대·아동학대, DV(가정 내 폭력), 등교 거부·은둔형 외톨이 등의 “눈에 보이지 힘든” 니즈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ex)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의 문제

지역복지의 대상



지역복지의 기본적 틀 (IV)

■ 지역복지의 방법·기술

지역복지의 방법·기술도 다양화하고 있다. 즉, 지역복지를 추진해가는 방법·기술은 지금까지와 같이 지역 원조 기술(커뮤니티 워크)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역복지 시스템(①권리옹호, ②케어 매니지먼트, ③복지 정보, ④이용자·주민 참가, ⑤네트워크, ⑥지역복지(활동)계획, ⑦평가(서비스 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의 시스템을 운영등의 시스템을 운영·개발하는 다양하면서도 일정한 「이론」에 근거한 통합된 방법·기술을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복지 계획의 역사적 변천(I)

■ 지역복지 계획이란 무엇인가

지역복지 계획이란「『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책정된 사회계획(social planning)」이다.

→* 지역복지 계획의 의미 내용은「지역복지」 자체의 변화에 의해 바뀐다고 할 수 있다.

(1)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역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의 전개 과정에 있어 책정된 계획

(2)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사회복지협의회가 책정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공급 계획

지역복지 계획의 역사적 변천(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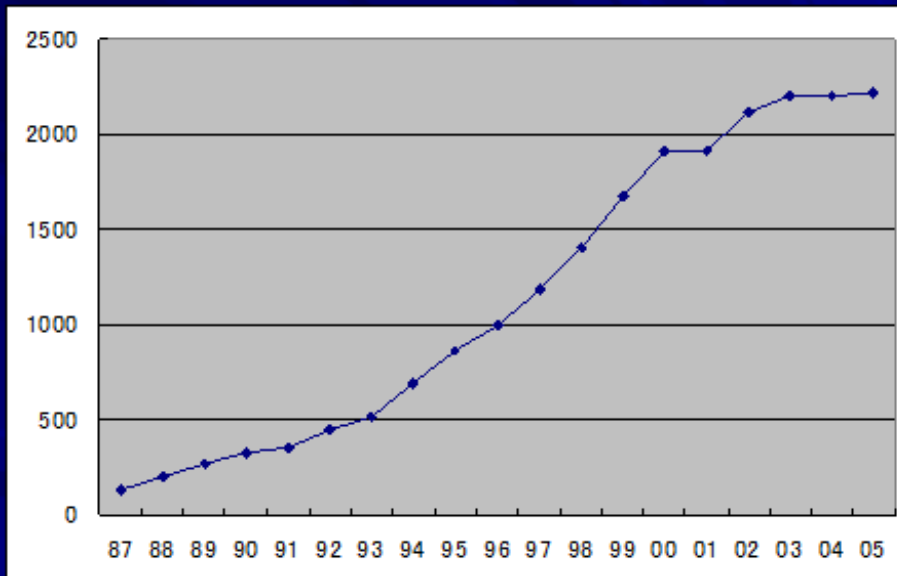
(3) 198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의 실체화→몇개의 선구적인
자치제가 지역복지 계획을 책정 + 주민 참가형
재가복지 서비스 공급 단체의 양적 확대

(4) 1990년대

사회복지 관련 8법의 개정→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정촌주의」의 진전 + 복지계 33분야(고령자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에 있어서 계획
행정의 추진과 시정촌으로의 의무화(3계획)
※ 주민참가의 추진과 복지 계획의 종합화가
과제→나아가「권역」별「지역화」도 과제

(그림 1) 주민 참가형 재가 복지 서비스 단체수의 추이



지역복지 계획이란 무엇인가(I)

■ 「지역복지 계획」의 법제화

사회복지법(2000년) 제107조, 시정촌 복지 계획이, 또한, 제108조에 도도부현 지역복지 지원 계획이 규정되다.

→ 사회복지법·제107조의 3개의 사항

(1) 지역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의 추진에 관한 사항

1. 지역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목표의 제시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3. 이용자의 권리옹호

지역복지 계획이란 무엇인가(II)

(2) 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진흥·참가 촉진 및 공적 서비스의 연계에 의한 공민 협동의 실현
5. 복지, 보건, 의료와 생활에 관련하는 타분야와의 연계 방책

(3) 지역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주민의 참가 촉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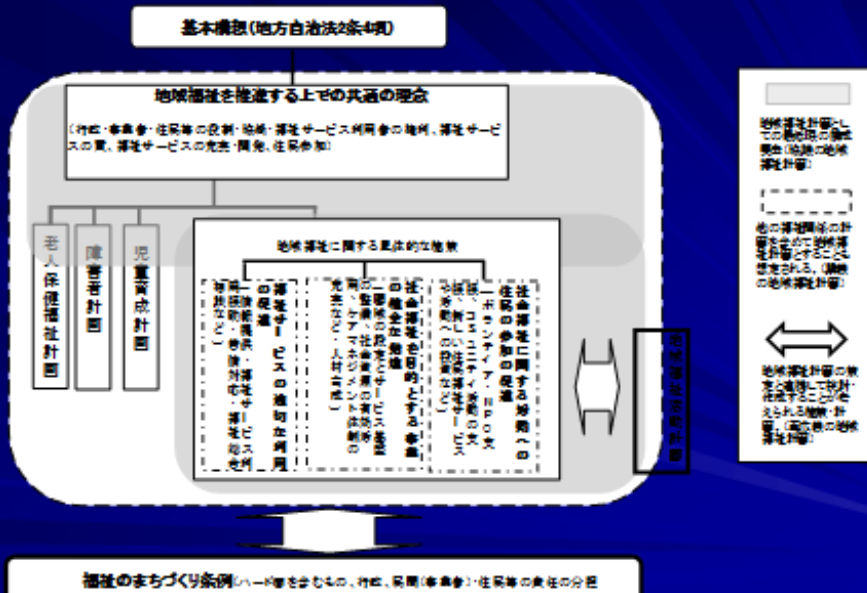
지역복지 계획이란 무엇인가 (III)

- 6. 지역주민, 봉사 단체, NPO법인 등의 사회복지 활동 지원
- 7. 주민 등에 의한 문제 관심의 공유화에 동기부여와 의식의 향상, 지역복지 추진에의 주체적 참가 촉진
- 8.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인재 양성

(4) 그 외의 사항

- 9.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기한의 정비 강화 등
- (주) 1.~9.는 후생노동성 사회보장 심의회 복지부회「시정촌 지역복지 계획 및 도도부현 지역복지 자원계획 혁명 방침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2002년)에 근거하고 있다.

표 1 地域福祉計画の位置づけ



(出典) 全国社会福祉協議会編『地域福祉計画の策定に向けて』(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2001年

지역복지 계획의 특징과 과제

- 지역복지 계획의 특징
※지역복지 계획은 복지계 3계획을 보완하고,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쉽고, 이 점에 있어 그 외의 복지계획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 지역복지 계획의 과제
※지역복지 계획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자치제, 그렇지 않은 자치제 간에 장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확대해 가는 점이 장애의 과제로서 염려되어진다.

지역복지 계획의 의의

- 지방 자치제는 지역사회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맞춰 그 구조를 변혁해갈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정책 평가·행정평가, PFI방식, 지정 관리자 제도 등 *특권형 모델에서 분권형 모델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지역복지를 지속가능한「지역(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위치짓는다.**
- 새로운 사회 시세템의 창조에
주민참여의 지역복지 계획을 통해 지역복지의 기반 정비를 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있어서 미래에의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이다.

지역(보건)복지로의 기대

■ 지역(보건)복지와 「민주주의」

(이전)「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교」→(지금) 「지역복지는 민주주의의 학교」가 아닐까?

※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간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민주주의」이기도 하다.

■ 지역복지는 아이디어(발상)의 보고

「복지 선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지역복지』를 실현시키고 있다.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집약하고, 그것들을 살려 지역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

<보충> 「지역복지 계획 책정·실시 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전국조사)의 개요

- 「지역복지 계획 연구회」는 2003년도에 전국의 지방자치제에서 진행중인 지역복지 계획에 관한 전국조사(정식 명칭은「지역복지 계획 책정 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이다)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후, 2년이 경과하고, 시정촌 합병을 시작으로 다양한 변화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제를 대상으로 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조사 연구의 목적·대상·방법, 조사표의 기본 설계

지역복지 계획의 평가

■ 지역복지 계획 평가의 시점과 결과

1. 계획의 달성도

지역복지 계획의 구체적 시책(프로그램)이 당초의 목표에 비해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수정 4건법>

2. 계획의 효과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과 실시가 해당 자치제(시정촌)의 계획 시스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수정4건법>

3. 계획의 평가

계획의 달성도에 관해서는 시책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보여진다. 또한, 계획의 효과에 관해서는 (몇개의 항목을 뺀) 「효과가 있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단, 계획 담당 직원의 「자기 평가」에서는 유의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서 분석과 고찰(1)

■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 상황

· 4할의 시정촌이 책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최대의 이유는 시정촌 합병이다. 하지만, 합병을 경험한 시정촌에서도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절대적인 저해 요인은 아니다.

■ 지역복지 계획의 종합화

· 다른 복지 계획「모두」가 일체화하고 있는 시정촌은 적다. 기존의 복지 계획·서비스의 종합화는 아직 불충분하다.

■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 방법

· 니즈 파악, 주민참가, 정보 공개의 3개의 방법의 상관성은 높고, 지역복지 계획에 대한 시정촌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분석과 고찰 (II)

■ 「지역간 격차」의 존재

전회의 전국 조사의 주요한 논점의 하나는 지역 간 격차의 확대였다. 이번의 전국 조사의 결과, 특히「평가」의 부분에서 조사 결과에서 생각해 보면 그 논점은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는 국가와 도도부현의 역할은 크다.

■ 「참가」의 문제

지역복지 계획의 특징은「참가」에 있지만, 이번 전국 조사의 결과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 지역 주민, 직원(특히 스트리트 레벨의「전문직」)에 의한 계획에의 관여를 어떻게 전개할지가 중요하다.

지역복지 계획의 과제

■ 시정촌 격차와 지역복지 계획의 과제

- 시부가 정촌부보다도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률이 높다. 또한, 의무화되어 있는 계획을 빼면 관련 계획의 책정률도 시부가 높다. 이 결과로부터 지역복지 계획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의 문제, 즉 정촌부가 많은 중산간지의 지역복지(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과제로 보인다.
- 또한, 지역복지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시부에 있어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책정 방법의 + 분석 결과에서 계획의 책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자치제와 그렇지 않은 자치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보기 힘든)”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격차를 극소화해 가는 것이 국가 도도부현의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韓国地域社会福祉学会
2012年度秋季大会

日本における地域福祉の 推進と地域福祉計画の課題

2012年11月10日

和氣 康太
(明治学院大学)

地域福祉推進の社会的意味

■ 成長と福祉の乖離

→ 経済成長至上主義の終焉と生活の質の重視

■ 21世紀の日本は超少子・高齢社会

* 新しい社会システムの創造

ポイントは地域住民(利用者も含む)による地域福祉活動の推進であり、地域社会の再生である。

■ 地方自治体の役割

地域福祉の推進は、他の生活関連施策(医療・保健、教育、就労、住宅、環境、まちづくりなど)と並んで、あるいはそれ以上に大きな政策課題である。

地域福祉の基本的視点(Ⅰ)

■ 地域福祉の社会的文脈

日本社会を巡る環境変化: 国際化、少子・高齢化、情報化、分権化、民営化など→構造改革の必要性

■ 社会福祉における構造改革

* 社会福祉基礎構造改革の論議、「介護保険法」(1997年)の成立と介護保険事業の展開・改革、「社会福祉法」(2000年)の本格的始動(支援費制度への移行、地域福祉権利擁護事業と福祉サービス第三者評価事業の開始、地域福祉(支援)計画の策定、など)

地域福祉の基本的視点(Ⅱ)

■ 社会福祉改革の動向と地域福祉

社会福祉改革の動向: (1) 契約化、(2) 多元化、(3) 計画化、(4) 分権化、(5) 総合化

→* 今後は、こうした原理・原則にもとづく新しいシステムへ日本の社会福祉は移行していくことになる。地域福祉は、これからの社会福祉のあり方を示す鍵概念(**key concept**)として、あらためて社会的な関心が高まっている。cf) 地域福祉の「主流化」(mainstreaming)、残余的(residual)な地域福祉から制度的的(**institutional**)なそれへ

地域福祉の基本的枠組み(Ⅰ)

■ 地域福祉の目的

現代の社会福祉の目的は「自立」と「共生」(社会的統合)である。したがって、現在の社会福祉は、「利用者」の自己決定と自己実現を支援し、個人の尊厳を尊重する福祉へと変化してきている。そのなかで、地域福祉は、① 利用者が地域社会において自立した生活が送れるように、地域社会を通して援助・支援すること(=自立支援)、また同時に② それが可能となるように生活の基盤となる「地域社会」そのものを変えていくこと(=共生社会の創造)を目的としている。

地域福祉の基本的枠組み(Ⅱ)

■ 地域福祉の主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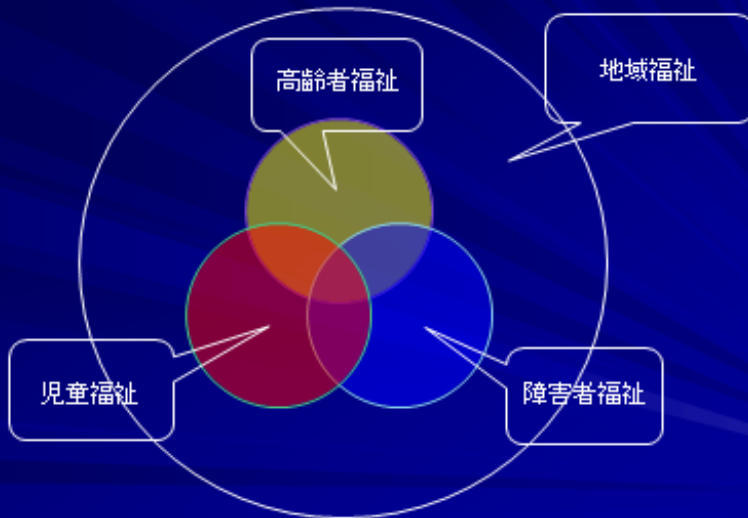
今日、地域福祉の主体は多元化している。つまり、従来のように市町村(行政)や社会福祉協議会だけが「地域福祉」を推進するのではなく、たとえば社会福祉法人、財団法人などの福祉公社、生活協同組合、農業協同組合、福祉NPO、ボランティア団体、住民団体(町内会・自治会など)、福祉企業、などの多元的な主体(機関・団体・施設など)が協働して、地域福祉を推進する時代になっている。また、ひとに関して、地域福祉の専門従事者だけではなく、福祉の利用者(当事者)も含む「地域住民」が主体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

地域福祉の基本的枠組み(III)

■ 地域福祉の対象

地域福祉の対象となるニーズは、今日、地域社会において潜在化していることが少なくない。高齢者の介護ニーズや児童の保育ニーズなどのようにある程度、社会的に認められ、顕在化している“目に見える”ニーズだけを対象とするのではなく、たとえばホームレス、外国人労働者とその家族、高齢者虐待・児童虐待、DV(家庭内暴力)、不登校・引きこもりなどの“目に見えにくい”ニーズもまた積極的に捉えることが重要になっている。ex) 社会的排除(social exclusion)の問題

地域福祉の対象



地域福祉の基本的枠組み(Ⅳ)

■ 地域福祉の方法・技術

地域福祉の方法・技術も多様化してきている。つまり、地域福祉を推進していく方法・技術は、これまでのように地域援助技術(コミュニティワーク)だけで考えるのではなく、地域福祉システム(①権利擁護、②ケア・マネジメント、③福祉情報、④利用者・住民参加、⑤ネットワーク、⑥地域福祉(活動)計画、⑦評価(サービス評価、プログラム評価)などのシステム)を運営・開発していく多様な、しかし一定の「理論」にもとづく統合された方法・技術を確立していくことが必要になっている。

地域福祉計画の歴史的変遷(Ⅰ)

■ 地域福祉計画とはなにか

地域福祉計画とは「『地域福祉』を実現するために策定される社会計画(social planning)」である。→* 地域福祉計画の意味内容は、「地域福祉」のその変化によって変わるといえる。

(1) 1950年代から1970年代前半まで

地域組織化(community organization)の展開過程において策定される計画

(2) 1970年代後半から1980年代まで

施設福祉から在宅福祉へ→社会福祉協議会が策定する在宅福祉サービスの供給計画

地域福祉計画の歴史的変遷(II)

(3) 1980年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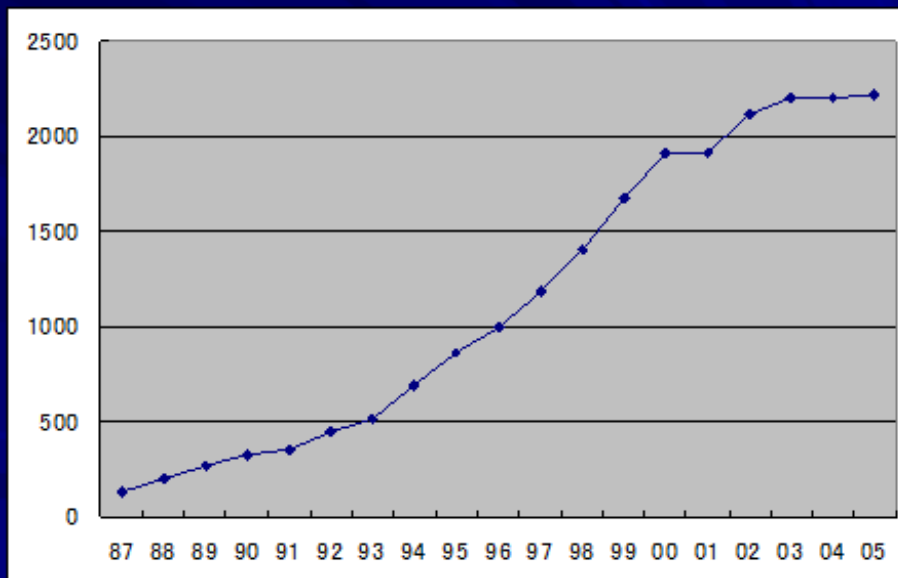
在宅福祉サービスの実体化→いくつかの先駆的な自治体が地域福祉計画を策定+住民参加型在宅福祉サービス提供団体の量的拡大

(4) 1990年代

社会福祉関連8法の改正→社会福祉における「市町村主義」の進展+福祉系3分野(高齢者保健福祉、障害者福祉、児童福祉)における計画行政の推進と、市町村への義務化(3計画)

*住民参加の推進と福祉計画の総合化が課題
→さらに「圏域」別の「地域化」も課題

(図1) 住民参加型在宅福祉サービス団体数の推移



地域福祉計画とはなにか(Ⅰ)

■ 「地域福祉計画」の法制化

社会福祉法(2000年)の第107条において、市町村地域福祉計画が、また第108条において都道府県地域福祉支援計画が規定される。

→社会福祉法・第107条の3つの事項

(1) 地域における福祉サービスの適切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事項

1. 地域における福祉サービスの目標の提示
2. 目標達成のための戦略
3. 利用者の権利擁護

地域福祉計画とはなにか(Ⅱ)

(2) 地域における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事業の健全な発達に関する事項

4. 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多様なサービスの振興・参入促進およびこれらと公的サービスの連携による公民協働の実現
5. 福祉、保健、医療と生活に関連する他分野との連携方策

(3) 地域福祉に関する活動への住民の参加の促進に関する事項

地域福祉計画とはなにか(III)

6. 地域住民、ボランティア団体、NPO法人等の社会福祉活動への支援
7. 住民等による問題関心の共有化への動機づけと意識の向上、地域福祉推進への主体的参加の促進
8. 地域福祉を推進する人材の養成

(4) その他の事項

9. 市町村社会福祉協議会の基盤の整備強化等

(注) 1.~9. は、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福祉部会「市町村地域福祉計画及び都道府県地域福祉支援計画策定指針の在り方について」(2002年)に基づいている。

図1 地域福祉計画の位置づけ



(出典) 全国社会福祉協議会編『地域福祉計画の策定に向けて』(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2001年

地域福祉計画の特徴と課題

■ 地域福祉計画の特徴

※地域福祉計画は、福祉系3計画を補完し、それらが有効に機能させるための基盤整備を目的とした計画である。そのため、さまざまな地域特性を反映しやすい、より地域に密着した計画であり、この点にその他の福祉計画とは異なる特徴がある。

■ 地域福祉計画の課題

※地域福祉計画は義務化されていないこともあり、計画に取り組んでいる自治体と、そうでない自治体との間に、長期的には“目に見えない”格差が拡大していくことが、将来の課題として懸念される。

地域福祉計画の意義

- 地方自治体は、地域社会の急速な環境変化にあわせてその構造を変革していく必要がある。

→新公共管理論(NPM: New Public Management) 政策評価・行政評価、PFI方式、指定管理者制度など *集権型モデルから分権型モデルへのパラダイム転換 ★**地域福祉を持続可能な「地域(経営)戦略」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る。**

- 新しい社会システムの創造へ

住民参加の地域福祉計画を通して、地域福祉の基盤整備を行うことは、地域住民にとって未来への「社会的投資」(Social Investment)である。

地域(保健)福祉への期待

■ 地域(保健)福祉と「民主主義」

(かつて)「地方自治は民主主義の学校」→(いま)
「地域福祉は民主主義の学校」ではないか?

*ここでいう民主主義とは、民間が主体となるという
意味での「民主主義」でもある。

■ 地域福祉はアイデア(発想)の宝庫

「福祉先進地域といわれるところは、すべて『地域福祉』を実現させている。そこでは地域住民のアイデアを集約し、それらを生かして、地域福祉を現実のものにしている」。

<補>「地域福祉計画策定・実施状況に関する実態調査」(全国調査)の概要

- 「地域福祉計画研究会」は、2003年度に全国の地方自治体で進行中の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全国調査(正式名称は「地域福祉計画策定状況に関する実態調査」である)を実施した。

しかし、その後、2年が経過し、市町村合併をはじめとしてさまざまな変化がこの間に惹起したので、経年的な変動を知るために、全国の地方自治体を対象としたより詳細な調査を実施することにした。

- 調査研究の目的・対象・方法、調査票の基本設計

地域福祉計画の評価

■ 地域福祉計画評価の視点と結果

1. 計画の達成度

地域福祉計画の具体的な施策(プログラム)が当初の目標に比べて、どの程度、達成できているか。〈修正4件法〉

2. 計画の効果

地域福祉計画の策定と実施が当該自治体(市町村)の計画システムにどの程度、効果があったか。〈修正4件法〉

3. 計画の評価

計画の達成度に関しては、施策によってかなりの差がみられる。また、計画の効果に関しては、(いくつかの項目を除いて)「効果がある」と回答している。ただし、いずれも計画担当職員の「自己評価」である点には留意が必要である。

調査結果からの分析と考察(Ⅰ)

■ 地域福祉計画の策定状況

・約4割の市町村が策定していないが、その最大の理由は、市町村合併である。しかし、合併を経験した市町村でも計画を策定しているところがあり、絶対的阻害要因ではない。

■ 地域福祉計画の総合化

・他の福祉計画「すべて」と一体化している市町村は少ない。既存の福祉計画・サービスの総合化はまだ不十分である。

■ 地域福祉計画の策定方法

・ニーズ把握、住民参加、情報公開の3つの方法の相関性は高く、地域福祉計画に対する市町村の姿勢が理解できる。

調査結果からの分析と考察(II)

■ 「地域間格差」の存在

前回の全国調査の主張な論点のひとつは、地域間格差の拡大であった。今回の全国調査の結果、とりわけ「評価」の部分での調査結果から考えると、その論点は実証されているといえる。その意味では、国や都道府県の役割は大きい。

■ 「参加」の問題

地域福祉計画の特徴は「参加」にあるが、今回の全国調査の結果から、その面での取り組みに課題が残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利用者、地域住民、職員(とりわけストリート・レベルでの「専門職」)による計画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どう展開するかが、これから重要になる。

地域福祉計画の課題

■ 市町村格差と地域福祉計画の課題

- ・市部の方が町村部よりも、地域福祉計画の策定率が高い。また、義務化されている計画を除けば、関連計画の策定率も市部の方が高くなっている。この結果から、地域福祉計画における地域間格差の問題、つまり町村部が多い中山間地の地域福祉(計画)をどうするかという課題がみえてくる。
- ・また、地域福祉計画を策定している市部においても格差が生じている。策定方法の分析結果から、計画の策定に熱心に取り組んでいる自治体とそうではない自治体の間に“目に見えない(みえにくい)”格差が拡大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 ・こうした格差を極小化していくことが国・都道府県の政策課題になっている。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금) ~ 10일(토)

주제발표 3

한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
藤井博志(후지이 히로시, 日本地域福祉学会理事 · 神戸学院大学)

지역복지 계획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과제

코베학원대학 후지이 히로시

보고의 개요

1.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정의와 실태
2.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경과와 특질
3.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의의와 과제

주) 사회복지협의회 = 사협

1.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정의와 실태

1)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정의와 실태

「사회복지협의회가 호소하여, 주민, 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복지 서비스) 를 경영하는 자가 상호협력하여 책정하는 지역복지를 목적으로 한 민간의 활동·행동계획」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정의와 실태

2)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실태

- ①실질적 주체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 ②전국의 책정률 40.1% (2009년)
- ③지역복지 활동 계획에 포함된 계획
 - ◆사협 강화·발전 계획
 - ◆소지역복지 활동 계획(지구 복지 계획)

2.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경과와 특징

1) 경과

- ① 사협의 Co실천 과정으로서의 계획 (1950 ~ 70년대 후반)
- ② 사협의 재가복지 서비스 개발·지역복지 형성으로서의 계획 (1980 ~ 1990)
- ③ 사협으로부터의 행정 복지 계획으로의 액션 계획 (1990 ~ 2000)
※ 노인 보건복지 계획 등 분야별 계획과의 민간 협동·보완 계획
- ④ 사협으로부터의 지역복지계획으로의 액션 계획 (2000 ~)
※ 지역복지 계획과의 민간협동·보완 계획

2.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경과와 특징

2) 특징

- ① 사협과 민간 복지 조직의 주체화 계획 (조직의 주체적 역량에 영향받음)
- ② 사협의 조직 목적을 달성하는 계획 (지역복지의 추진) / 사협 조직 경영과의 일체화
- ③ 공동모금을 간접적으로 의식한 계획

3.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의의와 과제

1) 의의

- ① 지역복지에 있어서 관민협동의 디자인의 민간 (사협) 으로부터의 제기
- ② 지역복지 계획의 실체화 (재정 근거가 없는 지역복지 계획)

3.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의의와 과제

1) 의의

- ③ 소지역복지 활동 계획을 포함시킴에 의해 지역복지 기반의 강화 (주민 참가의 확대와 주민 자치 형성)
- ④ 사협의 활동·조직 강화 (커뮤니티 워커 실천의 강화와 PDCA 사이클의 경영)

3.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의의와 과제
2) 과제

- ① 행정의 사협 의존 경향
- ② 지역복지 계획과의 일체화 계획
책정의 시비
- ③ 관민 협동의 양계획의 진행 관리
방법 검토 (계획 평가의 방법 포함)

3.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 계획의 의의와 과제
2) 과제

- ④ 사협과 다른 민간 조직과의 협동
관계의 본연의 자세와 반영
- ⑤ 소지역 복지 활동 계획과 지방
분권화·주민 자치 조직 등의 자치체
커뮤니티 정책 동향과의 관계

地域福祉計画における 地域福祉活動計画の課題

神戸学院大学 藤井博志

報告の概要

1. 地域福祉活動計画の定義と実態
2. 地域福祉活動計画の成り立ちと
特質
3. 地域福祉における地域福祉活動計
画の意義と課題

注) 社会福祉協議会 = 社協

1. 地域福祉活動計画の定義と実態

1) 地域福祉活動計画の定義と実態

「社会福祉協議会が呼びかけて、住民、地域において社会福祉に関する活動を行う者、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事業（福祉サービス）を経営する者が相互協力して策定する地域福祉を目的とした民間の活動・行動計画」

(全国社会福祉協議会)

1. 地域福祉活動計画の定義と実態

2) 地域福祉活動計画の実態

①実質の主体 市町村社会福祉協議会

②全国の策定率 40.1% (2009年)

③地域福祉活動計画に複合される計画

◆社協強化・発展計画

◆小地域福祉活動計画 (地区福祉計画)

2. 地域福祉活動計画の成り立ちと特質

1) 成り立ち

- ①社協のCo実践過程としての計画 (1950~70年代後半)
- ②社協の在宅福祉サービス開発・地域福祉形成としての計画 (1980~1990)
- ③社協からの行政福祉計画へのアクション計画 (1990~2000)
※老人保健福祉計画等分野別計画との民間協働・補完計画
- ④社協からの地域福祉計画へのアクション計画 (2000~)
※地域福祉計画との民間協働・補完計画

2. 地域福祉活動計画の成り立ちと特質

2) 特質

- ①社協と民間福祉組織の主体化計画
(組織の主体的力量に影響される)
- ②社協の組織目的を達成する計画
(地域福祉の推進) / 社協組織経営との一体化
- ③共同募金を間接的に意識した計画

3. 地域福祉にける地域福祉活動計画の意義と課題

1) 意義

①地域福祉における官民協働のデザインの
民間（社協）からの提起

②地域福祉計画の実体化（財源根拠がない
地域福祉計画）

3. 地域福祉にける地域福祉活動計画の意義と課題

1) 意義

③小地域福祉活動計画を包含させること
による地域福祉基盤の強化（住民参加の
拡大と住民自治形成）

④社協の活動・組織強化
（コミュニティワーク実践の強化とPDCA
サイクルの経営）

3. 地域福祉における地域福祉活動計画の意義と課題
2) 課題

- ① 行政の社協依存傾向
- ② 地域福祉計画との一体化計画策定の是非
- ③ 官民協働の両計画の進行管理の方法の検討 (計画評価の方法を含む)

3. 地域福祉における地域福祉活動計画の意義と課題
2) 課題

- ④ 社協と他の民間組織との協働関係の在り方とその反映
- ⑤ 小地域福祉活動計画と地方分権化・住民自治組織等の自治体コミュニティ政策動向との関係

자유주제

- ▶ 발표 1 필리핀의 코피노 아동지원에 대한 실천사례연구 /
김희주, 주경희, 우수명
토론 박석란(성정종합사회복지관장)
- ▶ 발표 2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에 관한 고찰: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체계 분석 /
김헌진
토론 최인덕(공주대학교 교수)
- ▶ 발표 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김창기
토론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 발표 4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에 비추어본 지역사회조직의 네트워킹 /
김용성, 정종화
토론 박영(충북도립대학교 교수)

자유주제논문발표 1

필리핀의 코피노 아동지원에 대한 실천사례연구

- 코피노 어린이 재단을 중심으로 -

김희주(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연구원)

주경희(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우수명(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I. 연구목적

최근 일부대학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이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영역에서 해외원조활동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의 국제사회복지 기관들을 소개하고, 이들 사업을 국내의 사회복지와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에서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코피노 어린이 재단(Kopino Children's Association)'을 해외 사회복지 실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재단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방향,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의 해외사회복지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차후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코피노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코피노어린이재단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담당자 인터뷰, 현장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개념화한 해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질적사례분석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코피노어린이재단의 활동기록 사진, 활동보고서, 내부자료 및 회의자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와 현장참여관찰도 함께 진행하여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3. 주요 결과

코피노 어린이 재단은 한국인 아버지와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빈곤과 싸우며 살고 있는 코피노 아동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필리핀의 NGO 기관이다. 코피노 어린이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에게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피노 아동들의 삶을 역량 강화 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역량강화와 자립을 위해 이 재단은 영어교육, 교육비와 교통비 지원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한국 등 해외로의 유학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일차적 사업 활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임시 컴퓨터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는 코피노 아이들을 일정기간 맡아 돌보며 대리 양육과 영어 및 한글 수업 진행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코피노 아이들의 미래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재단은 필리핀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 등 국제적인 협력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 정식 사회복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추천이나 코피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닐라의 빈곤지역들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8주씩 로테이션으로 필리핀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SNS를 통한 기관의 홍보활동과 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잠재적 후원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코피노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피노 아동들에 대해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만을 강조하며 이들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한국의 NGO 단체들의 활동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이 아이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인식개선활동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코피노 재단의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이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코피노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한국의 사회복지재단과 손을 잡고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파견, 도서관 설립과 같은 신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를 통해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 예로 국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매년 2주간 재단을 방문하여 여름방학 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과 한국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코피노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한글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외부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얻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록 하나의 사례이지만 해외의 NGO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국적 사회복지실천 기술과 지식을 접목하여 해외 NGO 기관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연구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해외 원조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주제논문발표 2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 고찰

-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체계 분석-

김현진(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2011년 정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안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인 ‘행복e음’의 구축과 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의 탄생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 의지가 반영된 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정책의 핵심은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부문 간 관계성 정립을 연계를 통해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공존하지 않는다. 즉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아직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제도개혁의 방향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이며 본질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동시에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정책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이 혼돈스럽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구호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호환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통합적 사례관리의 대표적 제도인 ‘희망복지지원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 지원사업, 일명 ‘좋은이웃들’의 사업내용에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들과의 연계구상은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연계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내용을 고찰하고, 둘째, 이와 관련한 법제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며, 셋째, 우리나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립성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치겠다.

II. 보건·복지 정책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정책적 의의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기 두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하고 지역성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활동의 규범적이며 개념적 범위가 확대·해석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두 법령의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게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연계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보건법’ 제 3조 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 20조에 의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보건·복지 관련 법률 간 연계성의 결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간 서비스 실천 영역을 규정하는 법률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률 내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두 부문 간 상호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보건의료기본법 그리고 정신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법제 간 연계성을 상실한 체 형성 및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체제 구축의 의미는 공허하다.

3.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관리체계의 분립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들은 설립 형태에 따라 근거 법령이 각각 다르고 그 법령의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형태의 조직체계 하에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들은 정책운영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부처 간 정책 조정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들 간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내용이나 운영체계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과 업무와 서비스 제공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4. 지방정부 조례에 의한 보건·의료 체계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노인요양병원에 편중되어 있다. 보건의료 자원의 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 그리고 이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협성은 부적절해 보인다. 한편, 이들 의료기관들은 지역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중요하다. 지역사회 노인요양병원의 특수 여건 상, 단순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노인복지 차원의 예방 및 여가 서비스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을 꾀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최근 정부는 희망복지단 등의 이행을 통해 통합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복지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포괄적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호환성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 하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보건과 사회복지부문 간 정책 및 행정적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양 부문의 성장 및 형성 과정에서 자리 잡은 왜곡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부문이 공공의 성격 보다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시장주의 형태의 보건·의료시장이 생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보건·의료자원이 왜곡된 형태로 우리 사회에 공급되게 되었다.

상기 구조적 차원의 비판과 반성을 제외하고 제도 본질의 측면에서 지적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상호 관련 법률 상 법제 체계의 비연속성과 비연계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률에는 상호 연계를 규정한 법률과 관련 법 조항들이 상당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계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 조항들은 많지 않다. 총체적 수준에서 관련 법 조항들 간 연계에 관한 내용들이 연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정리한 보건과 복지 관련 여섯 가지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

는 국가계획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유사한 내용의 혼재와 연계를 규정한 법률내용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기존 보건 및 의료시설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분립성은 통합적인 보건복지정책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주무 부처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이며 보편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지역보건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소의 기능이 적극적이고 주도적 차원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이다. 결국 보건과 복지 부문 간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은 행정적 책임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제논문발표 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창기(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 추세로써, 2005년 75,011명, 2008년 122,552명, 2011년 2월 142,38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여성 86.8%, 남성 13.2%로 결혼이주여성이 6.6배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호).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안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변화는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안희경, 2008; 류정현, 2009).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인 위협요인과 이를 대처하는 요인인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는 경제적, 문화적, 대인관계, 제도적 서비스에서의 소외 등 이다(고은주, 2009; 박시연, 2010; 김은재, 2011; 변성원, 2012) 또한 대처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등 이다(임정미, 2011; 김현실, 2011; 이정화,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소외 즉,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 배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조절을 위해 생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약물사용, 근육긴장 완화, 신체운동 등의 정서조절 방략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 방략, 우울감의 수준(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 방략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방략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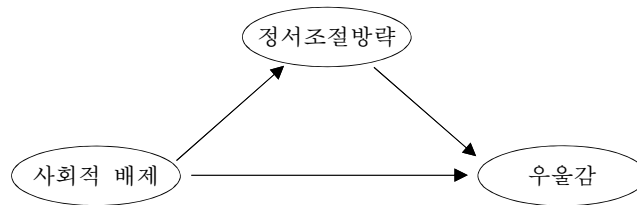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충청북도 농촌지역(군지역)의 결혼이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첫째,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SEU(2006)에서 개발하고 김태준(2010)이 번안·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과 가정의 특성을 포함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26개 문항으로 객관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 영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둘째,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 개발하고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연구자료의 오류 및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구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주요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다회귀분석결과 우울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이며, 반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참여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지역 특성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야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지역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에게는 특화된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농업작목반에 의무적 가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지역 사회활동으로 인해 차별화 또는 비교의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멘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민·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정서조절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주제논문발표 4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에 비추어본
지역사회조직의 네트워킹

김용성(삼육대학교 영미어문학부 교수)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부모의 생애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자원의 발굴, 지역사회자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부모가 경험한 삶의 과정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에게 스토리텔링(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을 청취하고 생애주기별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그 양육과정에서 도출된 부모의 갈등과 태도, 인지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어떤 유형으로 도출되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자원의 부재는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는지, 그에 따른 지역사회자원과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위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부모와 자녀에 대한 조기개입의 방법을 지역사회차원에서 그 방법론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부모의 생애경험을 스토리텔링기법으로 조사하고, 그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녹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삶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자원의 부재와 지원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발달장애인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소그룹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발달장애 인자녀의 임신에서 출산, 학령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별 요소에 대하여 집중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마침과 동시에 전사 작업을 하였으며, 녹취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 들으며 전사하였다. 또한 전사내용과 현장메모노트 그리고 문서기록 등을 종합하여 전사된 심층면접,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면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전사된 내용은 의미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단어, 구, 문장들을 추출하여 개방 코딩(open coding)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 자료에서 의미를 가진 개념(concept)을 발견하여 연구 참여자의 반응이 주어졌고, 상황(context)을 고려하여 개념을 구성하였고 코딩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념들을 비교분석하여 공통개념들을 묶어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이에 대한 핵심주제를 찾아내었다. 또한 질적 연구기법을 수행하기 위한 윤리적 배려와 연구 동의서 등을 모두 받았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3. 주요 결과

첫째, 임신기의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생애경험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장애아이가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임신 중의 환경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 연년생 임신, 더위를 참는 것의 어려움, 찢찢한 태몽 등의 이상 징후를 느낀 어머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였다. 또한 시집살이를 많이 한 사례의 경우는 그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발달장애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임신기 중의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그 당시의 환경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출산시기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의 생애경험에서 산모의 난산, 아기 심장의 이상, 아기가 조금 늦게 출생, 출생 후 울지 않는 아기, 아기의 염색체 이상 발견, 태어나자마자 호수를 끼고 연명, 발달지체,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 아기, 감기에 심하게 걸린 아기 등의 증상을 보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하여 이상 징후를 느끼고 어디에선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정확한 정보도 없고 전문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조급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전문의사가 부족하여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가기만 했다.

셋째, 양육기의 어머니의 생애경험을 보면 이상한 느낌을 받음 → 병원방문 → 아이의 집착 → 부모의 대처 → 부모 마음의 병 → 교육 → 주변 반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순서로 장애부모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가고 양육에 대한 불안한 숲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이시기에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어머니를 위한 상담소나 장애인복지관의 전문기관이 있었다면 경험에 근거한 시간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역사회자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넷째, 학령기의 발달장애인 어머니는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특수학교 밖에 없었다. 그것도 학교가 모자라 다른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했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 시기에는 학교와 치료를 병행하여야 했지만 지금의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치료바우처나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등은 볼 수 없었다. 대학병원의 치료는 상당한 고액의 비용의

요구했고 그래도 내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했다. 학령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데 병원치료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교육자원의 부족, 지역사회자원의 부재,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부재,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남았고 지금처럼 자폐부모들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저기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령기에 가족의 지지가 많은 경우와 부재한 경우는 결국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은 어머니가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토로하였다.

다섯째, 성인기 장애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무엇보다 자녀의 경제적인 보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요구한다. 고등부를 졸업할 때에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 아이가 과연 내 사후에도 자립 가능한 환경이 될까? 하는 문제이다. 이 시기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향후 아이의 미래를 매우 걱정하여 시설을 보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쩌면 탈시설화에 반하는 사고일지도 모르나 어머니는 현실적인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불안에 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결혼문제, 직업문제 등의 여러 고민에 어머니는 이제 도 큰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학령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복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의 불안으로 가중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장애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생애 경험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과 그에 대응하는 상담소가 지역사회에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장애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자조모임 같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Social Networking이 존재하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상담, 지역사회의 자원이 충분치 않음으로 그 수많은 세월을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다시 시설입소를 생각하는 복지패러다임을 역행하는 발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된다.

[메모]

[메모]

[메 모]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메 모]

[메모]

[메모]

[메모]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 계획수립, 실행,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 5일 인쇄

2012년 11월 7일 발행

발행인 박태영

발행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TEL. 053-851-9968 · FAX. 053-851-9968)

홈페이지 : www.kcommunity.or.kr

E-mail : kcommunity@hanmail.net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